

■ 연구보고서 13-11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함영진 · 강소영 · 김경준 · 이희종



머리말

복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의 복지이용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의 정보화’는 최근 가장 가시적인 복지흐름의 하나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장점을 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환경 구축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대표적인 ‘통합적 복지정보 시스템(integrative welfare IT system)’으로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범국가적 복지사업들의 정보를 수집·관리·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복지의 정보화를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정책연구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의 부족으로 취약계층 등 복지대상자와 중요 집단에 대한 실제적 특성과 동태적 분석, 주요 영향요인과 그러한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 등을 검증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높은 복지관련 정책연구들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2013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보

통합관리체계 방안 마련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변동 유형별 소득 추이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수급이력기반 국가복지사업 실태분석』, 『영유아 보육 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급여 통계연보』 등 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연구를 통해 복지분야의 주요 이슈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복지 제도 및 대상자'의 현황과 특성, '전달체계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현황과 영향요인, '복지정보'의 분류와 분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수행된 연구에는 우리원 정책지원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방향의 설정 및 자료의 해석, 정책적 함의도출 등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대내외 자문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최근 10여년은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며, 복지에 대한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 연구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발전을 위한 초석과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후속연구들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주요 연구결과들이 우리원의 발전과 복지정책을 기획과 담당하는 정책 실무자, 전문가, 연구자 등의 활동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원 희 목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7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자유선택의 개념 및 주요 쟁점	13
1. 자유선택의 개념	13
2. 돌봄의 사회화와 자유선택	15
3. 자유선택의 쟁점 분석	15
4. 국내의 영유아 지원제도에서 자유선택의 쟁점 및 한계	17
제2절 현금급여와 양육수당	19
1. 현금급여의 개념	19
2. 현금급여의 장점	22
3. 우리나라 영유아 분야의 현금급여	23
4. 양육수당의 필요성	25
5.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	27
제3절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 요인	29
1. 가구소득 관련 요인	29

2. 가족특성 요인	32
3. 아동관련 요인	35
4. 지역관련 요인	36
5. 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요인	37

제3장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39

제1절 영유아 지원정책의 개요	41
1. 영유아 지원정책의 범위	41
제2절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48
1. 보육료 지급 현황	48
2. 양육수당 지급 현황	49
3. 영 · 유아 및 어린이집 현황	50
4. 유치원 현황	52

제4장 자료선정 및 변수정의 55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57
1. 데이터 정의	57
제2절 변수의 정의	63
1. 아동 연령대 구분	63
2. 영유아 보육지원정책 선택여부	64
3. 소득, 재산관련 변수	65
4. 개인, 가구구성 관련 변수	66
5. 기관특성 관련 변수	67
6. 지역특성 관련 변수	67

제5장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도 및 영향요인 분석	69
제1절 지속 유지자(2012~2013)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71
1.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71
2. 보육지원 정책선택에 대한 독립변인의 특성 차이 분석	73
3. 아동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분석	89
제2절 가족자산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선택	10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101
2.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115
3. 가족자산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분석	128
제3절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2
1.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변화	142
2.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현금성 급여(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147
3. 현금성 급여(양육수당) 선택의 결정요인	155
제6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9

표 목 차

<표 2-1> 자유선택에 대한 입장별 쟁점분석	17
<표 2-2> 복지급여의 형태 및 특징	21
<표 2-3> 중앙부처 양육관련 현금급여 현황(2012)	23
<표 3-1> 영유아 보육료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42
<표 3-2> 영유아 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43
<표 3-3> 유아교육(유치원) 누리과정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44
<표 3-4>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정책 연도별 비교	44
<표 3-5> 해외 양육수당 지급사례	45
<표 3-6> OECD 주요 회원국의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체계	46
<표 3-7> 연도별 보육료 지급 현황	48
<표 3-8> 2013년도 월별 보육료 지급 현황(7월 까지)	49
<표 3-9> 전 계층 지원 전-후 양육수당 지급액 비교	49
<표 3-10> 주민등록 아동 인구 수	50
<표 3-11> 어린이집 수 및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황	51
<표 3-12>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수	51
<표 3-13> 유아인구 및 취원예정아 수	53
<표 3-14> 유치원 및 학생 수	53
<표 3-15> 2013년도 연령별 원아수	53
<표 3-16> 2013년도 유아교육 예산	54
<표 4-1> DW 데이터의 DM 이후 변환 코드 및 내용	58
<표 4-2> 아동 연령대 구분	63
<표 4-3> 보육정책 변수	64

〈표 4-4〉 소득·재산관련 변수	65
〈표 4-5〉 개인 가구관련 변수	66
〈표 4-6〉 기관특성 관련 변수	67
〈표 4-7〉 지역특성 관련 변수	67
〈표 5-1-1〉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	72
〈표 5-1-2〉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1)	74
〈표 5-1-3〉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독립변인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76
〈표 5-1-4〉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2)	78
〈표 5-1-5〉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80
〈표 5-1-6〉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3)	82
〈표 5-1-7〉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83
〈표 5-1-8〉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4)	86
〈표 5-1-9〉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88
〈표 5-1-10〉 전체집단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92
〈표 5-1-11〉 그룹 1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94
〈표 5-1-12〉 그룹 2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96
〈표 5-1-13〉 그룹 3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98
〈표 5-1-14〉 그룹 4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00
〈표 5-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현황	102
〈표 5-2-2〉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1)	103
〈표 5-2-3〉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104
〈표 5-2-4〉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2)	106
〈표 5-2-5〉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108
〈표 5-2-6〉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3)	110
〈표 5-2-7〉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111

〈표 5-2-8〉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4)	113
〈표 5-2-9〉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114
〈표 5-2-10〉 한부모 가정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현황	116
〈표 5-2-11〉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1)	117
〈표 5-2-12〉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118
〈표 5-2-13〉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그룹 2)	119
〈표 5-2-14〉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121
〈표 5-2-15〉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그룹 3)	123
〈표 5-2-16〉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124
〈표 5-2-17〉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4)	126
〈표 5-2-18〉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127
〈표 5-2-19〉 2012년 대비 2013년 수급자의 제도별 수급현황	129
〈표 5-2-20〉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131
〈표 5-2-21〉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135
〈표 5-2-22〉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139
〈표 5-3-1〉 2012년 대비 2013년 지속수급자의 제도별 수급현황	143
〈표 5-3-2〉 연령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지속수급자 제도 이용 현황 ..	145
〈표 5-3-3〉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양육수당)	145
〈표 5-3-4〉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보육료 지원)	146
〈표 5-3-5〉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유아학비)	146
〈표 5-3-6〉 1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148
〈표 5-3-7〉 1세 이상 ~ 2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150
〈표 5-3-8〉 2세 이상 ~ 3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152
〈표 5-3-9〉 3세 이상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153
〈표 5-3-10〉 1~2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157

〈표 5-3-11〉 2~3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158
〈표 5-3-12〉 2~3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160

그림 목 차

[그림 4-1] DB 적재 형태 및 DW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	59
[그림 4-2] 데이터 범주화 과정	60
[그림 4-3] SAS 프로그래밍을 통해 DM으로 변환된 분석 데이터	62
[그림 5-1-1] 연구모형	90
[그림 5-2-1]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133
[그림 5-2-2]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137
[그림 5-2-3]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141

요 약

1. 서 론

- '00년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보육관련 복지사업의 대상 및 재원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육지원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함
 - '13년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보육예산은 '12년 대비 34% 증액된 4조 1,778억에 이르고 있음
- 보육정책의 보편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정책(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에 대한 대상자의 선택권이 담보되었으나 보육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
- 본 연구는 보편주의로의 정책변화가 발생한 '13년을 기점으로 복지대상자의 선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데 의의를 가짐
- 본 연구의 목적은 보편화된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선택현황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선택권이 부여되기 전인 '12년도 대비 '13년도의 보육지원 정책현

황을 비교분석

- 본 연구의 구성은 세 가지의 주요 연구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12년도 영유아 지원정책 이용대상자가 '13년도 3월에 어떠한 유형의 급여를 선택하였고 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
 - 둘째,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상황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현황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 셋째,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의 선택현황과 이들의 선택요인에 대하여 분석

II. 이론적 배경

1. 자유선택의 개념 및 주요 쟁점

- 자유선택이란 개인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사항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기회와 자율성을 의미
- 아동 양육에서의 자유선택의 기본골격은 보육시설 이용, 양육수당 수급, 가정 내 개별양육서비스 이용, 민간보육시설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형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제도화
- 아동 양육에 대한 자유선택에는 크게 수용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음
 - 수용적 입장은 가정양육수당 및 개별양육을 옹호하는 입장이며 부정적 입장은 공공보육서비스를 옹호하는 입장
 - 국내의 영유아 지원제도의 방향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부 지원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어 자유

선택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국내 영유아 지원제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양한 영유아 지원제도의 선택지 확보,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자원,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2. 현금급여와 양육수당

- 현금급여는 복지급여의 형태 중 하나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부여에 따른 독립성과 권한부여,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 현금급여의 장점은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 및 비용절감효과의 제고, 서비스 수급자 측면에서 공급자 간 경쟁 유발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수급이라는 장점을 가짐
- 우리나라 영유아 분야의 현금급여는 크게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양육수당, 한부모가정에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을 포함한 입양아동의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수당 및 보조금이 존재함
- 양육수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혜미 외(2011)에서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보장, 소득재분배 측면, 출산율 제고, 아동성장의 질적 부분 제고, 아동양육이 반드시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유인하지는 않는다는 해외사례, 일하는 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필요성을 제시

3.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 요인

-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요인을 가구소득, 가족특성, 아동, 지역, 시설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함
- 가구소득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할수록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대리양육을 선호함
- 가족특성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가족특성 요인 중 부모요인에서는 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양육을 선택하였고 가구요인에서는 가구원이 적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호하였으며 아동 수가 적을수록 시설보다는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함
- 아동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시설 중에서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지역규모에서 대도시의 경우 개인 대리양육 및 시설양육을 선호하였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육시설 유형에 있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보육시설의 질 문제, 즉 평가인 증여부 및 교육의 질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기관의 접근성 등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III.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 분석

1. 영유아보육 지원정책의 개요

-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며 영유아 지원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6개 정책이 시행중
 - 양육수당은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제공되며 만 0~5세 양육수당, 장애 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의 3개 정책이 시행중
 - 유아학비 지원인 영유아 누리과정(만 3~5세)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태를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현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과 사립 유치원 이용으로 구분하여 시행중
- 해외의 양육수당 지급사례는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면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 20세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영국)도 있음
- OECD회원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1세까지 시설중심보육, 만 2~3세까지 가정보육, 만 4~5세까지 학령전 학교(유치원) 교육으로 구성됨

2.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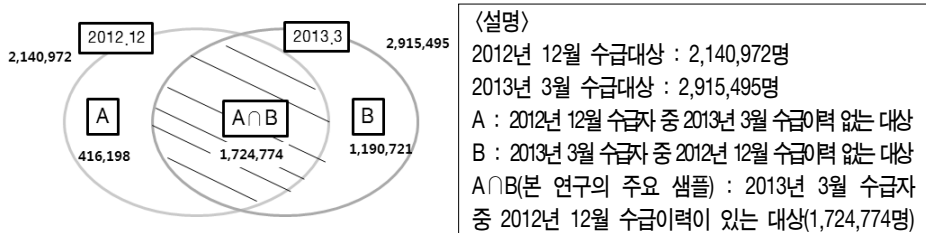
- 연도별 보육료 지급현황은 '10년 3,335,511백만원에서 '12년에는 5,502,06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 계층 대상으로 확대된 '13년의 경우 7월까지의 지급액이 3,521,781백만원으로 나타났고 '12년과 '13년을 월별로 비교하였을 때 매월 2~300억원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양육수당은 '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되었으며 '12년 전체 지급액은 약 205,283백만원이었으나 전계층으로 확대된 '13년 3월 한달의 양육수당 지급액은 약 136,545백만원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3년도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총 3조 1,809억원이며 이중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예산이 84.6%인 약 2조 7,653억원으로 편성됨
- '12년 12월 기준 등록 어린이집은 총 42,527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 어린이집 54%, 민간 34%, 국·공립 5% 등으로 나타나고 아동 보육비율은 국·공립 10%, 민간 52%, 가정 25% 등으로 나타남
- '13년 기준 유치원은 총 8,678개소가 운영중이며 국·공립 52.7%, 사립 47.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용아동 비율은 사립 78.4%, 국·공립 21.6%로 나타남

IV. 자료선정 및 변수정의

1. 분석자료 및 대상

-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행복e음 DW(Data Warehouse)를 통해 산출하였고 '12년, '13년도의 2개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12년 12월 31일, '1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데이터 산출

- 데이터 추출 모수는 '13년도 보육서비스 신청 및 자격부여 대상자 2,915,495명과 '12년 자격이 부여된 2,140,942명의 수급이력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추출



2. 변수의 정의

-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아동 연령대, 소득·재산, 개인·가구, 기관, 지역의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개념별 세부 변수를 설정함
- 아동 연령은 개월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 보육정책은 '12년 기준 총 22개의 자격ID를 크게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범주화하여 변환('13년도 자격 ID는 17개)
- 소득·재산 관련 변수는 행복e음 상의 소득재산 중분류(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금액)별 금액으로 구성
- 개인·가구구성 관련 변수는 개인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성별, 출생순위를, 가구 구성은 한부모·기초생활 여부, 부·모·기타양육자(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타 양육자 동거여부로 구성
- 기관특성 변수는 시설인증통과율, 시설인증유지율, 시설접근성으로 구성
- 지역특성 관련 변수는 지자체 유형(시, 군, 구)으로 구성

V. 영유아 정책 선호도 및 영향요인 분석

1. 지속 유지자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 '12년도 대비 '13년도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아동연령별 정책 선호도의 차이,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의 특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
-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설로 보내는 비율이 높음
- 보육지원 정책선택에 대한 독립변인의 특성 차이를 연령 그룹별로 나누어 분석함
- 그룹 1(만 0~1세)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 발생
 -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일수록,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조부모와 동거할수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
- 그룹 2(만 1~2세)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 가정, 조부모 동거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 발생
 - 아동성별이 남자 아이일수록, 장애아동일수록,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한부모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조부모와 동거할수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
- 그룹 3(만 2~3세)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 발생
 - 장애아동일수록,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한부모가정일수록,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일수록, 조부모와 동거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
- 그룹 4(만 3세 이상)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여부, 기초생활 수급,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 발생

- 아동성별은 남자 아이의 경우 보육시설 및 양육수당의 선택이 높았으나 유아학비 지원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남
 - 아동 장애여부는 장애아일 경우 비 장애아동에 비해 양육수당의 선택이 약간 더 높게 존재함
 -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 아동은 보육료 지원이, 둘째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이 더 높게 나타남
 - 조부모 동거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나 현금급여와 기관이용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비수급가구 에 비해 보육료지원이 높게 나타남
 - 지역구분의 경우 군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보육료지원을 더 선택
- 정책선택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 1에서는 출생순위, 부 연령, 지역유형, 기관접근성, 인증통과율, 인증유지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남
- 그룹 2에서는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남
- 그룹 3에서는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모 연령, 소득유형,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남
- 그룹 4에서는 아동 성별, 아동 장애여부, 부 연령, 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남

2. 가족자산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 가족자산의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기관이용, 현금급여)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
 - 첫 번째로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 분석
 - 두 번째로 가구의 자산(소득·재산) 차이에 따라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으로 구분(하위 70%인 경우 저소득계층, 상위 30%인 경우 고소득계층)하여 연령별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 분석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봄
 - 그룹 1(만 0~1세)의 경우 지역규모, 모 연령, 부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2(만 1~2세)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여부, 모 연령, 조부모연령, 가구구성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3(만 2~3세)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모 연령, 부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4(만 3세 이상)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수급가구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봄
 - 그룹 1(만 0~1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시설의 인증 유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2(만 1~2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구구성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3(만 2~3세)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구구성원 수, 기관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그룹 4(만 3세 이상)의 경우 아동 장애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조부모 연령, 인증통과율, 인증유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다음으로 가족자산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만 0~1세는 출생년도에 따라 자산조사 파악이 달라지므로 그룹 2(만 1~2세)부터 분석을 수행함
- 그룹 2(만 1~2세)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 출생순위, 모 연령, 소득유형, 가구구성원 수, 조부모 동거여부,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임
 - 그룹 3(만 2~3세)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 출생순위, 소득유형,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기관 접근성, 인증 유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모 연령, 소득유형,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임
 - 그룹 4(만 3세 이상)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 아동 성별,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소득 유형,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 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 인증 유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아동 성별, 아동 장애여부, 부 연령, 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 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본 절은 '13년부터 영유아 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공되는 영유아 지원정책 중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한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12년 대비 '13년 양육수당으로의 변동자는 총 80,327명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동이 76,804명,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동이 3,523명 이루어짐
- 연령대별 대상자 중 현금성 급여로의 변동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 변동자와 미변동자 간의 교차분석 및 평균비교를 실시함
 - 1세 미만에서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족 수급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구구성원 수, 소득합계, 순재산액, 지역구분, 평가인증 통과율, 기관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2세 미만에서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 성별과 기타 양육자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3세 미만에서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타양육자 연령과 기타양육자 여부, 순재산액 합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3세 이상에서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 연령, 기타양육자 연령, 소득합계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종합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책변동자의 전체 비중을 줄어 들고 있으며 변수 가운데 명목변수를 제외한 범주형 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책

변동자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즉 소득·재산액,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 등의 변수에 있어서 정책변동자가 소득·재산액이 적고,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금성 급여로의 변동이 이루어진 대상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1세 미만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도출되지 않았음
- 1~2세 미만에서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총액이 감소할수록, 가구 재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 2~3세 미만에서 장애아동일수록, 모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재산총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자일수록,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보육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 3세 이상에서 아동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비장애아동일수록, 모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총액이 감소할수록, 가구 재산총액이 증가할수록, 가구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지역 내 시설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 종합하면 연령대별 정책변동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주목할 것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변수로, 1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였으나 시설 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성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의 만족도 증가를 위해 양적인 증가 이외에도 질적인 부분의 제고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음

VI. 결론

- 본 연구는 '13년부터 변화된 영유아 지원정책에 따라 정책변동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책선택 현황과 해당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즉, 제도 시행과 동시에 처음으로 보편서비스화된 영유아 지원정책의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보육부분의 큰 정책변화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실태분석이 아닌 행정자료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정책선택 행태를 분석한 데 큰 의의가 있음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00년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강화로 보육과 관련된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재원은 점증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확대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재정지원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보육지원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복지부문과 주요 정부정책 화두로 자리매김한 이후 정부는 보육지원에 대한 예산투입이 급증하였고 '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발전하였다.

보육지원정책은 '12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를 대상(※ 0~2세 및 5세는 무상, 이하 12년도는 소득하위 70%로 가정하고 서술)으로 하였으며 '13년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예산은 '12년 대비 34% 증액되어 4조 1,77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보육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앙부처 중심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단순한 보육정책 목적을 넘어 가족관련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 모두가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양립토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기본적인 지원정책은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지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핵심은 부모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을 부여하면서, 이와 함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과 양육을 위한 방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영유아 보육지원책은 취업모의 직장과 가정생활 영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인간발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기에 대한 케어(Care)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책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서비스인 동시에 부모의 여가생활과 자녀의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육관련 지원정책은 기존 남녀 노동권, 특히 일-가정 양립권과 함께 부모들의 개인 삶의 영위권 증진과도 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보육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내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3년 보육정책의 보편적 확대를 둘러싸고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과 대립적인 양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 정책적 대립의 핵심은 재원이며,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매칭예산에 따른 논쟁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화두로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12년 하위 70%까지 지급되던 영유아 보육관련 사업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선택권이 부여되면서 정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의 증가와 보육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대상자들도 시설수요가 발생하면서 보육관련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관련 문제가 복지재정, 특히 보육재정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권에 대한 논의, 정부 내 이해관계자간 대립 및 행재정적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 보육과 관련된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욕구 또는 선택에 대한 문제보다는 복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율과 시설이용자와 부모간의 애착관계 그리고 부모-영유아 간 정서적 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 들어 보육재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재정과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패턴과 행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물론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측면에서 복지사업의 선호유형과 선택유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 역시 모든 영유아 지원정책을 포괄하거나 부모와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되는 점이 자료 접근 및 수집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설 이용자 및 교사의 설문조사에 의존하였으며, 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분석이 이루어져서 복지정책의 변화와 복지대상자의 면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13년 3월을 기점으로 복지대상자의 선택과 이러한 선택에 미치는 유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데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3년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이 잔여적인 복지지원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선택현황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핵심적인 사안은 '13년 보육정책의 변화, 특히 잔여적인 복지에서 보편주의로 복지대상이 확대된 점과 복지대상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점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대상자는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중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에 초점을 두고, 복지급여 선택권이 부여되기 전후인 '12년과 '13년 보육관련 정책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보육관련 연구들은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유아기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관련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의 직접양육보다 대리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을 설명하더라도 단편적인 부문에서 당위성이나 일가정 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거시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시적인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닌다.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화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그리고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직접양육과 대리양육 그리고 영유아 지원정책과 부모의 선택권에 대해 전반적인 보육관련 정책적 이슈를 다루었다. 특히, '12년 복지대상자 전수 자료와 '13년 3월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전 신청자를 대상

으로 정책변동 비교분석과 아동 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데 의의가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13년 3월 보편화된 보육관련 복지사업의 이용 대상자들이 어떠한 복지사업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유인들이 작용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영유아 지원 사업,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동 연령을 4개 그룹, 즉 0-1세, 1-2세, 2-3세 그리고 3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별 선택현황과 결정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주요 연구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13년 획기적으로 변화한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정책관련 복지대상자 선택현황과 이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첫째, '12년 영유아 지원정책 이용대상자가 '13년도 3월에 어떠한 유형의 급여(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선택을 하였고, 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2년 까지 영유아 복지사업은 소득 하위 70%까지 주어졌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거주자·장애아동 등을 제외하고는 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오직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3년 3월 이들에게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그리고 유아학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신의 복지욕구와 상황에 맞게 보육급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2년 대비 '13년 지속 유지자의 '13년 급여선택 유형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아동특성(성별, 장애, 출생순위), 가구특성(부연령,

모연령, 소득유형, 가구구성원 수, 조부모 동거,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지역특성(지자체 유형, 기관접근성) 그리고 시설특성(인증통과율, 인증유지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2년 대비 '13년 지속이용자들의 '12년 이용사업과 '13년 선택 사업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12년 대비 '13년 지속수급자들의 선택에 미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권 없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주로 보육료만을 지급받던 기존 '12년 수급자들이 '13년 3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상황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일컬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이들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라 '13년 3월 선택현황과 선택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선호도 차이를 아동 연령별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선택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수급 계층의 선택을 현금급여(양육수당)와 기관이용(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이분화 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 간 현금급여와 시설이용에 대한 보육급여 선택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요인 차이를 다변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행복e음 데이터를 통해서는 저소득계층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구분을 영유아 1세 이상을 기준으로 '12년 대비 '13년 지속수급자 계층과 '13년 신규신청자 계층을 구분하여 소득차이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12년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한정되어 보육료가 집행

되었기 때문에 지난 '12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13년 1세 이상 신청자는 '12년 기준 소득 상위 30%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유아 만 1세 이상의 '13년 신규신청자는 지난해에 신청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아 탈락한 집단이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간 보육정책의 선택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고, 이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의 선택현황과 이들의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또는 농어촌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던 현금성 양육수당의 대상자가 '13년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이들 선택의 유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주제는 '12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이 주어졌지만, 13년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이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연령을 4그룹으로 구분한 후 아동특성(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가구특성(한부모, 기초수급자 여부, 부모연령, 기타양육자 연령, 소득합계, 순재산액), 지역특성(시군구) 그리고 기관특성(인증율, 유지율, 접근성)에 따라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를 구분하여 보육서비스 선택의 변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2년 대비 '13년 현금성 급여를 선택한 대상자, 즉 기존 기관시설 이용자에서 양육수당으로 정책변동이 발생한 대상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양육수당 선택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

제1절 자유선택의 개념 및 주요 쟁점

제2절 현금급여와 양육수당

제3절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 요인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보편화된 영유아 관련 복지급여 대상자의 급여선호는 어떠하였으며, 이에 미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문헌과 국내외 주요 쟁점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첫째, 복지대상자들이 행한 선택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13년 보육정책변화 중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양육수당의 보편화, 즉 직접양육과 관련성이 높은 양육수당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복지정책에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제1절 자유선택의 개념 및 주요 쟁점

1. 자유선택의 개념

자유선택이란 개인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사항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기회와 자율성을 의미한다(I. Carter, 2004). 이를 영유아 지원제도에 적용시켜보면 자유선택은 부모가 여러 가지 영유아 지원제도의 방식 중 자신의 자녀를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다영, 2009).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정책이 개

발·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현재의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영유아 관련 정책(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등)의 전 계층 무상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일견 정책에 대한 자유선택은 그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 양육에서의 자유선택의 쟁점은 크게 보육정책의 방향을 사회화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정양육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의 문제로 보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쟁점 이외에 민간 부문 보육시설 확대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장화'도 선택지점에 들 수 있다. 즉, 자유선택의 기본골격은 보육시설 이용, 양육수당 수급, 가정 내 개별양육서비스 이용, 민간보육시설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형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선택에 근거한 해외의 사례를 프랑스를 통해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출산 전 5년 중 2년 이상 일한 경우)을 충족했을 때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의 개별적 아동양육에 대해서 5인 이하의 민간(가정)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와 가정보육을 위한 보모를 고용했을 때 세금 지원 및 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정보육모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2. 돌봄의 사회화와 자유선택

현대 사회에 돌봄의 사회화가 등장하게 된 것은 산업의 발전에 따른 노동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족의 양육 기능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인구로의 편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과거 대가족제도에 비해 점점 2세대 이내의 핵가족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복지국가 젠더레짐(gender regime)으로 이인생계자(소득자) 모델이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가족에 대한 중간 수준의 현금과 조세 공제 등의 혜택을 지급하며 유급부모휴가에 대한 높은 국가지원을 제시하는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족정책 레짐(regime)이다(윤성호, 2011).

이와 같이 가족의 양육기능 저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인생계자 모델의 등장,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 증가에 따른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대응방안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기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유는 국가-가족-시장 간 서비스 및 급여의 흐름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3. 자유선택의 쟁점 분석

아동 양육에 대한 자유선택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선택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보육서비스 자유선택에 대한 수용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송다영(2009)에서 제시한 보육서비스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자유 개념, 사회정의, 아동양육과 국가역할, 재정효율성, 사회적 바람직성 전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별로 자유선택에

대한 수용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별 차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보육서비스 자유선택에 대한 수용적 입장은 가정양육수당과 개별양육을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이 입장에서 자유의 개념은 가족들이 다양한 형태의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정의란 여러 형태의 양육 방식을 사용하는 가족 간의 형평성을 의미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역할은 아동양육을 수행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효율성은 보육시설이 아동 수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전제는 개별 가정이 아동보육의 최적의 장소이며 여성의 순차적 양립을 통한 부모권과 노동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실업과 저임금에 대한 완충제(buffer)로서의 여성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서비스 자유선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공공보육서비스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 입장에서 자유의 개념이란 개인이 일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일과 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정의란 성별간 평등, 다양한 가족형태나 계층적 차이를 넘어서 아동 간의 평등을 의미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역할은 아동보육을 장기적 사회발전 속에 배치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효율성은 생산가능잠재집단인 여성의 노동인구 진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전제는 공동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이 아동보육을 위해 더욱 적절하며 남녀모두의 부모권과 노동권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실업과 저임금에 대한 완충제 역할이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송다영, 2009).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자유선택에 대한 입장별 쟁점분석¹⁾

	자유선택 수용적 입장: 가정양육수당/개별양육 옹호	자유선택 부정적 입장: 공공보육서비스 옹호
자유 개념	가족들이 다양한 형태의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개인이 일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일과 가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
사회정의	여러 형태의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가족 간의 형평성	성별간 평등; 다양한 가족형태나 계층적 차이를 넘어서 아동간 평등
아동양육과 국가역할	아동양육을 해나가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아동보육을 장기적 사회발전속에 배치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주력
재정효율성	보육시설은 아동수 변화나 지역적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비효율적	생산가능잠재집단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재정효율적이며 이를 가능케하는 보육서비스 확충필요
사회적 바람직성 전제	개별가정이 아동보육의 최적 장소이며 여성의 순차적 양립을 통한 부모권과 노동권 조화	공동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이 아동보육을 위해 더 바람직하며 남녀모두의 부모권과 노동권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실업/저임금 완충제(buffer)로서의 여성 노동자 수용	여성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 강조

4. 국내의 영유아 지원제도에서 자유선택의 쟁점 및 한계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인해 미래 근로가능인구의 급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인 사회문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지원제도를 통하여 출산을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즉, 부모들에게는 부모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동시에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1) 송다영(2009)을 재구성

영·유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윤홍식, 2005).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영유아 지원정책은 예산 및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2013년 들어서면서는 GDP 대비 1% 수준의 보육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영유아 지원정책의 확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보다는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곧, 전반적 가족정책의 기조를 탈가족화, 사회화, 공공성 강화에서 재가족화, 개별화, 시장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선택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지원제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택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먼저 첫째로 충분히 다양한 영유아 지원제도의 선택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로 부모들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경제적 재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의 부모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2절 현금급여와 양육수당

1. 현금급여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련의 서비스를 복지급여라고 지칭한다. 복지급여의 형태에 대해 Gilbert & Specht(1973)는 크게 기회(Opportunity), 서비스(Service) 현물(Goods) 바우처(Voucher) 및 세금공제(Tax Credit), 현금(Cash), 권력(Power)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박경일, 2011).

먼저 기회(Opportunity)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 및 제재 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기회의 급여라 할 수 있으며 기회의 급여는 복지대상자의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급여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서비스(Service)는 대상자를 위해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는 복지대상자에게 즉각적인 시장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기회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급여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여타 사회정책과의 구분되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물(Goods)급여는 식품, 의복 및 주택 등 구체적인 상품을 말한다. 현물급여는 복지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로써 목표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욕구 충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 개인선택의 자유 확보가 어렵고 스티그마(Stigma) 효과가

가장 크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바우처(Voucher) 및 세금공제(Tax credit)를 통합하여 Gilbert & Specht(1973)는 신용(Credit) 급여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급여는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들 사이의 선택을 위해 통용되거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통용가치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공제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EITC의 경우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을 벗어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받게되는 해당 바우처에 대해서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 금액에 대한 결재를 진행하고 그 외의 바우처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방지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금급여(Cash)는 복지대상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급여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복지급여의 사용가치에 주목한 급여형태라 할 수 있다. 현금급여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행정적인 처리도 수월하며 소비자 주권과 복지대상자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반면 급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효율성 측면에서는 타 급여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력(Power)급여는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의 대표자들을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이사로 선임하는 정책을 통하여 추구되어진다(박경일, 2011). 권력급여는 현금이나 신용급여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더욱 폭넓은 복지대상자 공동의 사회·경제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 급여로 볼 수 있다. 이상 여섯 가지의 급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복지급여의 형태 및 특징(Gilbert & Specht, 1973 ; 박경일, 2011)

급여형태	특징	예시
기회(Opportunity)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 및 제재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서비스(Service)	복지대상자에게 상담, 교육 등의 훈련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자활을 지원	민간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
현물(Goods)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공 등
바우처 및 세금공제(Credit)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지니는 급여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 간 선택 가능	EITC, 사회복지서비스전자바우처 등
현금(Cash)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화폐의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급여	저소득층 대상 각종 현금급여
권력(Power)	폭넓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교환가치 제공	사회적 약자집단의 대표자를 복지관련 기관의 이사로 선임

이 가운데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금급여의 개념은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현금(cash)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신의 보호에 대한 결정권을 줌으로써 독립성과 권한부여 제고라는 측면과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선택권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 간의 다소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관료주의적 한계와 복지다원화(welfare pluralism), 시민권과 소비자주의의 성장이 결합되면서 현대 복지국가의 새로운 산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석재은, 2006).

현금급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에버스(Evers)는 현금급여의 의미를 복지다원주의적 측면에서 단순히 상업적인 시장 지배를 위한 매개체도 아니고, 전통적인 가족보호를 향한 회귀도 아니며, 복지국가의 책임이 축소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가·시장·가족 간의 더 나은 균형 성취를 위한 새로운 다원주의를 모색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현금급여의 도입은 핵심적인 복지제공 주체인 국가·시장·가족 간의 책임과 역할에서의 새로운 균형을 이끄는 작지만 중요한 정책변환인 것이다(석재은, 2006; 김미혜, 이석미, 2007).

2. 현금급여의 장점

현금급여가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비용절감의 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복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복지수급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과 타 국가의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할 경우 현물급여에 비해 낮은 액수를 지급함으로써 비용억제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김미혜, 이석미, 2007) 사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복지서비스의 직접 수혜자 이외에 가족이나 친지 등 비공식적 서비스수혜자에게도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시설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측면에서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현금급여에 대한 비판점은 급여의 잘못된 사용, 이용자의 기능에 따라 현명한 선택능력 부족, 그리고 특히 영유아 관련 현금급여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는 여성의 사적 돌봄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탈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가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금급여가 가지는 복지급여로서의 효용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현물급여 및 바우처서비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티그마를 방지하고 복지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했을 때, 현금급여는 복지급여의 형태들 가운데 충분히 그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다.

3. 우리나라 영유아 분야의 현금급여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의 기조와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2000년대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개발·시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현금급여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가정에 제공되는 농어촌 양육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요보호아동 및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보조금 등이 시행되었다.

〈표 2-3〉 중앙부처 양육관련 현금급여 현황(2012)

급여명 (담당부처)	지급대상	급여액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 연령 : 만 36개월 미만 - 요건 : 기관 미이용 차상위계층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연령 :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인 (단, 18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고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포함)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 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 수급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 연령 : 만 5세 이하(단,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포함) - 소득 : 저소득 취약계층 농어업인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이에 준하는 축·임·어업 가구)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 4,400만원 미만(2자녀), 4,800만원 미만(3자녀), 5,200만원(4자녀)	- 시설 미이용 아동 :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45% 수준(단 5세아 이상은 50%) - 시설 이용 아동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 ·유치원교육비 지원단가의 70%수준

급여명 (담당부처)	지급대상	급여액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 등록 장애아동(소득수준 무관)	- 36개월 미만 : 20만원 - 36개월~취학 전 : 1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 연령 : 한부모가정 만 12세 미만 아동 - 소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 기 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 아동 1명당 월 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 만 13세 미만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 내입양가정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아동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유 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 또는 질 환이 발생한 아동(만 18세 도래 전까지)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 대상 : 월 551천원 - 중증장애인: 월 627천원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현금급여인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의 경우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이 되어 실제로 수급대상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에 비해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시설 보육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의 차이로 인한 지원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꾸준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뒤를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 복지부문 공약 가운데 ‘무상보육’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 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한 전 연령대 무상보육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종래 차상위계층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2) 2012년 1년 동안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포함)의 지급액은 총 205,283백만원이 었으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 연령대(0~5세)에 지급이 시작된 2013년 3월 한달의 양육수당 지급액은 136,545백만원에 달하며 이와 같은 양육수당의 확대는 2013년 보육예산 가운데 가정양육수당의 증감율이 75.2%로 급증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양육수당은 만 0~5세 연령대의 전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게 되었다.

4. 양육수당의 필요성

영유아 양육수당의 필요성은 아동의 육아와 더불어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혜미 외(2011)에서는 양육수당의 필요성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양육수당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여 건전한 아동발달을 통해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아동 양육, 생존 및 발달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편적 양육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성은 외(2009)의 연구에서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이전 및 세제혜택을 통하여 빈곤선 이하의 유자녀 가족의 빈곤율을 약 40%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보편적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수당 자체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출산율 상승을 부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요구되며 외국의 경우 수당제도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 성장의 질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최성은 외(2009)에 따르면 영국의 페리 프로그램 패널 자료 분석결과 취학 전 페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고용률(18% 증가), 월

소득(\$453 증가), 복지비용(17% 감소)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양육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젠더 차원에서 양육수당은 양육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탈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급여로서의 아동수당 급여액이 높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으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미국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편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육수당의 도입이 반드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여섯째,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서 1) 일정 기간 직장을 중단하고 자녀 양육을 전담, 2) 직장 일을 부분적으로 줄이고 자녀 양육과 병행, 3)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계속하는 방안의 세 가지로 선택권이 주어진다. 양육수당을 통해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금지원 방식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 입장에서 경제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는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홍승아, 2011; 유혜미 외, 2011).

즉 수요자의 직접적 욕구충족으로 인한 정책 체감도 상승과 재정 효율성의 증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³⁾

가. 양육수당의 필요성 인식

양육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및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형평성 측면과 필요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형평성 측면(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고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받는)을 조사한 결과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67.2%),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양육수당 비수급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88.8%),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201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공평하다는 의견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양육수당 비수급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95.2%)를 차지하였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92.5%, 미취업 96.5%). 또한 양육수당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상자들(수급자 및 비수급자)은 모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양육수당의 주요 효과

양육수당으로 인한 주요 효과를 아동발달증진, 부모의 선택권보장,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을 제고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3) 유혜미 외(2011)의 결과를 재구성

먼저 아동발달 증진(양육수당의 아동발달 증진 효과)을 살펴본 결과 모 취업여부에서 미취업모일수록, 자녀 수에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자녀연령에서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수당이 아동발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선택권 보장(가정 내 양육의 선택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모의 선택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양육수당 수급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 평균수입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적절성에서 양육수당을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육비 부담 완화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제고(양육수당이 추가 출산에 미친 영향)를 살펴본 결과 월 평균수입에서 월 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적절성에서 양육수당이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육수당으로 인한 추가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복지급여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해당 복지급여 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가구소득 관련 요인, 가족특성 요인, 아동관련 요인, 지역관련 요인, 시설관련 요인을 범주화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각 요인별 정책선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영향요인 범주는 다섯 개로 구분되며, 첫째, 가구소득 관련 요인은 소득 및 재산항목, 가족특성 요인은 부모요인(부모 연령) 및 가구요인(가족 형태, 조부모 연령 및 동거여부, 가구원 수, 가구 내 아동 수), 아동관련 요인에서는 아동의 장애여부, 성별 및 연령, 지역관련 요인에서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형태이며 시설관련 요인은 시설인증, 통과율 그리고 접근성이다. 이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소득, 아동, 가구, 지역 그리고 기관관련 주요 요인들이 기존문헌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영유아 지원정책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에 살펴보았다.

1. 가구소득 관련 요인

가구소득과 관련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및 재산항목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부모의 취업여부(특히 모 취업여부)를 추가하여 가구소득 관련 요인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임유경(2008)의 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유무와 가구소득이 보육시설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유무에 따른 보육시설 선호는 취업모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가정보육시설을,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보육시설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설, 홍경준(2012)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관련 요인에서 모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을 변수로 하여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모 취업의 경우가 대리양육, 즉 개인 대리양육 및 시설양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에서는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모 근로형태, 부의 노동시간, 빈곤여부, 욕구대비소득비⁴⁾ 등의 가구소득 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모의 근로형태에서 전일제근로 및 초과근로를 할 경우 기관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대비소득비에서는 유사빈곤상태(욕구대비소득비 1~2 구간)에서 친인척보육보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화, 조복희(2010)의 연구에서는 보육유형을 어머니, 조부모, 시설보육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소득관련 변인으로는 모 취업여부, 가정소득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 취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모가 미취업 상태일 때는 직접 보육을, 취업상태일 때는 조부모 내지는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2004)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기관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녀, 모, 가구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중 가구소득관련 요인으로는 모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 취업여부가 보육시설과 학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취업상태일 경우 보육시설과

4) 욕구대비소득비(income-to-needs-ratio) :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원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에서는 욕구대비소득비가 1 이하인 경우 빈곤층으로, 2 이하인 경우는 유사빈곤층으로, 2를 넘는 경우는 비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학원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가구소득의 경우 유치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욱(2011)의 연구에서는 모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보육서비스 선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유치원 선택확률 대비 조부모/육아도우미 선택확률이 3.6배 가량 높게 나타나 취업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 조절이 용이한 개인보육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약 4.5배)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놀이방 이용에 비해 월평균 약 11만 7천 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영은, Elizabeth P. Pungello(2007)의 연구에서는 미국 North Carolina 지역 161 가구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수준과 인종에 따라 가족들이 선택하는 영아보육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선택결과 고소득일수록 타인에 의한 대리보육을 더 이용하였고 대리보육 가운데서도 데이케어 센터 등 시설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은주 외(2011)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양육유형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머니 직접 양육이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으로 갈수록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5.3%)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갈수록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00만원 이상 개인대리양육 93.1%).

요약하면, 가구소득 관련 요인 가운데 소득·재산항목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요인을 살펴 본 결과 소득·재산의 경우 소득

이 증가할수록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하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친인척 보육보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가운데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 현황에서는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 취업모의 경우에 직접양육 보다 대리양육(개인 및 시설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에서도 국공립 및 법인시설보다는 가정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특성 요인

가족특성 요인은 크게 부모요인과 가구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모요인은 부모의 연령이 있고 가구요인은 가족형태, 가구원 수, 가구 내 아동 수 등의 요인이 있으며 이 변인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유경(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요인으로 모 연령, 모 학력을 살펴보고 가구요인으로 가족형태, 가구 내 아동 수(자녀 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요인은 모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모 연령이 높아질수록(20대 → 40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요인에서 가구형태의 경우 3세대 이상 가정에 비해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법인보육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3세대 이상 가정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수에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였으나 2명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설, 홍경준(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요인으로 모의 연령을, 가구요인으로 가구원 수 및 미취학 아동 수를 살펴보았다. 모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 대리양육의 선호 가능성이 높아졌고 가구요인 중 미취학 아동 수의 경우 미취학 아동 수가 증가할수록 직접 혹은 개인 대리양육보다 시설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화, 조하나(2012)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취업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모 관련 변수, 가구 관련 변수, 지역관련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내 자녀수가 적을수록 유치원에 보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요인 중 성인가구원 수가 보육·교육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인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기관보육(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내 부모 외의 성인이 있을 경우 대리보육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김지경(2004)의 연구에서는 가구특성 중 모 연령, 자녀 수, 학력 등을 요인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가운데 모 연령에 따라 교육·보육시설 중 학원이용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고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선욱(2011)의 연구에서는 모 연령, 모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 가족형태 등의 변수가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모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육아도우미 등 직접대리보육보다는 어린이집/놀이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모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시설 중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약 2.1배)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가족에 비해 자녀양육의 조력자가 있는 확대가족의 경우 시설보육(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에 비해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게(약 14.2배) 나타났다.

백은주 외(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변인(부모 연령, 학력, 근로시간)에 따른 양육자 유형(어머니, 대리양육)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모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대리양육보다 어머니의 직접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연령에 따른 대리양육 유형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 개인대리양육의 선택 비율이 높은 반면(93.0%), 부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비율(20.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가족특성 요인 중 부모요인과 가구요인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요인에서는 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개인대리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리양육보다는 모의 직접양육을 선택하였고 대리양육의 경우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형태에 있어서 시설양육보다는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요인에서는 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자녀 가구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형태에 있어 기관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중 가구 내 아동 수의 경우 아동 수가 적을수록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을 선호하였으며 보육형태에 있어 시설양육보다는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관련 요인

아동관련 요인에는 아동의 성별, 연령 등이 있다.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아동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기관보육(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가 아래일수록 친인척보육보다는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화, 조복희(2010)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 직접보육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지경(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관련 요인 중 아동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육·및 보육시설 이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연령이 모든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시설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선욱(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보다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자녀연령이 1세 높을수록 시설에서도 어린이집/놀이방보다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아동관련 요인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아동관련 요인 중 연령에 따라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호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시설 중에서도 어린이집/놀이방보다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관련 요인

지역관련 요인에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형태, 지역 내 거주기간 등이 있다.

최상설, 홍경준(2012)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대도시가 여타 지역에 비해 직접양육보다 개인 대리양육을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 양육보다 시설양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양육을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로 세분하여 지역규모별로 유형 선호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서 중소도시의 경우 미인증시설 양육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증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이 많은 중소도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최상설, 홍경준, 2012).

이진화, 조하나(2012)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을 서울, 광역시, 시, 군 및 도농복합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선택을 살펴본 결과 광역시 혹은 시 단위에 거주할수록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관련 요인 중 지역규모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대도시의 경우 직접 양육보다 개인 대리양육 및 시설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 유형에 있어서 중소도시 혹은 광역시 단위에 거주할수록 미인증시설 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요인

기관요인에는 기관의 질, 기관의 접근성(지역 내 시설의 충분성 등) 등이 있다. 이나경(2012)의 연구에서는 모의 보육시설 선택요인을 보육시설과 관련한 교육적, 환경적,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는 기관의 질적인 측면(교육적, 환경적 차원)과 기관의 접근성(물리적 차원)과 유사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택요인 중 환경적 차원(5점 만점 기준 4.17)과 교육적 차원(5점 만점 기준 3.99)이 높은 인식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보육시설 선택에 있어 기관의 질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던 반면 물리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3.48)를 보여 기관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관의 접근성은 영향을 적게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김진희, 임태균(2009)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보육시설 선호요인을 시설운영, 교육내용, 시설환경, 인적요인, 안전요인 등으로 나누어 중요도를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 교육의 질 및 안전도 등 보육시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측정된 데 비해 통원 거리 등 거리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이나경(2012)의 연구와 유사하게 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기관과의 거리 등 물리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기관 관련 요인 중 본 연구에서 변수로 설정한 기관의 질과 기관의 접근성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인식도는 높게 측정된 반면, 기관의 접근성 등 물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도 및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나 양육대상자들은 보육시설과 관련된 변인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질 문제, 즉 평가인증여부 및 교육의 질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제1절 영유아보육 지원정책의 개요

제2절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제3장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제1절 영유아 지원정책의 개요

1. 영유아 지원정책의 범위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즉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국가의 개입(소득하위 70% 대상 무상보육)이 본격화 되었다. 2013년 현재 전계층 영유아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보육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①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만 3세가 된 영유아 포함)
- ②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 ③ 만 12세까지의 장애아(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보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총 6개의 국가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 ① 만 0~2세 보육료(전계층)
- ② 만 3~5세 보육료(전계층)
- ③ 장애아 보육료(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가구)
- ④ 다문화 보육료(만0~5세아 중 다문화가구)
- ⑤ 방과후 보육료(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 ⑥ 시간연장형 보육료(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지원)

〈표 3-1〉 영유아 보육료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연령	월 지원금액(단가)
만0~2세 보육료	전계층(소득, 재산 무관)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5세 보육료	전계층(소득, 재산 무관)	만3 ~ 5세	220,000원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동(소득, 재산 무관)	만12세 이하	394,000원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 일반아동 장애아동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일반아동 100,000원 장애아동 197,000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일반아동 200,000원 장애아동 394,000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만0~5세, 다문화, 장애아(취학전) 지원아동	만0~5세, 다문화, 장애아동(취학전)	월 60시간 한도 일반 : 2,700/시간 장애아 3,700/시간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영유아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총 3개의 정책이 시행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 ① 만 0~5세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전계층)
- ② 장애아동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장애아)
- ③ 농어촌 양육수당(취학전 만5세 이하, 농어촌 거주,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표 3-2> 영유아 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연령(개월)	월 지원금액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전계층 (소득, 재산 무관)	0 ~ 11	200,000원
		12 ~ 23	150,000원
		24 ~ 35	100,000원
		36개월 이상 ~ 취학전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	취학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 어린이집 미이용 농어업인 가구	0 ~ 11	200,000원
		12 ~ 23	177,000원
		24 ~ 35	156,000원
		36 ~ 47	129,000원
		48개월이상 ~ 취학전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 어린이집 미이용	0 ~ 35	200,000원
		36개월이상 ~ 취학전	100,000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3)

유아교육의 측면에서 유아학비 지원인 영유아 누리과정(만3~5세)은 2011년도 까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지만,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의 전 계층 확대, 2013년부터는 만 3 ~ 5세까지 전 계층 무상 누리과정이 실시되었다. 또한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유아교육의 형태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유치원에서 시행

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교육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표 3-3〉 유아교육(유치원) 누리과정 관련 정책 및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연령(개월)	월 지원금액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 전계층	만 3~5세	60,000원
	사립 유치원 이용 전계층	만 3~5세	220,000원

자료 : 교육부(2013)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대상은 201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보육료에서 만 3 ~ 4세의 소득하위 70%가 지원받았지만, 2013년도에는 전 계층에 지원되었으며,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었으나, 2013년 만 0~5세 취학 전 전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표 3-4〉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정책 년도별 비교

구분	연령	2012년		2013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금액
보육료	만0세	소득무관	394,000원	소득무관	394,000원
	만1세	소득무관	347,000원	소득무관	347,000원
	만2세	소득무관	286,000원	소득무관	286,000원
	만3세	소득하위 70%까지	197,000원	소득무관	220,000원
	만4세	소득하위 70%까지	177,000원		
	만5세	소득무관	200,000원		
양육수당	만0세	소득하위 15%까지	200,000원	소득무관	200,000원
	만1세	소득하위 15%까지	150,000원	소득무관	150,000원
	만2세	소득하위 15%까지	100,000원	소득무관	100,000원
유아학비	만3세	소득하위 70%	197,000원	소득무관	220,000원 국공립(60,000원)
	만4세	소득하위 70%	177,000원		
	만5세	전 계층	200,000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3), 교육부(2013)

해외 국가의 양육수당 지급 사례는 아래의 <표 3-5>과 같다. 이들 국가 중 일본의 사례를 제외하면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영국).

<표 3-5> 해외 양육수당 지급사례

국가	내용
노르웨이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함. -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취학 전 입양 아동으로 최대 23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프랑스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사를 하지 않는 보편적 수당으로 0~6세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보조금, 3~6세 가정내 보육수당 등이 있음.
스웨덴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도입,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가정에 지원 됨. - 자녀가 태어난 달 또는 스웨덴에 이주한 달부터 자녀연령 1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연장이동수당, 다가족지원금)
영국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부터 아동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아동급여제도 도입 -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 -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 자녀가 교육이나 훈련 중인 경우는 20세까지 지급 - 첫째 자녀 주당 20.30파운드, 둘째자녀부터 주당 13.4파운드
캐나다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6월 캐나다 정부의 '종합육아계획'의 일환으로 도입 - 대상: 6세 미만인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달 러씩 지급 - 신청자격: 캐나다 거주자에 한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외에 수당을 신청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도 포함.
일본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제한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중학교 졸업까지 월 10,000~15,000엔 -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 사람에게는 특별급부로 월 5천엔

※ 자료출처: 국회 최동익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13.10.13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2010년 12월 기준)는 연령별로 민간, 공공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1세까지 시설중심보육(가정보육 포함), 만2세 ~ 만3세까지 가정보육, 만4세 ~ 만5세까지 학령전 학교(유치원) 교육을 큰 체계로 하고 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체계는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OECD 주요 회원국의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체계

아동연령	시설중심 보육 (Centre-based care)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학령전 학교 (Pre-school)		의무교육 (compulsory school)	
	0	1	2	3	4	5	6	7
호주	- 허가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반일제(주 20시간) 또는 종일제(주 50시간까지) 이용 가능				- 유치원(반일제, 주 25시간) - 방과 후 보육 제공		의무교육(의무취학)	
오스트리아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반일제(주 25시간)		- 유치원(반일제, 주 25시간) - 방과 후 보육 미발달				의무교육(의무취학)	
벨기에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유치원(2세-2세반에 시작, 반일제 또는 종일제) - 방과 후 보육 제공				의무교육(의무취학)	
캐나다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유치원 (온타리오)	- 유치원 (퀘벡)	의무교육(의무취학)	
핀란드	- 지자체 조가개발센터 및 가정보육 - 종일제(주 50시간 미만)						취학전 교육	
덴마크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종일제(주 32시간 이상)		- 유치원 - 종일제(주 32시간 이상)				유치원(32시간 이상)	의무교육(의무취학)
	- 연령 통합시설 - 종일제(주 32시간 이상)							
프랑스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종일제		- 유치원				의무교육(의무취학)	
독일	- 시설보육		- 유치원				의무교육(의무취학)	
아일랜드	- 가정보육(규제대상) - 시설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교육(ECCE) - 영아교육(early start) - 학령전 학교				의무교육(의무취학)	
			- 학령전 놀이방					
이스라엘	- 시설보육과 가정보육		- 유치원 - 시설보육과 가정보육				의무교육(의무취학)	
이탈리아	- 시설보육 - 반일제(주 20시간) 및 종일제(주 50시간 미만)		- 학령전 학교				의무교육(의무취학)	

아동연령	시설중심 보육 (Centre-based care)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학령전 학교 (Pre-school)		의무교육 (compulsory school)	
	0	1	2	3	4	5	6	7
일본	- 시설보육 - 가정보육				- 유치원		의무교육(의무취학)	
네덜란드	- 시설보육, 가정보육 및 놀이방			- 초등학교(첫 번째 그룹)		의무교육(두 번째 그룹)		
뉴질랜드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지역 유치원 및 놀이방			의무교육(의무취학)		
노르웨이	- 지방 가정보육이 포함된 유치원(종일제, 40시간) - 개방 유치원(barnchage)						의무교육(의무취학)	
폴란드	- 어린이집		- 학령전 학교				의무교육 (의무취학)	
포르투갈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학령전 학교				의무교육(의무취학)	
스페인	- 시설중심 학령전 학교		- 초등학교 유아 보육				의무교육(의무취학)	
스웨덴	- 학령전 학교(전일제, 주 30시간) - 가정보육(지방)						학령전 학 교(반일제)	의무교육 (의무취학)
스위스	- 시설보육		- 학령전 학교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				의무교육(의무취학)	
영국	- 어린이집 - 보육도우미 - 놀이방		- 놀이방 - 어린이집 - 조기교육(3-4세 아동 1.5시간 무보)		- 예비교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무취학)	
미국	-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학령전 학교 - 유치원(공사영역)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의무교육(의무취학)	

* **공공** : 주로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됨 (등록의 50% 이상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민간** : 주로 민간 이해관계자(영리/비영리)에 의해 운영되며, 공·사적 재원 혼합

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3)

제2절 영유아 지원정책 현황분석

1. 보육료 지급 현황

보육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조3천억 원, 2011년 4조, 2012년 5조 5천억, 2013년 7월까지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2012년에는 만 3~4세 아동의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그 외 나이의 아동에게는 전면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료 지원이 실현되어 보육료 지급액이 전년보다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육료 지급의 구성은 카드로 실제 결제한 보육료와 만0 ~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예외급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아동 1인당 361,000원, 1세 아동 1인당 174,000원, 2세 아동 1인당 1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 ~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표 3-7〉 연도별 보육료 지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	지급액 총계	카드결제 보육료	기본보육료	기타(예외급여 등)
2010년	3,335,511	2,272,234	976,431	86,844
2011년	4,080,989	2,900,900	1,095,522	84,566
2012년	5,502,062	4,151,661	1,339,270	11,132
2013년 7월까지	3,521,781	2,725,128	796,154	500

주 : 국고보조금, 지자체 분담금이 합산된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 DW(2013.8월 기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전 계층 만 5세까지 지원하기 시작한 2013년 3월부터 보육료 지급액은 전 계층 지원 전 년도인 201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3월은 1천억 원 이상, 4월 이후 200억 원 ~ 300억 원의 증가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8〉 2013년도 월별 보육료 지급 현황(7월 까지)

(단위 : 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2013년	522,622	524,235	501,900	480,639	493,953	489,055	509,377	3,521,781
2012년	374,977	394,724	384,167	447,560	459,252	463,477	475,666	7월이후 계 5,502,062

주 : 국고보조금, 지자체 분담금이 합산된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 DW(2013.8월 기준)

2. 양육수당 지급 현황

양육수당은 2012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까지 지급되었으며, 2012년도 전체 지급액은 약 2,05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3년 2월까지 소득하위 15%에 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 3월 전 계층에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된 2013년 3월의 양육수당 지급액은 약 1,365억 원으로 전년도 총 지원액의 66% 이상이 1개월(3월)에 지급되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전 계층 지원 전·후 양육수당 지급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계
2012년 전체	197,184	4,682	3,417	205,283
2013. 2월 (소득하위 15%)	16,574	1,409	344	18,327
2013. 3월 (전계층 실시 후)	135,206	1,053	286	136,545

자료 : 보건복지 DW(2013.8월 기준)

3. 영·유아 및 어린이집 현황

2012년 12월 국내 주민등록 총 인구 중 영·유아 인구는 3,265,160명으로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육시설의 주 이용대상인 만 0 ~ 2세까지('10년 ~ '12년생) 영아는 영·유아 인구의 약 43%인 1,407,605명이며, 3~6세까지의 유아인구는 영 유아 인구의 약 57%인 1,857,555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0〉 주민등록 아동 인구 수

(단위 : 명)

성별	계	'12년생	'11년생	'10년생	'09년생	'08년생	'07년생	'06년생
계	3,265,160	464,374	472,275	470,956	446,256	467,432	494,810	449,057
		1,407,605			1,857,555			
남	1,681,255	238,639	242,477	242,888	229,847	240,609	254,522	232,273
여	1,583,905	225,735	229,798	228,068	216,409	226,823	240,288	216,784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12. 31일 기준

2012년 12월 등록된 어린이집은 총 42,527개소,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203개소, 민간 어린이집 14,440개소, 가정 어린이집 22,935개소이다.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비율인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34%, 국·공립 어린이집은 5%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총 1,487,361명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인 149,677명을 보육 중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 이용 아동의 50% 이상인 768,256명이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이용 아동 중 25%인 371,671명을 보육하고 있다.

〈표 3-11〉 어린이집 수 및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 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100%	5%	3%	2%	34%	54%	0%	1%
어린이집 이용아동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00%	10%	8%	3%	52%	25%	0%	2%

자료 : 2012 보육통계(2012. 12. 31. 기준)

2011년도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39,842개소이며, 이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36,128개소로 90.7%의 통과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는 27,357개소인 68.7%로 다소 낮은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2〉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수

(단위 : 개소)

구분	2011년 기준 전체어린이집수(A)	인증통과 어린이집 수(B)	통과율(C=B/A)	인증유지 어린이집 수(D)	유지율(E=D/A)
계	39,842	36,128	90.7	27,357	68.7
서울	6,105	5,514	90.3	4,633	75.9
부산	1,740	1,685	96.8	1,123	64.5
대구	1,561	1,558	99.8	1,080	69.2
인천	1,998	2,128	106.5	1,480	74.1
광주	1,205	1,352	112.2	808	67.1

구분	2011년 기준 전체어린이집수(A)	인증통과 어린이집 수(B)	통과율(C=B/A)	인증유지 어린이집 수(D)	유지율(E=D/A)
대전	1,599	1,485	92.9	1,080	67.5
울산	818	731	89.4	540	66
세종	67	62	92.5	54	80.6
경기	11,825	9,946	84.1	7,699	65.1
강원	1,147	1,079	94.1	821	71.6
충북	1,133	1,038	91.6	785	69.3
충남	1,790	1,484	82.9	1,150	64.2
전북	1,580	1,679	106.3	1,173	74.2
전남	1,161	1,108	95.4	802	69.1
경북	2,162	1,928	89.2	1,561	72.2
경남	3,399	2,819	82.9	2,127	62.6
제주	552	532	96.4	441	79.9

자료 : 2012 보육통계

4. 유치원 현황

2013년 1월 1일 만 3~5세의 취원대상자는 1,384,548명, 이중 취원예정아동은 1,213,909명으로 예상된다. 2013년 유치원(Kindergarten)은 8,678개소가 운영 중이며, 약 65만여 명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표 3-13〉 유아인구 및 취원예정아 수

구분	생년월일	취원대상자	취원예정아
만 3세아	2009.1.1 ~ 2010.2.28	442,947명	386,406명
만 4세아	2008.1.1 ~ 2008.12.31	453,107명	390,441명
만 5세아	2007.1.1 ~ 2007.12.31	488,494명	437,062명
계	2007.1.1 ~ 2010.2.28	1,384,548명	1,213,909명

자료 : 교육부 유치원시스템(2013)

〈표 3-14〉 유치원 및 학생 수

구분	2012년			2013년		
	유치원	8,358개소	국공립 사립	4,525 4,013	8,678개소	국공립 사립
유치원 등록학생	613,749명	국공립 사립	127,347 486,402	658,188명	국공립 사립	142,052 516,136

자료 : 교육통계(2013)

연령별 유치원 이용아동의 수는 만 3세 아동이 전체의 21% 인 14만 여명이며, 만 4세 아동 35%(23만 여명), 만 5세 아동 42%(27만 여명)이며, 3세미만, 6세 이상의 아동이 0.5% 정도인 3,36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2013년도 연령별 원아수

구분	3세 미만	3세	4세	5세	6세	7세 이상	계
국공립	417	18,502	44,483	78,373	271	6	142,052
사립	2,292	124,567	189,443	199,453	379	2	516,136
계	2,709	143,069	233,926	277,826	650	8	658,188

자료 : 교육통계(2013)

2013년도 유아교육과 관련한 총 예산은 약 3조 1,809억 원이며, 이중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84.6%인 약 2조 7,65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타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가 각 6.6%, 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김문정, 2013).

〈표 3-16〉 2013년도 유아교육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총계
2013년도	27,653	1,814	2,432	31,899
	84.6%	6.6%	8.8%	

자료 : 김문정(2013), 2013 유아교육 예산, 육아정책포럼 제34호

자료선정 및 변수정의

제 1 절 분석자료 및 대상

제 2 절 변수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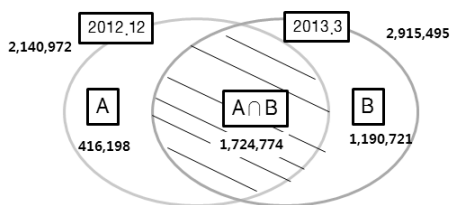
제4장 자료선정 및 변수정의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1. 데이터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행복e음 DW(Data Warehouse)를 통해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12년도, '13년도의 총 2년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2012년도 자료의 산출 기준일은 2012년 12월 31일, 2013년도 자료는 201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데이터 추출 모수는 '13년도 보육서비스 신청 및 자격부여 대상자 전체 2,915,495명, '12년도 자격이 부여된 보육서비스 대상자 2,140,942명의 수급이력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설명> 데이터 추출 모수 및 연구대상 선정



<설명>

2012년 12월 수급대상 : 2,140,972명

2013년 3월 수급대상 : 2,915,495명

A : 2012년 12월 수급자 중 2013년 3월 수급0력 없는 대상

B : 2013년 3월 수급자 중 2012년 12월 수급0력 없는 대상

A ∩ B(본 연구의 주요 샘플) : 2013년 3월 수급자 중

2012년 12월 수급이력이 있는 대상(1,724,774명)

DW 상의 데이터 코드명이 DM(Data Management) 이후 변환되어 정의된 코드에 대해 그 의미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기준년월은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므로, 한 아동이

2012년과 2013년 신청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두 해 모두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2012년만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2013년만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 자료로는 2012년 수급이력과 2013년 보육수급이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표 4-1〉 DW 데이터의 DM 이후 변환 코드 및 내용

구분항목	DW 데이터 코드명	DM 이후 변환 코드의미	내용
개인	기준년월	기준년월	201212, 201303
	복지주체ID	아동(개인) 구분변수	아동 식별 연속변수
	자격ID	영유아 보육정책 선택사항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신청ID	신청 구분변수	아동 신청 연속변수
	조사ID	조사 구분변수	아동 조사 연속변수
	관리행정지역코드	지역코드	시, 군, 구
	자격상태코드	자격상태	Yes, No
	신청경로구분코드	신청방법	온라인과 자차제 방문 코드값이 구분이 안되는 ‘{’이 대부분으로 사용안됨
	신청일자	신청일자	신청일자
	아동 장애인여부	아동장애여부	Yes, No
	아동 성별코드	아동 성별	남, 여
	주민등록기준 출생일자	아동 연령	2013년 기준 아동연령
	기초생활자격여부	기초생활 가구	Yes, No
	한부모가족자격여부	한부모 가구	Yes, No
가구	가구구분코드	가구 구분	가구 구분
	가구주 주체ID	가구 구분변수	가구 식별 연속변수
	가구 구성원 주민등록 출생일자	부 모 조부모 연령	가구 구성원 연령 연속변수
	가구주체와의 관계코드	가구 구성원 관계	결측이 많아 연령 및 성별로 추정
	가구구성원 수	가구구성원 수	가구구성원 수
	가구 근로소득금액	아동 가구 근로소득	아동 가구주의 근로소득
	가구 사업소득금액	아동 가구 사업소득	아동 가구주의 사업소득
	가구 재산소득금액	아동 가구 재산소득	아동 가구주의 재산소득
	가구 기타소득금액	아동 가구 기타소득	아동 가구주의 기타소득
	가구 일반재산금액	아동 가구 일반재산	아동 가구주의 일반재산
	가구 금융재산금액	아동 가구 금융재산	아동 가구주의 금융재산
	가구 차량금액	아동 가구 차량금액	아동 가구주의 차량금액
	가구 재산소득환산금액	아동 가구 재산소득환산금액	아동 가구주의 재산소득 환산금액

DW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의 형태는 [그림 4-1]과 같이 DB(Data Base)에 저장 이 수월한 형태로 한 아동의 수급이력이 한 데이터 테이블 안 에서도 여러 줄로 자료가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 통계자료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DM(Data Management)과정을 거쳐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구분	연도	지역	복지주체ID	신청ID	조사ID	소득신청ID	희생종류ID	관려발정지역코드	자격신청코드	신청결로구분코드	신청일자	장애인여부	자치단체구분코드	가구구분코드
1	2012	A000000051	M003275001	R010007700235	O010006675114	P01001195871150		113021500	3		20120309	N		
2	2012	A000000051	M003275001	R010007700235	O010006675114	P01001195871150		113021500	3		20120309	N		
3	2012	A000000053	M003275001	R0100078556113	O0100064617589	P01001166787515		115906050	3			N		
4	2012	A000000055	M0023108136	R0100078503720	O0100064234646	P01001199750795		431137000	3		20090622	N		
5	2012	A000000076	M010238544	R0100066594179	O010006530149	P0100006154415		231407000	3		20090506	Y		
6	2012	A000000729	M013242939	R0100066268650	O0100065723412	P01000942971330		2302051500	3		20090711	Y		
7	2012	A000000778	M003250743	R0100070108264	O0100065768352	P01001036782786		272905500	3		20120319	Y		
8	2012	A000000946	M0004975932	R0100078440702	O0100062297955	P01001141485048		4623953000	3		20110407	N		
9	2012	A000000982	M001738074	R01000786404939	O0100062351516	P01001146270147		469002500	3		20110302	N		
10	2012	A000001063	M0118414055	R010007841232	O0100066594401	P01001165895701		4127151000	3		20090702	N		
11	2012	A000001132	M0018567525	R0100080897827	O01000070314911	P01001268403350		2644053000	3		20110318	N		
12	2012	A000001270	M0031424318	R0100078367480	O0100068976543	P01001204765616		113206000	3		20120220	N		
13	2012	A000001392	M0033836901	R0100078984395	O0100068969597	P01001157826796		1150053000	3		20120314	Y		
14	2012	A000001354	M002388861	R0100078480635	O0100063634469	P01001145485882		427802500	3		20090503	N		
15	2012	A000001460	M0038257832	R0100078984154	O0100069190240	P01001239625292		4513956000	3		20120821	N		
16	2012	A000001518	M0036761978	R0100078995372	O0100068390300	P01001210069495		2915544000	3		20120615	N		
17	2012	A000001589	M00100078527659	R0100078527659	O0100063679861	P01001200172013		2636060000	3		20090220	N		
18	2012	A000001611	M034324939	R0100078502098	O0100068839552	P01001228404176		472903000	3		20090520	N		
19	2012	A000001804	M00100069591389	R0100069591389	O0100065076104	P01001000936143076		1150959100	3			N		
20	2012	A000001814	M0058300674	R0100078432403	O0100062977411	P01001142628874		467905500	3		20100506	N		
21	2012	A000001821	M0033145021	R0100078699548	O0100066274202	P01001181451309		1150053500	3		20120315	N		
22	2012	A000001939	M00100079730320	R0100079730320	O0100069075324	P01001235491162		4163056000	3			Y		
23	2012	A000002148	M0040289902	R0100078417646	O0100062890024	P01001144548339		1162077500	3		20090507	N		
24	2012	A000002450	M0017095425	R01000788278593	O0100063823591	P0100120959167		285007000	3		20090222	Y		
25	2012	A000002676	M0033128518	R0100078409771	O0100066987151	P01001174827840		4519052000	3		20120315	N		
26	2012	A000002680	M0004174616	R0100078642823	O0100064065835	P01001199895044		4511365000	3		20120315	N		
27	2012	A000002752	M00100078761893	R0100078761893	O0100068989840	P0100125643771		291557000	3			N		
28	2012	A000002870	M0030334668	R01000663398502	O0100066869016	P0100125372218		1150053500	3		20120314	N		
29	2012	A000002890	M001887138	R0100078701449	O0100064333582	P01001157791684		113207000	3		20090508	N		
30	2012	A000002926	M00100078441692	R0100078441692	O0100062728405	P01001134500444		4136025300	3			N		
31	2012	A000002958	M0011599129	R01000783021073	O0100063002251	P01001199784004		114405500	3		20110207	N		
32	2012	A000002976	M0035090995	R0100078360660	O01000695711695	P01001207273038		1153076000	3		20090423	N		
33	2012	A000002976	M0035090995	R0100078360660	O01000695711695	P01001207273038		1153076000	3		20090423	N		
34	2012	A000002976	M0035090995	R0100078360660	O01000695711695	P01001207273038		1153076000	3		20090423	N		
35	2012	A000003007	M003410181	R01000786486994	O0100064247872	P01001150786330		1153076000	3		20110512	N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
36	2012	A000003052	M004080053	R010007857496	O0100063270984	P01001200793079		1150062100	3		20090629	N		
37	2012	A000003067	M0038698994	R010007843209	O0100062821924	P01001196114828		2614054000	3		20120214	N		
38	2012	A000003168	M0031856797	R0100078378553	O0100067429471	P01001191649071		1121573000	3		20120224	N		
39	2012	A000003258	M00100078597040	R0100078597040	O0100062894477	P01001201118242		412051000	3			N		
40	2012	A000003580	M000362562	R0100078583378	O0100062785190	P01001201676241		4518057000	3		20100308	N		
41	2012	A000003736	M0033569581	R01000698210189	O0100065405448	P01000981625676		4719058300	3		20090501	Y		
42	2012	A000003846	M003192300	R0100078424458	O0100062784165	P01001200135735		4603951000	3		20090508	N		
43	2012	A000003895	M0028524651	R0100078710303	O0100062976715	P01001163162041		488804000	3		20111104	N		
44	2012	A000003969	M0017783527	R0100078640028	O0100062382287	P01001200280373		2820066000	3		20110308	N		
45	2012	A000003980	M0032443592	R0100080475242	O0100069789555	P01001259567121		114706000	3		20090716	N		
46	2012	A000003997	M0039198098	R0100078946143	O0100069189173	P01001238774676		1150053500	3		20120817	N		
47	2012	A000004001	M0038072120	R0100080242233	O01000071346919	P0100129493411		4139051000	3		20120814	N		
48	2012	A000004023	M0031684488	R0100080233596	O0100007137881	P01001295102339		114407000	3		20120222	N		
49	2012	A000004119	M0032759596	R0100080233416	O01000071541497	P01001298891869		2653061000	3		20120309	N		
50	2012	A000004281	M0038774766	R01000801122263	O01000070433658	P01001271498720		4371039000	3		20120211	N		
51	2012	A000004522	M00100078465702	R0100078465702	O0100063781428	P01001145609907		4518053000	3			N		

[그림 4-1] DB 적재 형태 및 DW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

DW 데이터는 각 아동에 대하여 자격ID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므로, 자격ID를 통하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으로 인해 신청 및 자격으로 이루어진 양상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신청ID와 조사ID는 한 아동의 개인 식별코드인 복지주체ID가 반복적으로 DW

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조사 ID를 찾아 DW 상의 자료들을 매칭하는데 사용되었다.

관리행정지역코드는 시, 군, 구를 바로 나타내지 못하여 8,188가지의 행정지역에 해당하는 코드들에 해당하는 DW 상의 테이블 [그림 4-2]를 사용하여 범주화하였다.

1	ADM_REGN_CODE	DEP_CODE	ADMDNG_NM	SIDO_NM	CGG_NM
13	1111059000	n/a	세종로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4	1111060000		3000049 가회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1111061000	n/a	종로1.2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1111061500		3000090 종로1.2.3.4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7	1111062000	n/a	종로3.4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8	1111063000		3000091 종로5.6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19	1111064000		3000053 이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0	1111065000		3000054 혜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1	1111066000		3000055 명륜3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2	1111067000		3000056 창신제1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3	1111068000		3000057 창신제2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4	1111069000		3000058 창신제3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5	1111070000		3000059 송인제1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6	1111071000		3000060 송인제2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27	1114000000		3010000	서울특별시	중구
28	1114051000	n/a	태평로1가동	서울특별시	중구
29	1114052000		3010087 소공동	서울특별시	중구
30	1114053000	n/a	남대문로5가동	서울특별시	중구
31	1114054000		3010042 회현동	서울특별시	중구
32	1114055000		3010043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33	1114056000	n/a	충무로4.5가동	서울특별시	중구
34	1114057000		3010045 필동	서울특별시	중구
35	1114058000		3010046 장충동	서울특별시	중구
36	1114059000		3010047 광희동	서울특별시	중구
37	1114060000		3010088 을지로3.4.5가동	서울특별시	중구
38	1114060500		3010095 을지로동	서울특별시	중구
39	1114061000		3010049 신당제1동	서울특별시	중구
40	1114062000		3010050 신당제2동	서울특별시	중구
41	1114063000		3010051 신당제3동	서울특별시	중구
42	1114064000		3010052 신당제4동	서울특별시	중구
43	1114065000		3010053 신당제5동	서울특별시	중구
44	1114066000		3010054 신당제6동	서울특별시	중구
45	1114067000		3010055 황학동	서울특별시	중구
46	1114068000		3010056 중림동	서울특별시	중구

[그림 4-2] 데이터 범주화 과정

자격상태코드는 DW 상에서 Yes에 해당하는 경우를 산출하였으며, 신청경로 구분코드는 코드값이 원래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정보가 채워져 있어야 하나, 대부분 '1'로 나타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자료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동장애여부와 아동성별, 그리고 기초생활 자격여부와 한부모가족 자격여부는 DW의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결측도 없었다. 그러나 아동연령을 추정함에 있어 아동의 주민등록기준 출생일자를 2012년 12월 31일 기준일 때와 2013년 3월 31일 기준일 때가 개월 수에 차이나 나타나 두 가지를 모두 새로운 변수로 정의하였고, 영유아 정책 선호도 분석에서는 2013년 3월 31일 기준의 연령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DW 데이터는 아동 개인의 자료로 산출이 가능하나, 가구로 구분되는 항목들은 아동인 개인의 자료로 구성할 경우, 아동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산출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데이터가 0이나 결측값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아동 개인이 포함된 모든 가구구성원들의 소득 재산을 모두 DW 상에서 추출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가구소득과 관련하여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에 대한 금액들이 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구성원의 수만큼의 Row로 표현되어 있는 DW 데이터를 각 가구의 아동에 해당하는 각 소득과 재산이 한 아동에 대해 한 줄로 연결되도록 새로운 변수로 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들의 성별과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가구주체와의 관계코드 항목이 모두 DW 상에 나타나야 하나, 그 내용들이 모두 DW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상의 출생일자를 통해 연령과 성별을 통해 부인지 모인지 조부모와 같은 기타양육자인지를 구분하였다.

더불어 DW에서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필요한 변수들이 한 번에 추출되기 어려워 '12년과 '13년 데이터들을 개인관련 서비스 자격 및 신청 테이블, 가구

관련 소득 재산 테이블, 가구 구성원의 출생일자 테이블로 각각 추출한 후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DM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체 기초통계 자료 분석과 단변량, 다변량 로지스틱 모델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림 4-3]과 같이 데이터를 변환했다.

번호	아이ID	성별	연령	연령구분	성별구분	소득	재산	yr2012	group2012	yr2013	group2013	지역	어머니연수	인종유사수	유치장	인종결과
239000	R010000817800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2	131	97	74.04581927	128
239001	R010000239745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606	412	61.98073666	492
239002	R010000231464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606	412	61.98073666	492
239003	R010000233279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215	164	76.27909375	232
239004	R010000036112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413	293	68.83300421	374
239005	R010000231381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075	688	64	904
239006	R010000239988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075	688	64	904
239007	R010000237892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075	688	64	904
239008	R010000173113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227	162	71.36663927	202
239009	R010000230629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97	239	65.20016441	398
239010	R010000481173	N	2009010	6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2	23	19	78.20080566	21
239011	R010000147451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915	527	57.66605915	521
239012	R010000873099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2	13	9	68.20878231	14
239013	R010000142249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381	211	58.44072863	321
239014	R010000915810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67	99	63.09147115	131
239015	R010000173438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417	337	60.81587122	398
239016	R010000148434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584	294	77.27272727	252
239017	R0100008790194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84	294	77.27272727	252
239018	R0100001689151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2	24	17	78.83300421	16
239019	R0100001170405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69	279	75.60976908	302
239020	R010000216464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99	40	67.79691099	45
239021	R0100009152919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025	625	63.39617343	792
239022	R01000091543195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19	240	75.235192718	281
239023	R0100001952167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189	134	70.89470099	208
239024	R0100002637348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34	282	78.44313772	296
239025	R010000239998	N	2009010	5	N	N	missing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82	296	75.32629197	324
239026	R0100004328232	N	2009010	3	N	N	201212	양육수당	201303	양육수당	3	382	296	75.32629197	324	
239027	R0100002248654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448	312	68.64297143	408
239028	R010000189778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191	133	68.83397863	181
239029	R01000091784158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191	133	68.83397863	181
239030	R0100000447173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3	191	133	68.83397863	181
239031	R0100008670311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3	191	133	68.83397863	181
239032	R010000257380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3	196	136	66.32958122	202
239033	R010000146114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599	424	70.78681168	541
239034	R0100009189900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44	296	77.23529197	304
239035	R0100002322785	N	2009010	4	N	N	Y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44	296	77.23529197	304
239037	R0100008173825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344	296	77.23529197	304
239038	R0100009188262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602	426	70.78411800	556
239039	R0100002634659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3	385	297	66.752629197	306
239040	R0100008683485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3	385	297	66.752629197	306
239041	R0100008682026	N	2009010	2	N	Y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1	1072	650	60.84263996	761
239042	R0100004113105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1072	650	60.84263996	761
239043	R0100008957862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1	609	389	62.42481493	488
239044	R0100002211102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3	167	115	68.80275449	141
239045	R0100002523259	N	2009010	5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733	466	63.57451978	656
239046	R0100009189226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733	466	63.57451978	656
239047	R0100009115625	N	2009010	4	N	N	N	201212	보통	201303	보통	1	230	188	73.841457621	232
239048	R0100008178605	N	2009010	4	N	N	missing	201212	보통	201303	보통	2	45	29	60.41668667	41
239049	R010000818464	N	2009010	3	N	N	N	201212	보통	201303	양육수당	1	147	101	68.70740250	117

[그림 4-3] SAS 프로그래밍을 통해 DM으로 변환된 분석 데이터

제2절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될 변수는 크게 아동 연령대, 소득·재산, 개인·가구, 기관, 지역의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개념 별 세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1. 아동 연령대 구분

아동 연령대는 개월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1그룹은 양육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12개월 미만 아동이며, 2그룹은 양육과 보육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12~24개월 아동으로 구성하였다. 3그룹은 보육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5~36개월 아동으로 구성하였으며, 4그룹은 보육과 유아학비 신청의 비율이 높은 37개월 이상 아동으로 구성하였다.

〈표 4-2〉 아동 연령대 구분

변수구분	그룹 구분	조작적 정의	변환 기준
그룹 1	0세 미만	12개월 미만	·기준일 -2013년 데이터 : 2013.3.31 -2012년 데이터 : 2012.12.31 ·자료원 : 행복e음 DW
그룹 2	1세 이상 ~ 2세 미만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그룹 3	2세 이상 ~ 3세 미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그룹 4	3세 이상	36개월 이상	

2. 영유아 보육지원정책 선택여부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은 정부 보육정책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정책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의 자격ID를 기준으로 변수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정책의 세부 항목(자격ID의 코드 값(예: 영유아보육료(만0~2세) 등))이 변수 구분자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포함되도록 데이터를 변환하여 보육정책과 관련한 변수를 최종 구성하였다.

〈표 4-3〉 보육정책 변수

변수구분	조작적 정의		변환기준
	2012년도 변수(자격ID)	2013년도 변수(자격ID)	
보육료 (기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료(만0~2세) ·영유아(법정) ·영유아(다문화보육료) ·영유아(만3~4세) ·영유아(만5세아) ·영유아(만5세아법정) ·영유아(만5세아다문화) ·영유아(만5세아장애아) ·영유아(방과후법정) ·영유아(방과후보육료)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료(만0~2세) ·영유아(만0~2세 법정) ·영유아(만0~2세 다문화) ·누리(3~5세) ·누리(3~5세 법정) ·누리(3~5세 다문화) ·누리(3~5세 장애아) ·영유아(방과후법정) ·영유아(방과후보육료) ·영유아(장애아방과후) ·영유아(장애아무상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별 정책을 선택한 변수(자격ID)를 기준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변수 변환 ·자료원 : 행복e음 DW
양육수당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양육수당) ·영유아(장애아동양육수당) ·영유아(농어촌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양육수당) ·영유아(장애아동양육수당) ·영유아(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 (기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 ·유아학비(만5세아) ·유아학비(만5세아법정) ·유아학비(만5세아다문화) ·유아학비(장애아) ·유아학비(만5세장애아) ·유아학비(법정) ·유아학비(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누리3~5세) ·유아학비(누리3~5세 법정) ·유아학비(누리3~5세 다문화) 	

3. 소득, 재산관련 변수

2012년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였던 영유아 보육정책은 소득재산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득 재산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2년도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존재하는 보육정책 수혜자의 경우 2013년도에도 해당 자료가 존재하여 소득·재산과 관련한 변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4-4〉 소득·재산관련 변수

구분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⁵⁾	변환 기준
소득	근로소득금액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근로소득	·3대 정책 동일 적용 ·2012년 소득재산 관정자료 기준 ·2013년도 신규 진 입자는 소득·재산 자료 별도 없음
	사업소득금액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금액	·개인이 금융, 토지 및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 권리사용료 등	
	기타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재산	일반재산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자료원 : 행복e음 DW
	금융재산금액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차량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차량기준가액	

소득 재산 관련 변수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소득유형 변수를 추가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5) 함영진 외(2011), “행복e음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연구”, 보건복지부

4. 개인, 가구구성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개인, 가구구성과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면 개인변수는 장애이동여부, 아동 성별, 출생순위로 구분되며, 가구변수는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 가구, 부 연령, 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타 양육자(조부모) 연령, 조부모 동거 여부 등이 있다.

〈표 4-5〉 개인 가구관련 변수

구분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변환 기준
개인	장애이동	·장애인 아동 여부(장애인=Y, 비장애인=N)	·2013년도 신규 진입자는 소득·재산 자료 별도 없음 ·자료원 : 행복마을 DW
	성별	·아동 성별(남=1, 여=2)	
	출생순위	·아동의 출생순위(첫째=1, 둘째=2)	
가구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여부(한 부모=Y, 양 부모=N)	
	기초생활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수급자=Y, 비수급자=N)	
	부 연령	·부 연령 - 부 표기 없을 경우, 20-50세 미만 남자 가구 구성원 연령	
	모 연령	·모 연령 - 모 표기 없을 경우, 20-50세 미만 여자 가구 구성원 연령	
	가구구성원 수	·아동을 포함한 가구구성원 수	
	기타양육자(조부모) 연령	·기타양육자(조부모) 연령 (성별 구분 없음) - 조부모 표기 없을 경우, 50세 이상 가구 구성원 연령	
	기타양육자(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동거 여부 - 조부모 표기 없을 경우, 50세 이상 가구 구성원 존재여부	

5. 기관특성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관특성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기초 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인증 통과율, 기초 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인증 유지율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6〉 기관특성 관련 변수

구분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원
기관특성	시설인증 통과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정부인증 통과율	·보육통계(2013)
	시설인증 유지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정부인증 유지율	
	시설 접근성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수 /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보육시설수(보육통계 2013) ·통계청(면적)

6. 지역특성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역특성 관련 변수는 지자체 유형을 시, 군, 구로 선정하여 도시형(구), 농어촌형(군), 도농복합형(시)을 표현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변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4-7〉 지역특성 관련 변수

구분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원
지역특성	지자체 유형	구	·기초지자체의 구(도시형)	·자료원 : 행복마을 DW의 지자체 코드 변환
		군	·기초지자체의 군(농어촌형)	
		시	·기초지자체의 시(도농복합형)	
	시설 접근성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수 /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보육시설수(보육통계 2013) ·통계청(면적)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도 및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지속 유지자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제2절 가족자산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선택

제3절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제5장 영유아 지원정책 선호도 및 영향요인 분석

5장에서는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호도 및 영향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지속 유지자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두 번째로 가족자산의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세 번째로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에 대하여 각 주제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차이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1절 지속 유지자(2012~2013)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

본 절에서는 2013년도 영유아 지원정책의 지속유지자(2012~2013년)의 아동연령별 정책 선호도의 차이,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의 특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첫 번째로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1>과 같다.

〈표 5-1-1〉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그룹 1 만0세 ~ 만1세	15,835 (0.9 / 36.7 / 1.3)	28,065 (1.6 / 63.9 / 18.8)	0	43,900 (2.6%)
그룹 2 만1세 ~ 만2세	144,883 (8.4 / 71.8 / 12.5)	57,048 (3.3 / 28.2 / 38.2)	0	201,931 (11.7%)
그룹 3 만2세 ~ 만3세	329,700 (19.1 / 91.8 / 28.5)	29,568 (1.7 / 8.2 / 19.8)	0	359,268 (20.8%)
그룹 4 만3세 이상	664,154 (38.5 / 59.3 / 57.5)	34,454 (2 / 3 / 23.1)	421,040 (24.4 / 37.6 / 100)	1,119,648 (64.9%)
총계	1,154,572 (66.9%)	149,135 (8.7%)	421,040 (24.4%)	1,724,747 (100%)
χ^2 (p) = 562453.876***				

주) missing value 27건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전체 샘플 수는 1,724,774임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전체집단의 보육정책에 대한 선택을 파악한 결과는 <표 5-1-1>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료지원이 66.9%, 유아학비 24.4%, 양육수당 8.7%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택은 그룹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룹 1에서 양육수당(63.9%)이 보육료지원(36.7%)보다 크게 많이 나타났으며, 그룹 2는 보육료지원(71.8%)이 양육수당(28.2%)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룹 3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인 91.8%, 양육수당 선택은 8.2%로 분석되었고, 그룹 4의 경우 보육료 지원(59.3%), 유아학비(37.6%), 양육수당(3%)의 순서로 정책의 선택이 분석되었다.

즉,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의 비율이 줄어들고, 보육시설로 보내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룹 2부터(만 1세 ~ 만 2세)에는 기관이용의 정책선택이 양육수당보다 역전되어, 아동 연령이 만 1세가 되는 해에 정책선택의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만 2세 이후(그룹

3, 4)의 집단에서는 현금급여 또는 기관이용에 대한 정책을 선택하기보다, 아동 연령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보육지원 정책선택에 대한 독립변인의 특성 차이 분석

가. 그룹 1(만0세 ~ 만1세)

그룹 1(만0세 ~ 만1세)에 포함되는 아동이 선택한 보육지원정책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2>과 같다.

정책 선택에 대한 변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 결과 그룹 1에서는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 기초생활 수급, 지역(시, 군, 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의 성별과 장애여부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 성별에 관계없이 보육료, 양육수당을 희망하는 비율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로 등록된 표본이 6명으로 검증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64.3%, 둘째아의 57.3%가 양육수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첫째아일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높지만, 둘째 이상의 경우 보육시설로 보내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수당선택(78.3%)은 비 한부모가정보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63.7%)이 유의하게 높아 이들간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01$). 이러한 현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여, 비수급자의 양육수당 선택보다(63%) 훨씬 높은 비율을(89%)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통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71.5%)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6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p < 0.001$), 조부모가 동거할수록 아동양육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 구분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인 군에서 양육수당을 더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77.5%), 도시지역인 시(58.5%), 구(67.8%)에서는 농어촌지역보다 양육수당을 덜 선택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5-1-2〉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1)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8,152 (18.6/36.2/51.5)	14,342 (32.7/63.8/51.1)	0	22,494 (51.2)	0.579 (0.446)
	여	7,683 (17.5/35.9/48.5)	13,723 (31.3/64.1/48.9)	0	21,406 (48.8)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15,835 (36.1/36.1/100)	28,059 (64/64/99.98)	0	43,894 (99.99)	3.385 (0.065)
	장애아	0	6 (0.01/100/0.02)	0	6 (0.01)	
출생 순위	첫째아	1,581 (32/35.8/87.6)	2,843 (57.5/64.3/90.5)	0	4,424 (89.4)	9.938 ***
	둘째아	224 (4.5/42.8/12.4)	300 (6.1/57.3/9.6)	0	524 (10.6)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15,681 (35.7/36.3/99)	27,511 (62.7/63.7/98)	0	43,192 (98.4)	63.985 ***
	한부모 가정	154 (0.4/21.8/1)	554 (1.3/78.3/2)	0	708 (1.6)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15,620 (35.6/36.2/98.6)	27,527 (62.7/63.8/98.1)	0	43,147 (98.3)	18.779 ***
	동거	215 (0.5/28.6/1.4)	538 (1.2/71.5/1.9)	0	753 (1.7)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15,646 (35.6/37.1/98.8)	26,531 (60.4/63/94.5)	0	42,177 (96.1)	490.021 ***
	수급	189 (0.4/11/1.2)	1,534 (3.5/89/5.5)	0	1,723 (3.9)	
지역별 차이 여부	시	9,449 (21.5/41.5/59.7)	13,316 (30.3/58.5/47.5)	0	22,765 (51.7)	746.553 ***
	군	986 (2.3/22.6/6.2)	3,387 (7.7/77.5/12)	0	4,373 (9.9)	
	구	5,400 (12.3/32.2/34.1)	11,362 (25.9/67.8/40.5)	0	16,762 (38.2)	

* p<.05, ** p<.01, *** p<.001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부, 모, 조부모연령과 가구원수,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 유지율에 대한 정책선택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3>과 같다.

우선 모연령과 부연령의 경우 현금급여(양육수당) 선택자의 평균연령(모: 31.5, 부: 34.6)이 기관이용(보육료지원) 선택자의 평균연령(모: 32.3, 부: 34.7)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이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현금급여 선택(64.8)에서 기관이용(62.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 참여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수의 평균은 현금급여(3.8)를 선택한 집단이 기관이용(3.7)을 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접근성의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한 집단의 접근성 평균은 3.9였지만, 기관이용을 선택한 집단의 경우 4.1로 접근성의 평균에 대한 차이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기관의 인증 통과율과 유지율의 평균의 차이는 현금급여 집단(통과: 93.2, 유지:70.4)과 기관이용 집단(통과: 91.3, 유지:69.3)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현금급여 선택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만 0세 ~ 만 1세의 아동에 있어서 인증률(통과,

유지)이 높다고 반드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필요에 따라 기관을 이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3〉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독립변인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25,912	31.5698	4.7014	0.0292	20	49	-18.17 ***
	기관이용	15,019	32.3863	4.1872	0.0342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25,912	34.6406	5.1881	0.0322	20	49	-3.19 ***
	기관이용	15,019	34.7983	4.5965	0.0375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538	64.8271	9.1278	0.3935	50	91	4.27 ***
	기관이용	215	62.0558	7.5645	0.5159	50	84	
가구 구성원 수	현금급여	28,065	3.8557	0.9308	0.00556	0	12	8.22 ***
	기관이용	15,835	3.7853	0.8195	0.00651	1	10	
접근성	현금급여	28,065	3.9848	4.3364	0.0259	0.00613	18.5294	-4.62 ***
	기관이용	15,835	4.1846	4.3811	0.0348	0.00651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28,065	93.2624	12.3907	0.074	23.0769	123.1	15.21 ***
	기관이용	15,835	91.3981	12.2351	0.0972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28,065	70.4348	15.8399	0.0946	0	370	8.03 ***
	기관이용	15,835	69.309	13.0135	0.1034	0	370	

* p<.05, ** p<.01, *** p<.001

나. 그룹 2(만1세 ~ 만2세)

그룹 2(만1세 ~ 만2세)에 포함되는 아동이 선택한 보육지원정책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정책 선택에 대한 변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 결과 그룹 2에서는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 기초생활 수급, 지역(시, 군, 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책선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72.1%)의 경우 여아(71.4%)보다 보육료 지원을 더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아동 장애여부에 따른 정책 선택은 장애아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고(79.8%), 비장애아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71.8%)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01$).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시설의 한계로 인하여 가정양육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75.7%, 둘째아의 78.4%가 보육료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출생순위에 따른 정책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첫째아보다 둘째아동일 경우에 보육시설로 보내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룹 1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수당선택(41.4%)은 비 한부모가정(28.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층(58.1%)에서 비 수급자층(28.1%) 보다 양육수당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의 현금급여 선호가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의 비율(한부모: 58.6%, 기초수급: 41.9%)도 상당부분 높게 분석되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31.2%)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2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01$). 이는 조부모의 아동양육의 참여가 만 2세까지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 구분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인 구에서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35.2%), 도시지역인 시(74.5%), 구(69.3%)에서는 기관이용의 정책선택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지역에 따른 정책선택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 < 0.001$).

〈표 5-1-4〉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2)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75,480 (37.4/72.1/52.1)	29,203 (14.5/27.9/51.2)	0	104,683 (51.8)	13.486 ***
	여	69,403 (34.4/71.4/47.9)	27,845 (13.8/28.6/48.8)	0	97,248 (48.2)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144,833 (71.7/71.8/99.9)	56,850 (28.2/28.2/99.7)	0	201,683 (99.9)	326.003 ***
	장애아	50 (0.01/20.2/0.01)	198 (0.1/79.8/0.3)	0	248 (0.1)	
출생 순위	첫째아	66,160 (65.8/75.7/86.5)	21,198 (21.1/24.3/88.1)	0	87,358 (86.9)	43.494 ***
	둘째아	10,353 (10.3/78.4/13.5)	2,859 (2.8/21.6/11.9)	0	13,212 (13.1)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143,714 (71.2/71.9/99.2)	56,223 (27.8/28.1/98.6)	0	199,937 (99)	171.196 ***
	한부모 가정	1,169 (0.6/58.6/0.8)	825 (0.4/41.4/1.5)	0	1,994 (1)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142,849 (70.7/71.8/98.6)	56,125 (27.8/28.2/98.4)	0	198,974 (98.5)	12.996 ***
	동거	2,034 (1/68.8/1.4)	923 (0.5/31.2/1.6)	0	2,957 (1.5)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143,296 (71.7/72.3/98.9)	54,850 (27.2/27.7/96.2)	0	198,146 (98.1)	1692.193 ***
	수급	1,587 (0.8/41.9/1.1)	2,198 (1.1/58.1/3.9)	0	3,785 (1.9)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지역별 차이 여부	시	81,492 (0.4/74.5/56.3)	27,935 (13.8/25.5/49)	0	109,427 (54.2)	1008.638 ***
	군	10,403 (5.2/64.8/7.2)	5,657 (2.8/35.2/9.9)	0	16,060 (8)	
	구	52,988 (26.2/69.3/36.6)	23,456 (11.6/30.7/41.1)	0	76,444 (37.8)	

* p<.05, ** p<.01, *** p<.001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부, 모, 조부모연령과 가구원수,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 유지율에 대한 정책선택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5>와 같다.

우선 모연령과 조부모연령의 평균은 현금급여와 기관이용 선택 집단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부연령 평균에 있어서는 현금급여(양육수당) 선택자의 평균연령(35.3)이 기관이용(보육료지원) 선택자의 평균연령(35.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 수의 평균은 현금급여(3.7)를 선택한 집단이 기관이용(3.6)을 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기관 접근성을 살펴보면 현금급여를 선택한 집단의 접근성 평균은 4.27, 기관이용을 선택한 집단은 4.23으로 접근성의 평균에 대하여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기관의 인증 통과율과 유지율의 평균의 차이는 현금급여 집단(통과: 92.3, 유지:69.8)과 기관이용 집단(통과: 91.3, 유지:69.6)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현금급여 선택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이는 인증률(통과, 유지)이 높다고 반드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룹 1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으로 파악된다.

〈표 5-1-5〉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53,339	32.657	4.4295	0.0192	20	49	-0.42 (0.676)
	기관이용	137,979	32.666	4.145	0.0112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53,339	35.373	4.8018	0.0208	20	49	3.11 **
	기관이용	137,979	35.299	4.4685	0.012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923	64.3034	9.3057	0.3063	50	106	0.73 (0.462)
	기관이용	2,034	64.0295	9.5685	0.2122	50	100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57,044	3.7397	0.8672	0.00363	0	13	15.68 ***
	기관이용	144,880	3.6743	0.779	0.00205	0	12	
접근성	현금급여	57,048	4.2794	4.3811	0.0183	0.00613	18.5294	2.27 *
	기관이용	144,883	4.2303	4.4122	0.0116	0.00613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57,048	92.3289	12.3608	0.0518	23.0769	123.1	16.64 ***
	기관이용	144,883	91.3177	12.1211	0.0318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57,048	69.8791	15.5521	0.0651	0	370	3.19 **
	기관이용	144,883	69.6332	15.7799	0.0415	0	370	

* p<.05, ** p<.01, *** p<.001

다. 그룹 3(만2세 ~ 만3세)

그룹 3(만2 ~ 만3세)에 포함되는 아동이 선택한 보육지원정책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6>과 같다.

정책 선택에 대한 변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 결과 그룹 2에서는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 기초생활 수급, 지역(시, 군, 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책선택은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아동 장애여부에 따른 정책선택은 장애아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고(63.6%), 비장애아에서는 보육료 지원을(91.9%)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이는 장애아의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직접 양육이 많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93.2%, 둘째아의 92.3%가 보육료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출생순위에 따른 정책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이는 만 2세 이후 보육시설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을 함양시키고자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보육료지원 선택(84.9%)은 비 한부모가정(91.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집단(73.3%)보다 비 수급자 집단이(92%) 보육료지원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저소득 계층의 현금급여 선호현상이 더 뚜렷하지만, 아동이 특정한 연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보육시설로 이동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9.9%)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비율(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p<0.001$), 전체적으로 90%이상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5-1-6〉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3)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170,493 (47.5/91.8/51.7)	15,302 (4.3/8.2/51.8)	0	185,795 (51.7)	0.017 (0.894)
	여	159,207 (44.3/91.8/48.3)	14,266 (4/8.2/48.2)	0	173,473 (48.3)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329,372 (91.7/91.9/99.9)	28,996 (8.1/8.1/98.1)	0	358,368 (99.8)	3656.608 ***
	장애아	328 (0.1/36.4/0.1)	572 (0.2/63.6/1.9)	0	900 (0.3)	
출생 순위	첫째아	176,084 (76.1/93.2/81.8)	12,873 (5.6/6.8/79.7)	0	188,957 (81.6)	41.218 ***
	둘째아	39,277 (17/92.3/18.2)	3,277 (1.4/7.7/20.3)	0	42,554 (18.4)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327,230 (91.1/91.8/99.3)	29,128 (8.1/8.2/98.5)	0	356,358 (99.2)	184.410 ***
	한부모 가정	2,470 (0.7/84.9/0.8)	440 (0.1/15.1/1.5)	0	2,910 (0.8)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325,730 (90.7/91.8/98.8)	29,131 (8.1/8.2/98.5)	0	354,861 (98.8)	16.792 ***
	동거	3,970 (1.1/90.1/1.2)	437 (0.1/9.9/1.5)	0	4,407 (1.2)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326,469 (90.9/92/99)	28,393 (7.9/8/96)	0	354,862 (98.8)	2007.856 ***
	수급	3,231 (0.9/73.3/1)	1,175 (0.3/26.7/4)	0	4,406 (1.2)	
지역별 차이 여부	시	175,516 (48.9/92.4/53.2)	14,537 (4.1/7.7/49.2)	0	190,053 (52.9)	184.958 ***
	군	26,156 (7.3/91.4/7.9)	2,451 (0.7/8.6/8.3)	0	28,607 (8)	
	구	128,028 (35.6/91.1/38.8)	12,580 (3.5/9/42.6)	0	140,608 (39.1)	

* p<.05, ** p<.01, *** p<.001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부, 모, 조부모연령과 가구원수,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 유지율에 대한 정책선택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7>과 같다.

조부모연령과 인증유지율의 평균은 현금급여와 기관이용 선택 집단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부·모연령 평균에 있어서는 현금급여 정책의 선택자 평균연령(33.8)이 기관이용 정책 선택자의 평균연령(33.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가구 구성원 수의 평균은 현금급여(3.7)를 선택한 집단이 기관이용(3.6)을 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구성원수가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관 접근성을 살펴보면 현금급여를 선택한 집단의 접근성 평균은 4.7, 기관이용을 선택한 집단은 4.2로 접근성의 평균에 대하여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기관 인증 통과율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현금급여 집단(91.5)과 기관이용 집단(91.3)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인증 통과율과 기관 접근성이 높다고 반드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룹 1, 2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7>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27,472	33.8511	4.2138	0.0254	20	49	16.46 ***
	기관이용	314,463	33.4164	4.0108	0.00715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27,472	36.383	4.5402	0.0274	20	49	12.42 ***
	기관이용	314,463	36.0298	4.2941	0.00766	20	49	
조부모	현금급여	437	65.3684	9.684	0.4632	50	102	1.85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연령	기관이용	3,970	64.4872	9.4398	0.1498	50	100	(0.064)
가구구성원 수	현금급여	29,568	3.7324	0.8887	0.00517	0	13	11.49 ***
	기관이용	329,698	3.671	0.7663	0.00133	0	15	
접근성	현금급여	29,568	4.7036	4.5228	0.0263	0.00613	18.5294	16.27 ***
	기관이용	329,700	4.2578	4.4029	0.00767	0.00613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29,568	91.5892	12.227	0.0711	23.0769	123.1	2.82 **
	기관이용	329,700	91.38	11.9834	0.0209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29,568	69.7369	13.9442	0.0811	0	370	0.69 (0.489)
	기관이용	329,700	69.6777	15.7248	0.0274	0	370	

* p<.05, ** p<.01, *** p<.001

라. 그룹 4(만 3세 이상)

그룹 4(만 3세 이상)에 포함되는 아동이 선택한 보육지원정책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8>과 같다.

정책 선택에 대한 변인들의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 결과 그룹 4에서는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한부모가정, 조부모 동거, 기초생활 수급, 지역(시, 군, 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책선택은 남아(59.6%)의 경우 보육시설 선택이 여아(59.1%)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양육수당도 남아(3.2%)가 여아(3%)보다 높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유아학비 지원은 여아(38%)가 남아(37.3%)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 아동의 장애여부는 장애아 집단에서 보육료지원(86.2%), 양육수당(7.1%), 유아학비지원(6.9%)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비장애아 집단에서는 보육료(58.9%), 유아학비(38%), 양육수당(3%)로 분석되어 두 집단간 정책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장애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 양육이 여전히 있음을 시사한다.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둘째 아동보다(61.3%) 첫째 아동(66.8%)에서 보육료 지원의 선택이 높았으며, 둘째 아동(35.4%)은 첫째 아동(29.8%)보다 유아학비지원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유치원 입학에 다른 요인보다 자녀수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조부모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비동거 집단과 동거집단에서 정책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p < 0.000$), 정책을 현금급여와 기관이용으로 한정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p = 0.589$).

한부모가정의 보육료지원 선택(75.3%)은 비 한부모가정(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수급자 집단(78.9%)이 비 수급자 집단(58.8%) 보육료지원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양육수당의 경우 한부모가정(1.8%)보다 비한부모가정(3.1%)에 더 높게 선택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수급층 2.2%, 비수급층 3.1%).

지역 구분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인 군(61.9%)에서 도시지역보다(시: 59%, 구: 58.6%) 보육료지원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1-8〉 특징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 분석(그룹 4)

		보육료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지원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343,749 (30.7/59.6/51.8)	18,344 (1.6/3.2/53.2)	215,070 (19.2/37.3/51.1)	577,163 (51.6)	88.067 ***
	여	320,405 (28.6/59.1/48.2)	16,110 (1.4/3/46.8)	205,970 (18.4/38/48.9)	542,485 (48.5)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650,561 (58.1/58.9/98)	33,333 (3/3/96.8)	419,949 (37.5/38/99.7)	1,103,843 (98.6)	6783.103 ***
	장애아	13,593 (1.2/86/2)	1,121 (0.1/7.1/3.3)	1,091 (0.1/6.9/0.3)	15,805 (1.4)	
출생 순위	첫째아	333,644 (48.9/66.8/74.8)	17,383 (2.6/3.5/74.1)	148,654 (21.8/29.8/69.7)	499,681 (73.2)	1965.194 ***
	둘째아	112,269 (16.4/61.3/25.2)	6,079 (0.9/3.3/25.9)	64,725 (9.5/35.4/30.3)	183,073 (26.8)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647,349 (57.8/59/97.5)	34,060 (3/3.1/98.9)	415,925 (37.2/37.9/98.8)	1,097,334 (98)	2414.126 ***
	한부모 가정	16,805 (1.5/75.3/2.5)	394 (0.01/1.8/1.1)	5,115 (0.5/22.9/1.2)	22,314 (2)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653,515 (58.4/59.2/98.4)	33,992 (3/3.1/98.7)	416,754 (37.2/37.7/99)	1,104,261 (98.6)	648.547 ***
	동거	10,639 (1/69.1/1.6)	462 (0.01/3/1.3)	4,286 (0.4/27.9/1)	15,387 (1.4)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642,959 (57.4/58.8/96.8)	33,870 (3.0/3.1/98.3)	415,941 (37.2/38.1/98.8)	1,092,770 (97.6)	4388.267 ***
	수급	21,195 (1.9/78.9/3.2)	584 (0.1/2.2/1.7)	5,099 (0.5/19/1.2)	26,878 (2.4)	
지역별 차이 여부	시	346,153 (30.9/59.4/52.2)	16,741 (1.5/2.9/48.6)	219,508 (19.6/37.7/52.1)	582,402 (52)	1617.683 ***
	군	60,070 (5.4/61.9/9)	1,433 (0.1/1.5/4.2)	35,487 (3.2/36.6/8.4)	96,990 (8.7)	
	구	257,931 (23/58.6/38.8)	16,280 (1.5/3.7/47.3)	166,045 (14.8/37.7/39.4)	440,256 (39.3)	

* p<.05, ** p<.01, *** p<.001

※ 정책을 현금급여, 기관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조부모 동거여부($\chi^2 = 0.292$, $p=0.589$)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인 부, 모, 조부모연령과 가구원수, 기관 접근성, 인증통과율, 유지율에 대한 정책선택 평균 차이를 분석(F-test)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9>와 같다.

모 연령의 평균에는 현금급여(35.1), 보육시설(34.6), 유치원(35) 선택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현금급여와 유치원 선택집단이 보육시설 선택집단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 연령의 경우 현금급여(37.5), 보육시설(37.4), 유치원(37.6) 선택집단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부모 연령도 현금급여, 보육시설, 유치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차이는 보육시설(63.5), 유치원(64.4)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현금급여 집단과 기관이용(보육, 유치원) 집단으로 분석해 본 결과, 만 3세 이상의 정책선택에 있어 조부모 연령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t=0.24$, $p=0.81$).

가구 구성원 수와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의 정책선택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독립변인들이 현금급여, 보육시설, 유아학비 선택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다만, 인증 유지율의 경우 현금급여(69.4) 선택집단과 유아학비(69.3) 선택집단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70.3) 선택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증유지율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5-1-9〉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F(p)
모 연령	현금급여	31,954	35.10	3.941	.022	20	49	1307.138 ***
	보육시설	600,707	34.65	4.218	.005	20	49	
	유치원	394,399	35.07	3.858	.006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31,954	37.55	4.138	.023	21	49	274.530 ***
	보육시설	600,707	37.41	4.409	.006	20	49	
	유치원	394,399	37.61	4.043	.006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462	63.90	9.172	.427	50	101	12.010 ***
	보육시설	10,639	63.53	10.302	.100	50	213	
	유치원	4,286	64.43	10.018	.153	50	118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34,453	3.76	.827	.004	0	16	605.447 ***
	보육시설	664,042	3.83	.959	.001	0	94	
	유치원	421,022	3.88	.750	.001	0	13	
접근성	현금급여	34,454	5.5936	4.75580	.02562	.01	18.53	2333.544 ***
	보육시설	664,154	4.2290	4.50773	.00553	.01	18.53	
	유치원	421,040	3.9677	4.12508	.00636	.01	18.53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34,454	89.7968	11.28340	.06079	23.08	123.1	645.993 ***
	보육시설	664,154	91.9395	12.00965	.01474	23.08	123.1	
	유치원	421,040	92.1961	11.93963	.01840	23.08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34,454	69.4276	11.95252	.06439	.00	370	433.795 ***
	보육시설	664,154	70.3195	17.38948	.02134	.00	370	
	유치원	421,040	69.3713	15.79608	.02434	.00	370	

* p<.05, ** p<.01, *** p<.001

※ 사후검증결과(Bonferroni) 유지율에서는 현금과 유치원간 차이가 없었으며, 조부모 연령에서는 현금과 보육, 현금과 유치원간 차이가 없었음, 모 연령에서 현금과 유치원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그 외 정책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

※ 그룹 4의 경우 비교집단이 3개로 F-Test를 실시함

※ 부, 모의 연령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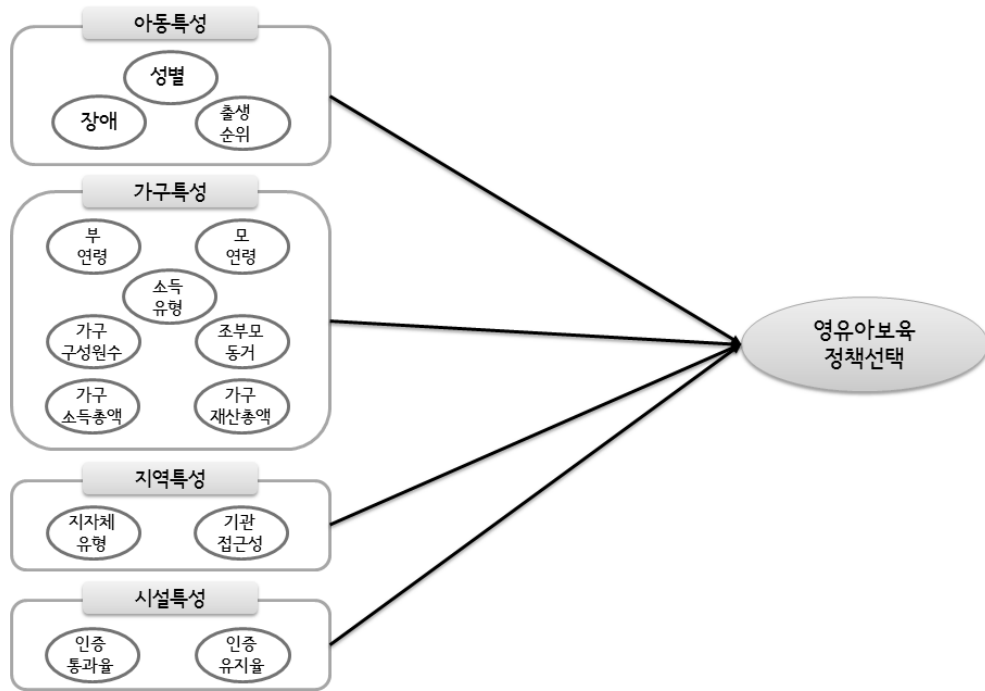
※ 현금급여 집단과 기관이용 집단으로 분류하여 T-test를 진행해 본 결과 조부모 연령에서($t=0.24$, $p=0.81$)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3. 아동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분석

가. 연구모형 및 독립변수의 선정

2013년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자의 정책선택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아동의 특성인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첫째아, 둘째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구의 특성에는 부, 모 연령, 부모의 소득유형, 가구구성원 수, 조부모 동거여부, 가구소득총액, 가구재산총액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역 특성에는 지자체유형(도시형, 농어촌형), 기관 접근성을 요인으로 하였으며, 시설특성인 보육시설 인증 통과율, 인증 유지율을 핵심 변인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개념적 모델은 다음의 [그림 5-1-1]과 같다.

다만 본 분석에서 가구 요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한부모가정 여부는 변수의 특성상 저소득가구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두 변수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는 정책의 특성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절의 분석에서는 두 변수를 제외하고, 다음 절의 저소득층 집단(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선택에서 영향요인을 다루기로 한다.



[그림 5-1-1] 연구모형

나. 대상 : 전체그룹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 정책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 5-1-10>과 같이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과정은 Backward의 Wald 방식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초기모형(1단계)에서 전체 변수를 투입한 후, 최종모형이 도출되기 까지 유의하지 않은 변수($p>0.1$)를 순차적으로 제거한 후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 보육정책 선택에 대한 최적화된 연구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 투입된 영유아 보육 선택은 현금급여(양육

수당)와 기관보육(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정 여부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에서,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부 연령, 모 연령, 가구구성원수, 조부모 동거여부, 총 수입, 지역유형, 접근성, 통과율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모형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특성변수인 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장애아동일 경우 현금급여의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아동의 장애여부가 직접양육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으며, 장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남아에 대한 선호가 현금급여의 선택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특성변수를 살펴보면, 부와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구성원 수, 가구 총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부모가 동거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의 분석결과에서는 부, 모의 연령 증가는 직접양육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가구구성원 수의 증가도 기관보육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변수인 지자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군일수록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어촌일수록 전체집단의 측면에서 볼 때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접근성으로 표현되는 단위면적당 기관의 수는 기관이용에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특성인 해당 기초지자체의 보육기관의 평균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현금 급여를 선택하여, 전체 집단에서 인증 통과율은 국민의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집단으로 통합해 보았을 때 도출되는 경향이며,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절에서 아동연령에 대한 그룹을 지정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하여 그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5-1-10> 전체집단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방법: Backward Wald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초기 모형 1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033	1.030	1.002	1.058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1.466	1.323	1.624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1.132	1.090	1.176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990	.986	.993
		모 연령	연속형	.014	.995	.991	.999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480	1.016	.973	1.060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787	.766	.808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004	1.228	1.068	1.412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840	.828	.853
	지역특성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248	1.006	.996	1.017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860	.808	.914
	시설특성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46	1.043	1.049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04	1.003	1.005
	최종 모형 2단계	이동특성	인증 유지율	연속형	.086	1.001	1.000
성별			남=1, 여=0	.031	1.030	1.003	1.058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1.462	1.320	1.620
가구특성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1.136	1.094	1.180
		부 연령	연속형	.000	.990	.986	.993
		모 연령	연속형	.020	.995	.991	.999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788	.768	.809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004	1.225	1.065	1.409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845	.836	.855
지역특성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858	.807	.913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858	.807	.913
시설특성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47	1.043	1.050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04	1.003	1.005
시설특성		인증 유지율	연속형	.083	1.001	1.000	1.002

다. 대상 : 0-1세(그룹 1)

만 1세 미만인 그룹1의 정책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11>과 같다. 현금급여의 선택(63%)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인 1세 미만 집단에서 초기 모형에서는 출생순위,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 인증 통과율, 인증 유지율이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지만, backward분석의 최종모형에서는 기관의 인증통과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구 특성에서 부의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모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아동특성에서는 장애여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샘플의 대상이 너무 적어(n=6)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출생순위가 높은 경우 즉, 첫째아동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한다는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구특성에서는 부의 연령이 현금급여 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부연령의 증가는 현금급여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백은주 외(2011)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유형에서는 근지역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였으며, 기관 접근성이 높은 것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도시일수록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최상설, 홍건준, 2012).

그리고 기관의 인증 유지율이 높을수록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만 0-1세 아동을 기관에 보낼 때 기관의 품질 유지로 대변될 수 있는 인증 유지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이나, 보육시설의 기반이 약한 근지역에서 양육수당에 대

한 선택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관의 접근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품질이 높아야 0-1세의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1-11> 그룹 1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방법: Backward Wald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초기 모형 1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548	.909	.665	1.241
		장애	장애=1, 비장애=0	분석에서 제외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1	2.620	1.488	4.612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113	1.026	.994	1.060
		모 연령	연속형	.141	1.029	.991	1.069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648	.893	.550	1.450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218	.773	.513	1.164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705	1.343	.292	6.176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775	1.026	.862	1.220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886	.992	.889	1.107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45	1.908	1.014	3.589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1	1.072	1.027	1.118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46	1.016	1.000	1.032
		인증 유지율	연속형	.014	.971	.949	.994
최종 모형 8단계	이동특성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3.047	2.103	4.416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9	1.032	1.008	1.057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46	1.881	1.010	3.501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1	1.072	1.028	1.117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55	1.015	1.000	1.030
		인증 유지율	연속형	.005	.970	.949	.991

라. 대상 : 만 1-2세(그룹 2)

만 1~2세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1-12>와 같다. 그룹 2의 경우에는 71%가 보육료지원(기관보육)을

선택하였다. 분석의 초기모형에서는 장애, 출생순위, 부연령, 가구구성원수, 소득, 재산 총액, 지역유형, 기관접근성, 인증 통과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종모형에서도 동일한 요인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 집단에서는 기관이용과 양육수당에 대한 선택이 그룹1인 만1세 미만 그룹과 반대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정책에 대한 선택이 보육료지원으로 쏠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0 참고). 이는 그룹 1에서 맞벌이에 참여한 가정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육아휴직, 출산휴가자의 사회복귀).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특성에 대하여 장애가 있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첫째아)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이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첫째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접양육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가설(안재진, 김은지, 2010)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가구특성인 부의 연령과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백은주 외, 2011)에서 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양육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기관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개인 대리양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과 유사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최상설 외, 2012; 박선옥, 2011; 장영은 외, 2007).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 재산 증가가 개인 대리양육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결과 대리양육의 유형보다 기관보육의 선택이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농어촌지역일수록, 기관 접근성이 높을수록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다(최상설, 홍경준, 2012). 또한 기관의 인증 통과율이 높아지더라도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육기관 인증여부는 부모의 정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1-12〉 그룹 2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방법: Backward Wald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초기 모형 1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118	.952	.894	1.013
		장애	장애=1, 비장애=0	.004	10.320	2.116	50.334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2.459	2.201	2.747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1.023	1.015	1.030
		모 연령	연속형	.153	1.006	.998	1.015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154	1.074	.974	1.183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423	1.319	1.536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707	.945	.702	1.271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03	.680	.728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39	.918	.961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1.296	1.145	1.468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28	1.020	1.036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23	1.021	1.026
인증 유지율		연속형	.962	1.000	.998	1.002	
최종 모형 6단계	이동특성	장애	장애=1, 비장애=0	.004	10.388	2.130	50.664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2.430	2.177	2.713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1.025	1.018	1.032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425	1.323	1.535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11	.689	.734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40	.919	.961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1.287	1.141	1.451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28	1.021	1.036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23	1.021	1.026

마. 대상 : 만 2-3세(그룹 3)

만 2~3세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선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5-1-13>과 같다. 본 그룹에서는 전체의 91.8%가 기관보육을 선택하여, 만 2세 이상 아동의 사회학습에 대한 부모의 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 3의 경우 장애, 출생순위, 부, 모 연령, 소득유형, 가구구성원수, 소득, 재산 총액, 접근성, 통과율이 유의미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동특성요인 중 장애여부와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양육수당인 현금급여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장애여부는 장애아의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구특성인 부,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모연령의 증가에 따라 기관이용이 많아진다고 하였지만(임유경, 2008; 최상설, 홍경준, 2012; 박선욱, 2011), 그렇지 않다는 김지경(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유형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일수록 양육수당의 선택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택이 높아짐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가구의 소득유형에 대한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처음 확인된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 현금급여를 더 많이 선택한 것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이용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액이 사업소득자의 평균소득액 보다 낮았으며, 결국 양육수당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수당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양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는 없어, 이에 대한 향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특성인 기관 접근성과 시설특성인 기관 인증 통과율이 증가하여도 양육수당의 선택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변수가 기관보육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품질 측정이나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1-13〉 그룹 3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방법: Backward Wald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초기 모형 1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477	1.022	.962	1.086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22.041	15.059	32.258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2	1.162	1.058	1.276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39	1.009	1.000	1.017
		모 연령	연속형	.000	1.035	1.026	1.045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24	1.121	1.015	1.237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247	1.169	1.330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943	.988	.712	1.371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22	.699	.746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28	.907	.950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502	1.045	.919	1.188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35	1.028	1.042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08	1.006	1.011
		인증 유지율	연속형	.463	.999	.997	1.001
최종 모형 5단계	이동특성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22.060	15.073	32.286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2	1.162	1.058	1.276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38	1.009	1.001	1.017
		모 연령	연속형	.000	1.035	1.026	1.044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24	1.120	1.015	1.237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247	1.170	1.329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21	.698	.745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28	.907	.950
	지역특성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34	1.027	1.041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08	1.005	1.010

바. 대상 : 만 3세 이상(그룹4)

만 3세 이상 그룹의 영유아보육정책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1-14>와 같다. 그룹 4의 경우 전체의 3%만이 양육수당을 선택하였으며, 유치원, 보육시설의 누리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유아교육을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정책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성별, 장애, 부, 모의 연령, 가구구성원, 가구 소득, 재산 총액,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과 인증 통과율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남아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아동의 장애여부는 현금급여의 선택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특성 중 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금급여의 선택이 높아졌다. 이는 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설보육을 선택할 경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박선욱, 2011), 모연령의 증가는 현금급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지경(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수의 증가와 가구 소득증가는 기관선택의 확률을 높이며, 가구 재산총액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의 선택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유형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군인 경우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 보육시설대비 아동 수가 비교적 도시지역보다 여유로웠기 때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의 선택 경향이 높았다. 반면, 만 3세 이상 그룹에서는 보육시설의 인증통과율이 높아질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변수에서의 인증 통과율은 보육시설의 인증 여부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부모에게서 기관의 인증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1-14〉 그룹 4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방법: Backward Wald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초기 모형 1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042	1.040	1.001	1.080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1.848	1.649	2.071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586	.986	.938	1.037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977	.972	.982
		모 연령	연속형	.000	1.016	1.010	1.022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595	.984	.927	1.044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815	.786	.845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658	.952	.764	1.185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849	.831	.866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079	1.062	1.095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561	.503	.625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65	1.061	1.070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980	.978	.982
		인증 유지율	연속형	.796	1.000	.998	1.002
최종 모형 5단계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042	1.040	1.001	1.080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1.847	1.648	2.069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977	.972	.983
		모 연령	연속형	.000	1.016	1.010	1.022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818	.792	.846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846	.831	.862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079	1.063	1.095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562	.506	.625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66	1.061	1.070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980	.979	.982

제2절 가족자산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선택

본 연구의 연구주제 2인 가족자산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선택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대상을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한 부모 가구로 제한하여, 아동 연령별 정책 선호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의 영향요인을 단변량 분석결과로 나타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구의 자산(소득과 재산) 차이에 따라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으로 대상을 비교하여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을 다변량 분석 결과로 나타내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현황은 <표 5-2-1>과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는 양육수당을 받는 현금급여선택과 보육기관 및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이용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12년 이후 '13년 지속수급자로 전체 36,792명의 아동 중 0-1세 연령그룹이 4.7%, 1-2세 그룹이 10.3%, 2-3세 그룹이 12.0%, 3세 이상 그룹이 73.0%로 가장 많았다. 그 중 2세 미만 연령 그룹 안에서는 양육수당인 현금급여의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많았고 (0-1세 연령그룹 89.0%, 1-2세 그룹 58.1%), 2세 이상의 아동연령그룹 안에서는 기관이용선택이 더 많았다 (2-3세 그룹 73.3%, 3세 이상 그룹 97.8%). 이것은 1세 미만 아동에서는 양육수당 지급률이 높고, 2세 이상 아동인 경우 기관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아동관련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겠다.

〈표 5-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현황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그룹 1 만0세 ~ 만1세	1,534 (4.2 / 89.0 / 27.9)	189 (0.5 / 11.0 / 0.6)	1,723 (4.7%)
그룹 2 만1세 ~ 만2세	2,198 (6.0 / 58.1 / 40.1)	1,587 (4.3 / 41.9 / 5.1)	3,785 (10.3%)
그룹 3 만2세 ~ 만3세	1,175 (3.2 / 26.7 / 21.4)	3,231 (8.8 / 73.3 / 10.3)	4,406 (12.0%)
그룹 4 만3세 이상	584 (1.5 / 2.2 / 10.6)	26,294 (71.5 / 97.8 / 84.0)	26,878 (73.0%)
총계	5,491 (14.9%)	31,301 (85.1%)	36,792 (100%)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1) 대상 : 0-1세 그룹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0-1세 아동 그룹1의 결과는 <표 5-2-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 선택은 차이가 없었다. 즉 0-1세 아동인 경우, 남아나 여아 모두 기관이용보다는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0-1세 아동그룹에서는 장애아동이 없었고, 현금급여선택이 89.0%였다. 출생순위는 0-1세 아동그룹에서는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0-1세 아동그룹인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286명으로 85%이상인 현금급여를 신청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0-1세 아동인 경우, 조부모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90%정도가 현

금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도 시는 85%, 군은 89%, 구는 92%로 현금급여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0-1세 아동그룹에서 현금급여 선택이 더 많은 결과는 제1절 전체가구의 0-1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표 5-2-2〉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1)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789 (45.7/90.1/51.4)	87 (5.1/9.9/46.0)	876 (50.8)	1.965 (0.161)
	여	745 (43.2/88.0/48.6)	102 (6.0/12.0/54.0)	847 (49.2)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1534 (89.0/89.0/100)	189 (11.0/11.0/100)	1723 (100)	-
	장애 아	-	-	-	
출생 순위	첫째아	14 (82.3/93.3/87.5)	1 (5.9/6.7/100)	15 (88.2)	0.141 (0.706)
	둘째아	2 (11.8/100/12.5)	0 (0/0/0)	2 (11.8)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1,290 (74.9/89.8/84.1)	147 (8.5/10.2/77.8)	1,437 (83.4)	4.848* (0.027)
	한부모 가정	244 (14.2/85.3/15.9)	42 (2.4/14.7/22.2)	286 (16.6)	
조부 모 동거 여부	비동거	1,477 (85.7/88.9/96.3)	184 (10.7/11.1/97.3)	1,661 (96.4)	0.556 (0.456)
	동거	57 (3.3/91.9/3.7)	5 (0.3/8.1/2.7)	62 (3.6)	
지역 별 차이 여부	시	659 (38.2/85.8/43.0)	109 (6.3/14.2/57.7)	768 (44.6)	16.151** (0.0003)
	군	155 (9/89.1/10.1)	19 (1.1/10.9/10.0)	174 (10.1)	
	구	720 (41.8/92.2/46.9)	61 (3.5/7.8/32.3)	781 (45.3)	

* p<.05, ** p<.01, *** p<.0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0-1세 아동의 분석 결과는 <표 5-2-3>과 같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모 연령과 부 연령 모두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34살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표현하면, 기관이용을 선택한 부모의 연령이 더 어린 경우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늦게 출산하여 부, 모의 연령이 많은 경우 오히려 기관에 보내기보다는 직접양육하든지 아니면 조부모나 다른 양육자를 통해 집에서 아동을 돌보며 현금급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가구구성원 수는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가구구성원수가 많은 경우에 현금급여를 더 선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기관 접근성은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 기관접근성과 기관이용 선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인증 통과율이나 인증유지율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3>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734	32.5272	6.1579	0.2273	20	49	3.5***
	기관이용	69	29.7971	6.534	0.7866	20	43	
부 연령	현금급여	734	37.2234	7.0288	0.2594	20	49	3.6***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기관이용	69	33.9855	8.272	0.9958	20	48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57	64.2105	9.6617	1.2797	50	86	1.58 (0.120)
	기관이용	5	57.2	7.4967	3.3526	51	70	
가구 구성 원 수	현금급여	1534	3.7803	1.6582	0.0423	1	12	2.88**
	기관이용	189	3.4127	1.6174	0.1176	1	10	
접근성	현금급여	1534	3.8843	4.1819	0.1068	0.00613	18.5294	4.35***
	기관이용	189	2.7151	3.3917	0.2467	0.0111	15.0857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1534	95.305	12.366	0.3157	23.0769	123.1	-0.69 (0.487)
	기관이용	189	95.9727	13.3938	0.9743	52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1534	71.1856	19.7178	0.5034	0	370	-0.63 (0.531)
	기관이용	189	71.7738	10.8751	0.791	44	170	

* p<.05, ** p<.01, *** p<.001

2) 대상 : 1-2세 그룹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 요인으로 1-2세 아동 그룹2의 결과는 <표 5-24>와 같다.

1-2세 아동인 경우, 성별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 선택은 차이가 없어 남이나 여 아 모두 기관이용보다는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1-2세 아동그룹에서는 장애아동이 17명이었고, 현금급여선택이 82.3%였다.

출생순위는 1-2세 아동그룹에서 첫째아동인 경우에는 현금급여와 기관이용의 선택에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둘째아동인 경우에는 80%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1-2세 아동그룹인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715명으로 52.2%가 기관이용을 선택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이 아닌 아동은 60.6%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1-2세 아동인 경우, 조부모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58%정도가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 또한 지역은 1-2세 아동인 경우,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시 군 구 모두 55% 이상이 현금급여를 선택하였다.

제1절의 소득구분 없는 전체연구대상자의 1-2세 그룹에서는 장애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육료와 같은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한데 반하여, 저소득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세 그룹은 현금급여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현금급여 선호가 더 뚜렷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표 5-2-4〉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2)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1,130 (29.9/57.3/51.4)	841 (22.2/42.7/53.0)	1,971 (52.1)	0.925 (0.336)
	여	1,068 (28.2/58.8/48.6)	746 (19.7/41.2/47.0)	1,814 (47.9)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2,184 (57.7/58.0/99.4)	1,584 (41.9/42.0/99.8)	3,768 (99.5)	4.135* (0.042)
	장애아	14 (0.3/82.3/0.6)	3 (0.1/17.7/0.2)	17 (0.5)	
출생 순위	첫째아	82 (48.5/55.0/83.7)	67 (39.6/45.0/94.4)	149 (88.2)	4.511* (0.033)
	둘째아	16 (9.5/80/16.3)	4 (2.4/20/5.6)	20 (11.8)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1,856 (49.0/60.5/84.4)	1,214 (32.1/39.5/76.5)	3,070 (81.1)	37.956***
	한부모 가정	342 (9.0/47.8/15.6)	373 (9.9/52.2/23.5)	715 (18.9)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2,123 (56.0/58.0/96.6)	1,536 (40.6/42.0/96.8)	3,659 (96.7)	0.112 (0.736)
	동거	75 (2.0/59.5/3.4)	51 (1.4/40.5/3.2)	126 (3.3)	
지역별 차이 여부	시	965 (25.5/56.2/43.9)	753 (19.9/43.8/47.5)	1,718 (45.4)	5.743 (0.056)
	군	203 (5.4/57.2/9.2)	152 (4.0/42.8/9.5)	355 (9.4)	
	구	1,030 (27.2/60.2/46.9)	682 (18.0/39.8/43.0)	1,712 (45.2)	

* p<.05, ** p<.01, *** p<.0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1-2세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 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5>와 같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부모 및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모두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기관 접근성, 기관의 인증 통과율이나 인증유지율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5〉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1101	33.0136	6.3414	0.1911	20	49	4.25***
	기관이용	673	31.6716	6.6151	0.255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1101	37.5604	7.2346	0.218	20	49	1.52 (0.127)
	기관이용	673	37.0149	7.4578	0.2875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75	65.8533	11.0401	1.2748	50	90	2.14*
	기관이용	51	61.6667	10.3801	1.4535	50	84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2197	3.8011	1.6455	0.0351	0	13	7.55***
	기관이용	1587	3.4083	1.5277	0.0383	0	12	
접근성	현금급여	2198	3.9639	4.284	0.0914	0.00613	18.5294	1.37 (0.170)
	기관이용	1587	3.7707	4.2603	0.1069	0.00613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2198	95.1481	11.9776	0.2555	50	120	0.37 (0.708)
	기관이용	1587	94.9988	12.3455	0.3099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2198	71.0041	17.0777	0.3643	20	370	-0.03 (.976)
	기관이용	1587	71.018	11.8569	0.2976	0	370	

* p<.05, ** p<.01, *** p<.001

3) 대상 : 2-3세 그룹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 요인으로 2-3세 아동 그룹3의 결과는 <표 5-2-6>과 같다.

2세 미만의 아동과는 달리 2-3세 아동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나 여아 모두 현금급여인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지원이나 유아학비와 같은 기관이용을 70% 이상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2-3세 아동그룹에서, 장애아동인 경우는 주로 현금급여를 선택한 반면, 비장애아인 경우에는 주로 기관이용을 선택하여 아동의 장애여부가 보육지원 정책 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변량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2-3세 아동그룹에서 첫째아동이나 둘째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2-3세 아동그룹인 한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의 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또한, 조부모 동거여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지역변수도 2-3세 아동인 경우 시, 군, 구 모두 70% 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2-3세 아동그룹은 장애아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관이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의 소득구분 없는 전체연구대상자의 2-3세 그룹에서 장애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육료와 같은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한 것과 같이, 저소득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세 그룹 또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2세 이상이 되면서, 장애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대부분 보육기관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5-2-6〉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3)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597 (13.5/26.5/50.8)	1,650 (37.4/73.4/51.0)	2,247 (51.0)	0.023 (0.879)
	여	578 (13.1/26.7/49.1)	1,581 (35.8/73.2/48.9)	2,159 (49.0)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1,143 (25.9/26.2/97.2)	3,211 (72.8/73.7/99.3)	4,354 (98.8)	32.717***
	장애 아	32 (0.7/61.5/2.7)	20 (0.4/38.4/0.6)	52 (1.1)	
출생 순위	첫째아	73 (26.2/30.9/80.2)	163 (58.6/69.0/87.1)	236 (84.8)	2.302 (0.129)
	둘째 아	18 (6.4/42.8/19.7)	24 (8.6/57.1/12.8)	42 (15.1)	
한부 모가 정 여부	비 한부모	970 (22.0/27.0/82.5)	2,623 (59.5/73.0/81.1)	3,593 (81.5)	1.076 (0.299)
	한부 모 가정	205 (4.6/25.2/17.4)	608 (13.8/74.7/18.8)	813 (18.4)	
조부 모 동거 여부	비동거	1,133 (25.7/26.6/96.4)	3,116 (70.7/73.3/96.4)	4,249 (96.4)	0.001 (0.980)
	동거	42 (0.9/26.7/3.5)	115 (2.6/73.2/3.5)	157 (3.5)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	-	-	-
	수급	-	-	-	
지역 별 차이 여부	시	492 (11.1/24.4/41.8)	1,520 (34.5/75.5/47.0)	2,012 (45.6)	10.814 (0.0045)
	군	139 (3.1/26.4/11.8)	387 (8.7/73.5/11.9)	526 (11.9)	
	구	544 (12.3/29.1/46.3)	1,324 (30.0/70.8/40.9)	1,868 (42.4)	

* p<.05, ** p<.01, *** p<.0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2-3세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 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7>와 같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부모 및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모두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제1절의 전체대상자와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기관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높아도 현금급여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결과로 보아, 기관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기관이용을 선택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기관의 인증 통과율이나 인증유지율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7>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524	34.5802	5.9945	0.2619	20	49	5.51***
	기관이용	1436	32.8203	6.344	0.1674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524	38.5553	6.6121	0.2889	20	49	2.5**
	기관이용	1436	37.6776	6.9913	0.1845	20	49	
조부 모연 령	현금급여	42	62.6429	9.6848	1.4944	50	84	0.13 (0.896)
	기관이용	115	62.4174	9.5486	0.8904	50	89	
가구 구성 원 수	현금급여	1175	3.9719	1.7242	0.0503	0	13	5.88***
	기관이용	3231	3.6332	1.5926	0.028	0	15	
접근 성	현금급여	1175	3.8001	4.18	0.1219	0.00613	18.5294	2.69**
	기관이용	3231	3.4276	4.0254	0.0708	0.00613	18.5294	
인증 통과 율	현금급여	1175	95.4135	12.8579	0.3751	23.0769	120	0.77 (0.440)
	기관이용	3231	95.0805	12.14	0.2136	50	123.1	
인증 유지 율	현금급여	1175	70.9619	22.165	0.6466	0	370	-0.25 (0.798)
	기관이용	3231	71.1419	16.1058	0.2833	14.6341	370	

* p<.05, ** p<.01, *** p<.001

4) 대상 : 3세 이상 그룹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3세 이상의 아동 그룹3의 결과는 <표 5-2-8>과 같다.

3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나 여아 모두 현금급여인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지원이나 유아학비와 같은 기관이용을 90% 이상 선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3세 이상 아동그룹에서,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 모두 95%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여 아동의 장애여부가 보육지원 정책 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변량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3세 이상 아동그룹에서 첫째아동이나 둘째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3세 이상 아동그룹인 한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의 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고 또한, 조부모 동거여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지역변수도 3세 이상 아동인 경우 시, 군, 구 모두 95% 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3세 이상 아동그룹은 대부분 기관이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의 전체연구대상자의 3세 이상 그룹이나,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3세 이상 모두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대부분 보육 및 시설과 같은 기관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때, 2세 미만 연령 그룹 안에서는 양육수당인 현금급여의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많았고, 2세 이상의 아동연령그룹 안에서는 기관이용선택이 더 많았다. 그에 대한 영향요인은 주로 아동의 장애여부로 나타났다.

〈표 5-2-8〉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4)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324 (1.2/2.3/55.4)	13,553 (50.4/97.6/51.5)	13,877 (51.6)	3.543 (0.059)
	여	260 (0.9/2.0/44.5)	12,741 (47.4/98.0/48.4)	13,001 (48.3)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509 (1.8/2.0/87.1)	24,437 (90.9/97.9/92.9)	24,946 (92.8)	28.609***
	장애아	75 (0.2/3.8/12.8)	1,857 (6.9/96.1/7.0)	1,932 (7.1)	
출생 순위	첫째아	40 (1.4/1.7/85.1)	2,311 (81.9/98.3/83.3)	2,351 (83.3)	0.107 (0.743)
	둘째아	7 (0.2/1.4/14.8)	463 (16.4/98.5/16.6)	470 (16.6)	
한부모 가정 여부	비 한부모	457 (1.7/2.1/78.2)	20,984 (78.0/97.8/79.8)	21,441 (79.7)	0.852 (0.355)
	한부모 가정	127 (0.4/2.3/21.7)	5,310 (19.7/97.6/20.1)	5,437 (20.2)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567 (2.1/2.2/97.0)	24,500 (91.1/97.7/93.1)	25,067 (93.2)	13.912***
	동거	17 (0.06/0.9/2.9)	1,794 (6.6/99.0/6.8)	1,811 (6.7)	
지역별 차이 여부	시	260 (0.9/2.2/44.5)	11,270 (41.9/97.7/42.8)	11,530 (42.9)	2.509 (0.285)
	군	54 (0.2/1.7/9.2)	2,969 (11.0/98.2/11.2)	3,023 (11.2)	
	구	270 (1.0/2.1/46.2)	12,055 (44.8/97.8/45.8)	12,325 (45.8)	

* p<.05, ** p<.01, *** p<.0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3세 이상의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9>와 같다.

3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에,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의 부모 및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모두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절에서 전체 대상자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 요인들에 대해 모두 유의성이 나타났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3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에는 이런 요인들이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기관 접근성과 기관의 인증 통과율은 서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기관접근성은 점수가 높은 경우가 기관이용이 아니라 현금급여를 선택한 경우인 반면, 인증통과율이 높은 점수인 경우 기관이용 선택 결과를 보였다. 기관 접근성보다는 기관의 인증통과율이 기관이용을 선택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집 가까운 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나 인증통과율이 높아 질이 좋은 보육 및 시설기관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인증유지율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9〉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214	36.5607	6.3137	0.4316	21	49	1.44 (0.149)
	기관이용	9254	35.934	6.2873	0.0654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214	40.1495	6.5338	0.4466	21	49	0.33 (0.740)
	기관이용	9254	40.0023	6.423	0.0668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17	64.4118	10.8401	2.6291	50	84	0.96 (0.338)
	기관이용	1794	61.9955	10.3432	0.2442	50	95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584	3.7945	1.8785	0.0777	0	16	0.74 (0.456)
	기관이용	26234	3.7351	2.9172	0.018	0	94	
접근성	현금급여	584	4.4797	4.438	0.1836	0.0082	18.5294	2.41*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기관이용	26294	4.0258	4.5123	0.0278	0.00613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584	93.0029	12.5668	0.52	23.0769	119.8	-3.48***
	기관이용	26294	94.7714	12.1435	0.0749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584	70.5151	15.7822	0.6531	0	370	-0.93 (0.354)
	기관이용	26294	71.1187	15.5861	0.0961	0	370	

* p<.05, ** p<.01, *** p<.001

2.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현황은 <표 5-2-10>과 같다.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는 양육수당을 받는 현금급여선택과 보육기관 및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이용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12년 이후 '13년 지속수급자로 전체 27,926명의 아동 중 0-1세 연령그룹이 2.5%, 1-2세 그룹이 7.1%, 2-3세 그룹이 10.4%, 3세 이상 그룹이 79.9%로 가장 많았다. 그 중 1세 미만 연령 그룹 안에서는 양육수당인 현금급여의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많았고 (0-1세 연령그룹 78.2%), 1세 이상의 아동연령그룹 안에서는 기관이용선택이 더 많았다 (1-2세 그룹 58.6%, 2-3세 그룹 84.8%, 3세 이상 그룹 98.2%). 이것은 1세 미만 아동에서는 양육수당 수급률이 높고, 2세 이상 아동인 경우 기관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아동관련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한부모 가구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겠다. 또한 한부모 가구일수록 양육수당 수급보다 기관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2-10〉 한부모 가정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 선택현황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그룹 1 만0세 ~ 만1세	554 (1.9/78.2/25.0)	154 (0.5/21.7/0.6)	708 (2.54)
그룹 2 만1세 ~ 만2세	825 (2.9/41.3/37.2)	1,169 (4.1/58.6/4.5)	1,994 (7.1)
그룹 3 만2세 ~ 만3세	440 (1.5/15.1/19.8)	2,470 (8.8/84.8/9.6)	2,910 (10.4)
그룹 4 만3세 이상	394 (1.4/1.7/17.8)	21,920 (78.4/98.2/85.2)	22,314 (79.9)
총계	2,213 (7.9)	25,713 (92.0)	27,926 (100)

가. 한부모 가구의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1) 대상 : 0-1세 그룹1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0-1세 아동 그룹1의 결과는 <표 5-2-11> 과 같다.

성별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 선택은 차이가 없었다. 즉 0-1세 아동인 경우, 남아나 여아 모두 기관이용보다는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부모 가구에서 0-1세 아동그룹에서는 장애아동이 없었고, 현금급여선택이 78.2%였다. 출생순위는 0-1세 아동그룹에서는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부모 가구에서 0-1세 아동인 경우, 조부모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80%정도가 현금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0-1세 아동그룹은 286명으로 85%이상이 현금급여를 신청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도 시는 73.4%, 군은 79.5%, 구는 82.8%로 현금급여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높았다.

〈표 5-2-11〉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1)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259 (36.5/76.4/46.7)	80 (11.3/23.6/51.9)	339 (47.8)	1.304 (0.253)
	여	295 (41.6/79.9/53.2)	74 (10.4/20.0/48.0)	369 (52.1)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554 (78.2/78.2/100)	154 (21.7/21.7/100)	708 (100)	
	장애아				
출생 순위	첫째아	17 (73.9/77.2/94.4)	5 (21.7/22.7/100)	22 (95.6)	0.290 (0.590)
	둘째아	1 (4.3/100/5.5)	0 (0/0/0)	1 (4.3)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550 (77.6/78.2/99.2)	153 (21.6/21.7/99.3)	703 (99.2)	0.009 (0.924)
	동거	4 (0.5/80.0/0.7)	1 (0.1/20.0/0.6)	5 (0.7)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310 (43.7/73.4/55.9)	112 (15.8/26.5/72.7)	422 (59.6)	14.076***
	수급	244 (34.4/85.3/44.0)	42 (5.9/14.6/27.2)	286 (40.4)	
지역별 차이 여부	시	243 (34.3/73.4/43.8)	88 (12.4/26.5/57.1)	331 (46.7)	8.791 (0.012)
	군	35 (4.9/79.5/6.3)	9 (1.2/20.4/5.8)	44 (6.2)	
	구	276 (38.9/82.8/49.8)	57 (8.0/17.1/37.0)	333 (47.0)	

* p<.05, ** p<.01, *** p<.001

한부모 가구의 0-1세의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12>와 같다.

0-1세의 아동일 경우에, 부모 및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및 인증통과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이용을 선택

한 경우 인증유지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사실로 보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기관의 인증유지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5-2-12〉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1)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21	35.4286	9.8771	2.1554	20	47	1.07 (0.291)
	기관이용	11	31.3636	10.745	3.2397	20	45	
부 연령	현금급여	21	32.0476	11.6468	2.5415	20	49	-0.18 (0.861)
	기관이용	11	32.8182	11.9065	3.5899	20	47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4	64	8.7178	4.3589	53	71	
	기관이용	1	51	.	.	51	51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554	2.5235	0.8613	0.0366	1	7	1.4 (0.161)
	기관이용	154	2.4156	0.7813	0.063	1	6	
접근성	현금급여	554	4.5184	4.3145	0.1833	0.0116	18.5294	0.94 (0.348)
	기관이용	154	4.152	4.2016	0.3386	0.0289	15.9286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554	94.526	11.7852	0.5007	52	120	1.89 (0.058)
	기관이용	154	92.5325	10.7202	0.8639	52	117.2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554	69.8623	8.2941	0.3524	14.6341	100	-0.17*
	기관이용	154	69.9756	7.0594	0.5689	44	84.375	

* p<.05, ** p<.01, *** p<.001

2) 대상 : 1-2세 그룹2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1-2세

아동 그룹2의 결과는 <표 5-2-13>과 같다.

1-2세 아동인 경우, 성별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 선택은 차이가 없어 남아나 여아 모두 현금급여인 양육수당보다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부모 가구에서 1-2세 아동그룹에서는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 모두 기관이용 선택이 많았다. 또한, 1-2세 아동그룹에서 출생순위와는 관계없이 현금급여나 기관이용 선택비율이 같았다.

한부모 가구에서 1-2세 아동인 경우, 조부모와 동거할 경우 보육지원 정책 두 가지 선택의 차이가 없었고, 조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경우 기관이용 선택이 58% 정도였다. 한부모 가구이면서 1-2세 아동그룹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기관이용 선택이 62.2%, 수급자인 경우는 52.1%였다. 또한 지역은 1-2세 아동인 경우,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시 군 구 모두 55% 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였다.

<표 5-2-13>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그룹 2)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422 (21.1/40.1/51.1)	628 (31.4/59.8/53.7)	1,050 (52.6)	1.281 (0.257)
	여	403 (20.2/42.6/48.8)	541 (27.1/57.3/46.2)	944 (47.3)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824 (41.3/41.3/99.8)	1,167 (58.5/58.6/99.8)	1,991 (99.8)	0.080 (0.772)
	장애아	1 (0.05/33.3/0.1)	2 (01/.66.6/0.1)	3 (0.1)	
출생 순위	첫째아	77 (41.1/49.6/82.8)	78 (41.7/50.3/82.9)	155 (82.8)	0.001 (0.973)
	둘째아	16 (8.56/50.0/17.2)	16 (8.56/50.0/17.0)	32 (17.11)	
한부모 가정	비 한부모	-	-	-	-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여부	한부모 가정	-	-	-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816 (40.9/41.2/98.9)	1,161 (58.2/58.7/99.3)	1,977 (99.1)	0.945 (0.330)
	동거	9 (0.4/52.9/1.0)	8 (0.4/47.0/0.6)	17 (0.8)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483 (24.2/37.7/58.5)	796 (39.9/62.2/68.0)	1,279 (64.1)	19.166***
	수급	342 (17.1/47.8/41.4)	373 (18.7/52.1/31.9)	715 (35.8)	
지역별 차이 여부	시	369 (18.5/38.9/44.7)	578 (28.9/61.0/49.4)	947 (47.4)	5.39 (0.067)
	군	47 (2.36/39.1/5.7)	73 (3.6/60.8/6.2)	120 (6.0)	
	구	409 (20.5/44.1/49.5)	518 (25.9/55.8/44.3)	927 (46.4)	

* p<.05, ** p<.01, *** p<.001

한부모 가구의 1-2세의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14>와 같다.

1-2세의 아동일 때, 현금급여선택인 경우 가구구성원 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그러나 부모 조부모 연령이나 기관의 접근성, 인증 통과율, 유지율등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14〉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2)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40	30.15	8.3775	1.3246	20	49	0.14 (0.890)
	기관이용	50	29.9	8.6195	1.219	20	46	
부 연령	현금급여	40	32.325	9.2995	1.4704	20	49	1.25 (0.214)
	기관이용	50	29.86	9.3044	1.3158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9	57.7778	9.7183	3.2394	50	82	-0.23 (0.824)
	기관이용	8	58.875	10.3017	3.6422	53	82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824	2.5728	0.8802	0.0307	2	6	2.44*
	기관이용	1169	2.4773	0.8448	0.0247	1	11	
접근성	현금급여	825	4.7759	4.4154	0.1537	0.00651	18.5294	1.45 (0.148)
	기관이용	1169	4.4845	4.4413	0.1299	0.00651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825	93.3895	12.0117	0.4182	23.0769	119.8	-0.17 (0.868)
	기관이용	1169	93.4792	11.8811	0.3475	23.0769	119.8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825	69.8338	8.8375	0.3077	0	95	-1.14 (0.255)
	기관이용	1169	70.4421	14.9469	0.4372	0	370	

* p<.05, ** p<.01, *** p<.001

3) 대상 : 2-3세 그룹3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2-3세 아동 그룹3의 결과는 <표 5-2-15>와 같다.

1세 미만의 아동과는 달리 2-3세 아동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나 여아 모두 현금급여인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지원이나 유아학비와 같은 기관이용을 80% 이상 선택하였다.

한부모 가구의 2-3세 아동그룹에서, 장애아동인 경우는 주로 현금급여를 선택한 반면, 비장애아인 경우에는 주로 기관이용을 선택하여 아동의 장애여부가 보육지원 정책 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변량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2-3세 아동그룹에서 첫째아동이나 둘째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부모이면서 2-3세 아동그룹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이나 수급자 가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고 또한, 조부모 동거여부의 요인도 마찬가지로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지역변수도 2-3세 아동인 경우 시, 군, 구 모두 80% 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한부모이면서 2-3세 아동그룹은 장애아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관이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표 5-2-15〉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그룹 3)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212 (7.2/14.4/48.1)	1253 (43.0/85.5/50.7)	1465 (50.3)	0.969 (0.324)
	여	228 (7.8/15.7/51.8)	1217 (41.8/84.2/49.2)	1445 (49.6)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422 (14.5/14.6/95.9)	2462 (84.6/85.3/99.6)	2884 (99.11)	59.850***
	장애아	18 (0.6/69.2/4.0)	8 (0.2/30.7/0.3)	26 (0.8)	
출생 순위	첫째아	50 (11.7/14.5/86.2)	294 (69.1/85.4/80.1)	344 (80.9)	1.207 (0.271)
	둘째아	8 (1.8/9.8/13.7)	73 (17.1/90.1/19.8)	81 (19.0)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434 (14.9/15.0/98.6)	2445 (84.0/84.9/98.9)	2879 (98.9)	0.437 (0.508)
	동거	6 (0.2/19.3/1.3)	25 (0.8/80.6/1.0)	31 (1.0)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235 (8.0/11.2/53.4)	1862 (63.9/88.7/75.3)	2097 (72.0)	89.584***
	수급	205 (7.0/25.2/46.5)	608 (20.8/74.7/24.6)	813 (27.9)	
지역별 차이 여부	시	186 (6.3/13.5/42.2)	1184 (40.6/86.4/47.9)	1370 (47.0)	7.643* (0.021)
	군	28 (0.9/12.7/6.3)	192 (6.6/87.2/7.7)	220 (7.5)	
	구	226 (7.7/17.1/51.3)	1094 (37.5/82.8/44.2)	1320 (45.3)	

* p<.05, ** p<.01, *** p<.001

한부모 가구의 2-3세의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16>과 같다.

2-3세의 아동일 때, 현금급여선택인 경우 기관이용을 선택한 경우보다 가구구성원 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고 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현금급여 선택인 경우가

더 좋았다.

결국 부 모 조부모 연령이나 기관의 접근성, 인증 통과율, 유지율등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2-16〉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3)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20	34.4	7.5978	1.6989	22	49	1.58 (0.117)
	기관이용	114	31.4123	7.849	0.7351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20	33.75	8.6382	1.9316	20	49	1.11 (0.269)
	기관이용	114	31.5439	8.1231	0.7608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6	56.5	5.9245	2.4187	50	64	-0.21 (0.834)
	기관이용	25	57.12	6.5722	1.3144	50	75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440	2.7386	0.9509	0.0453	1	7	3.89***
	기관이용	2470	2.5514	0.8078	0.0163	0	7	
접근성	현금급여	440	5.1472	4.7484	0.2264	0.0111	18.5294	2.68**
	기관이용	2470	4.495	4.4726	0.09	0.0082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440	93.8042	11.4748	0.547	56.2914	120	0.64 (0.525)
	기관이용	2470	93.4171	11.8264	0.238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440	69.9349	8.4348	0.4021	23.2143	100	-0.9 (0.368)
	기관이용	2470	70.3877	15.066	0.3031	0	370	

* p<.05, ** p<.01, *** p<.001

4) 대상 : 3세 이상 그룹4

한부모 가구의 아동 연령에 따른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영향요인으로 3세 이상의 아동 그룹3의 결과는 <표 5-2-17> 과 같다.

한부모 가구의 3세 이상 아동인 경우, 모든 영향요인에서 90%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나 여아 모두 현금급여인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지원이나 유아학비와 같은 기관이용을 98% 이상 선택하였다.

한부모 가구의 3세 이상 아동그룹에서,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 모두 95%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여 아동의 장애여부가 보육지원 정책 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변량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3세 이상 아동그룹에서 첫째아동이나 둘째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고 한부모이면서 3세 이상 아동그룹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이나 수급자 가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 모두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또한, 조부모 동거여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용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지역변수도 3세 이상 아동인 경우 시, 군, 구 모두 98% 이상이 기관이용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한부모이면서 3세 이상 아동그룹은 대부분 기관이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때, 1세 미만 연령 그룹 안에서는 양육수당인 현금급여의 선택이 기관이용보다 많았고, 1세 이상의 아동연령그룹 안에서는 기관이용선택이 더 많았다. 그에 대한 단변량 영향요인은 아동의 장애여부로 나타났다.

〈표 5-2-17〉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의 영향요인(그룹 4)

		현금급여(양육수당) (전체%, 행%, 열%)	기관이용 (전체%, 행%, 열%)	총계	χ^2 (p)
성별	남	212 (0.9/1.9/53.8)	10839 (48.5/98.0/49.4)	11051 (49.5)	2.942 (0.086)
	여	182 (0.8/1.6/46.1)	11081 (49.6/98.3/50.5)	11263 (50.4)	
아동 장애 여부	비 장애아	365 (1.6/1.6/92.6)	21367 (95.7/98.3/97.4)	21732 (97.3)	35.657***
	장애아	29 (0.1/4.9/7.3)	553 (2.4/95.0/2.5)	582 (2.6)	
출생 순위	첫째아	66 (1.0/1.3/80.4)	4850 (77.8/98.6/78.8)	4916 (78.8)	0.128 (0.720)
	둘째아	16 (0.2/1.2/19.5)	1300 (20.8/98.7/21.1)	1316 (21.1)	
조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391 (1.7/1.7/99.2)	21401 (95.9/98.2/97.6)	21792 (97.6)	4.371* (0.036)
	동거	3 (0.01/0.5/0.7)	519 (2.3/99.4/2.3)	522 (2.3)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267 (1.2/1.5/67.7)	16610 (74.4/98.4/75.7)	16877 (75.6)	13.471*** (0.0002)
	수급	127 (0.5/2.3/32.2)	5310 (23.8/97.6/24.2)	5437 (24.3)	
지역별 차이 여부	시	187 (0.8/1.9/47.4)	9655 (43.2/98.1/44.0)	9842 (44.1)	3.241 (0.197)
	군	21 (0.09/1.3/5.3)	1598 (7.1/98.7/7.2)	1619 (7.2)	
	구	186 (0.8/1.7/47.2)	10667 (47.8/98.2/48.6)	10853 (48.6)	

* p<.05, ** p<.01, *** p<.001

한부모 가구의 3세 이상의 아동 보육지원 정책의 선호도 차이를 연속변수인 모 연령, 부 연령, 조부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기관의 접근성, 기관의 인증통과율,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본 분석 결과는 <표 5-2-18>와 같다.

3세 이상의 아동일 때, 기관 인증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이 높은 점수를 낸 경

우 기관이용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 접근성은 보육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부·모·조부모 연령이나 가구구성원 수는 3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부모 연령의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한 명수가 3명 뿐 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표 5-2-18〉 보육지원 정책 선택의 평균차이 분석(그룹 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t(p)
모 연령	현금급여	18	37.4444	6.3359	1.4934	22	49	1.4 (0.161)
	기관이용	877	35.1391	6.9212	0.2337	20	49	
부 연령	현금급여	18	36.2222	8.3916	1.9779	21	46	0.74 (0.461)
	기관이용	877	34.7731	8.2504	0.2786	20	49	
조부모 연령	현금급여	3	66.6667	14.4684	8.3533	50	76	2.29*
	기관이용	519	56.2717	7.8133	0.343	50	88	
가구구 성원 수	현금급여	393	2.6972	0.9649	0.0487	1	9	-1.59 (0.112)
	기관이용	21886	2.7751	0.829	0.0056	0	13	
접근성	현금급여	394	5.2979	4.6537	0.2344	0.0082	18.5294	1.16 (0.244)
	기관이용	21920	5.0131	4.8176	0.0325	0.00613	18.5294	
인증 통과율	현금급여	394	91.7159	11.3106	0.5698	50	118.9	-2.51*
	기관이용	21920	93.18	11.4991	0.0777	23.0769	123.1	
인증 유지율	현금급여	394	69.8436	8.1654	0.4114	20	100	-2.15*
	기관이용	21920	70.757	15.4007	0.104	0	370	

* p<.05, ** p<.01, *** p<.001

3. 가족자산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분석

본 주제의 목적은 가족의 자산 차이에 따른 정책선택 차이분석을 하는데 있으므로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소득 계층 간 정책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 계층을 '12년에서 '13년 지속수급자 중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고소득계층을 '13년 신규 수급자 중 1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층 간 정책선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저소득 계층은 '12년에서 '13년 지속수급자 중 만 1세 이상 기초수급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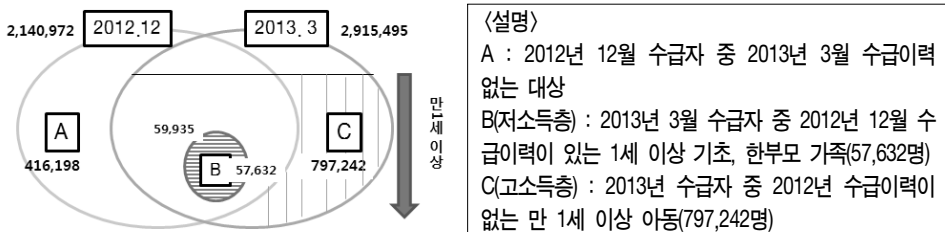
'12년까지 영유아 지원제도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다. 그러나 '13년부터 소득재산조사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모든 제도가 확대되었고, 특히 차상위 계층까지만 제공되었던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선택권이 부모에게 부여되었다. '12년 이후 지속수급자인 경우에는 하위 70%인 경우로 저소득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3년 신규 신청자들이 소득재산 상위 30%에 해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13년 신규 수급자 전체를 고소득계층으로 구분하지 않고, '13년 출생자를 제외한 1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13년 출생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인지 고소득계층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세 이상인 대상자의 경우 '12년 이전에 출생하였음에도 상위30%였기 때문에, 보육제도의 선택권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였다.

<표 5-2-19>에 의하여 '13년 신규 수급자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35.7%에 해당하는 1,190,721명이었고, 그 중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소득계층은 797,242명이었다. '12년 이후 '13년 지속수급자 중 기초 및 한부모 대상자는 59,935명이었고, 그 중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계층은 57,632명이었다.

소득계층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로는 영유아 보육 선택의 현금급여(양육수당)와 기관보육(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호도의 영향요인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로 아동특성으로는 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를, 가구특성은 부 연령, 모 연령, 가구구성원 수, 조부모 동거여부,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 총액을, 지역특성은 지역유형, 기관 접근성을, 시설특성은 인증 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의 영향력을 아동연령별로 분석하였다.

〈설명〉 데이터 추출 대상



〈표 5-2-19〉 2012년 대비 2013년 수급자의 제도별 수급현황

2013 2012	결측 (전체%, 행%, 열%)	보육료 지원 (전체%, 행%, 열%)	양육수당 (전체%, 행%, 열%)	유아학비 (전체%, 행%, 열%)	계
결측	0 (0/0/0)	260,742 (7.8/21.9/18.4)	703,559 (21.1/59.1/82.5)	226,420 (6.8/19.0/35.0)	1,190,721 (35.7%)
보육료 지원	159,382 (4.8/10.3/38.3)	1,111,281 (33.4/71.7/78.5)	76,804 (2.3/5.0/9.0)	202,926 (6.1/13.1/31.3)	1,550,393 (46.5%)
양육 수당	376 (0.0/0.4/0.1)	36,430 (1.1/34.0/2.6)	68,808 (2.1/64.3/8.1)	1,402 (0.0/1.3/0.2)	107,016 (3.2%)
유아 학비	256,440 (7.7/53.0/61.6)	6,888 (0.2/1.4/0.5)	3,523 (0.1/0.7/0.4)	216,712 (6.5/44.8/33.5)	483,563 (14.5%)
계	416,198 (12.5%)	1,415,341 (42.5%)	852,694 (25.6%)	647,460 (19.4%)	3,331,693 (100%)

가. 대상 : 1-2세 그룹2

각 연령 그룹 안에서 전체 변수들 중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소득계층별 대상자의 특성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2-20>과 같다.

고소득계층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에 비해서 첫째를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첫째아동을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의 변수가 있을 때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겠으나, 맞벌이를 할 경우 고소득계층에 해당하게 되고 또한 맞벌이로 인해 기관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이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동특성 중 장애아동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나 기관보육 선택의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에서는 장애아동인 아닌 경우에 비해 장애아동일 경우 10배정도 더 현금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낮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구특성을 통해 고소득계층에서는 보육선택에 부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보다 모 연령이 보육선택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어 모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했다. 저소득계층에서는 모 연령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20〉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고소득	이동특성	성별	남=1, 여=0				
		장애	장애=1, 비장애=0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1	0.674	0.6	0.756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모 연령	연속형	<.0001	1.021	1.013	1.03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0121	1.161	1.033	1.305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24	0.872	0.798	0.953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0001	1.605	1.294	1.991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14	0.911	0.861	0.965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179	1.032	1.005	1.059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66	0.855	0.763	0.957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1	1.018	1.009	1.027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인증 유지율		연속형					
저소득	이동특성	장애	장애=1, 비장애=0	.004	10.388	2.130	50.664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2.430	2.177	2.713
	가구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1.025	1.018	1.032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425	1.323	1.535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11	.689	.734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40	.919	.961
	지역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1.287	1.141	1.451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28	1.021	1.036
	시설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23	1.021	1.026

고소득계층에서 소득유형은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업자에 비해 근로자가 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서 소득유형은 보육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그 것은 소득자체가 낮아 소득유형이 무엇인지에 의해 보육지원의 선택이 달라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조부모 동거여부에 대해 고소득계층에서는 조부모와 동거할 경우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소득계층에서는 조부모 동거여부와 보육정책 선

호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가구구성원수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관을 선택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고소득계층의 가구는 가구구성원들이 주로 일터에 나가 있어 집에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저소득계층의 경우 가구구성원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가구소득총액이 증가할수록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재산 총액이 증가할수록 고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를 선택하였고, 저소득계층에서는 기관보육을 선택하였다.

지역특성에서 지역유형 또한 계층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시나 구에 비해 군에서 기관보육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소득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서는 군에서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접근성에서는 계층별 구분없이 모두 접근성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과 기관선택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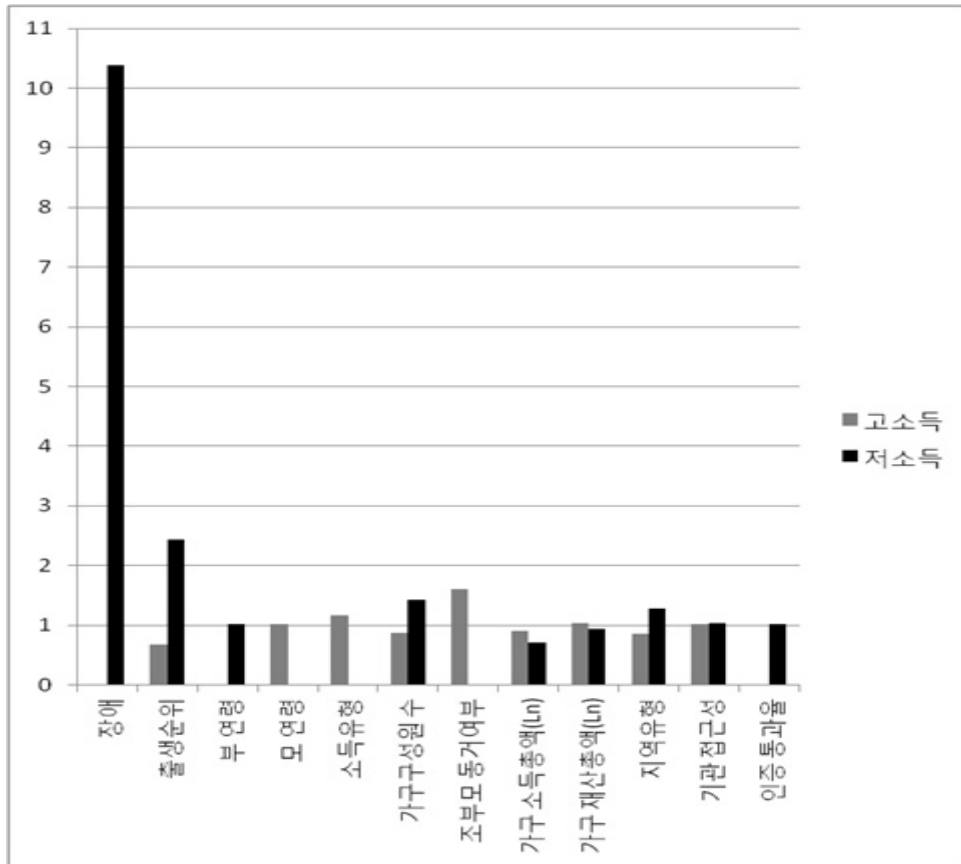
시설특성으로는 인증 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이 있는데, 고소득계층에서는 시설 특성 두가지 모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저소득계층에서는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특성과 상관없이 저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2세 연령그룹에서의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모델의 추정된 OR값을 쉽게 그래프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5-2-1]과 같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1보다 작을 경우 기관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해석할 때,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에 대해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1-2세 연령그룹에서 장애아동과 아동의 출생순위가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5-2-1]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나. 대상 : 2-3세 그룹3

2-3세 연령 그룹 안에서 전체 변수들 중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소득계층별 대상자의 특성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2-21>과 같다.

고소득계층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에 비해서 첫째를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첫째아동을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2세 연령 그룹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변수가 있을 때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겠으나, 맞벌이를 할 경우 고소득계층에 해당하게 되고 또한 맞벌이로 인해 기관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이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동특성 중 장애아동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나 기관보육 선택의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에서는 장애아동인 아닌 경우에 비해 장애아동일 경우 22배정도 더 현금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낮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구특성을 통해 고소득계층에서는 보육선택에 부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보다 모 연령이 보육선택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어 모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했다. 저소득계층에서 또한 모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했다.

소득유형은 두 계층 모두 사업자에 비해 근로자가 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구구성원수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보육 정책 선호도에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총액과 가구 재산 총액 모두 증가할수록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성에서 기관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계층과 구분 없이 모두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과 기관선택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시설특성으로는 인증 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이 있는데, 고소득계층에서는 인증 유지율이 높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호하였고, 저소득계층에서는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특성과 상관없이 저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5-2-21〉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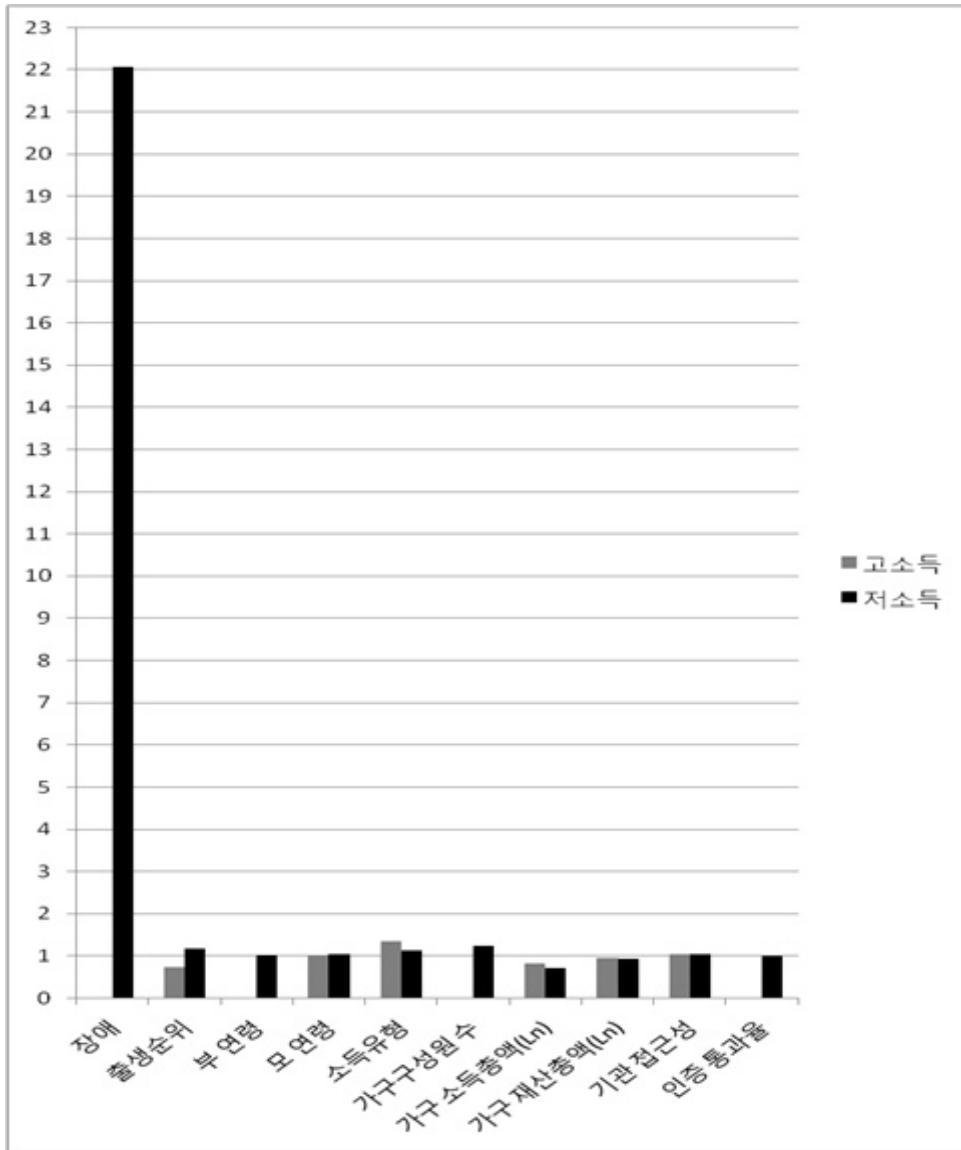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고 소 득	이 동 특 성	성별	남=1, 여=0				
		장애	장애=1, 비장애=0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1	0.728	0.661	0.802
	가 구 특 성	부 연령	연속형				
		모 연령	연속형	<.0001	1.025	1.013	1.036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001	1.353	1.17	1.565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가구소득총액(Ln)	연속형	<.0001	0.815	0.76	0.874
		가구재산총액(Ln)	연속형	0.024	0.961	0.929	0.995
		지 역 특 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1	1.047	1.036	1.057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인증 유지율	연속형	0.0002	0.993	0.99	0.997	
저소 득	이동 특성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22.060	15.073	32.286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2	1.162	1.058	1.276
	가구 특성	부 연령	연속형	.038	1.009	1.001	1.017
		모 연령	연속형	.000	1.035	1.026	1.044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24	1.120	1.015	1.237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247	1.170	1.329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721	.698	.745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928	.907	.950	
	지역 특성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34	1.027	1.041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1.008	1.005	1.010

2-3세 연령그룹에서의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모델의 추정된 OR값을 쉽게 그래프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5-2-2]와 같다.

각 요인에서 1을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에서 2-3세 연령그룹에서 장애아동일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의 경우 둘째에 비해 첫째아동을 저소득 계층은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기관이용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2]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다. 대상 : 3세이상 그룹4

3세 이상의 연령 그룹 안에서 전체 변수들 중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소득계층별 대상자의 특성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2-22> 과 같다.

아동 특성 안에서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두 계층 모두 여아에 비하여 남아일수록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동일수록 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에 비하여 첫째인 경우 더 현금급여를 선택한 것으로 고소득계층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인 경우 기관보육보다는 현금급여를 통한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가구특성에서 부 연령은 두 계층 모두 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고소득계층에서는 보육선택에 모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모 연령이 증가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은 고소득계층의 경우 사업자에 비해 근로자가 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구구성원수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였고,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인 경우 가구소득총액과 가구 재산 총액 모두 증가할수록 기관보육 선택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총액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였으나, 가구 재산 총액이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총액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

부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동을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반면 가구 재산 총액이 높다는 것은 일을 통한 수입보다 집과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이기에 실질적인 현금급여를 받아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지역특성에서 지역유형은 두 소득계층 모두 시나 구에 비해 군에서 기관보육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기관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계층과 구분 없이 모두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과 기관선택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시설특성으로는 인증 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이 있는데, 고소득계층에서는 인증 통과율과 인증 유지율이 모두 높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호하였고, 저소득계층에서는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의 아동연령 그룹의 특성상 기관보육 선호도가 잘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2-22〉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고소득	아동 특성	성별	남=1, 여=0	0.0162	1.05	1.009	1.093
		장애	장애=1, 비장애=0	0.0103	1.961	1.172	3.279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26	1.076	1.026	1.128
	가구 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1	0.982	0.976	0.988
		모 연령	연속형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0398	1.081	1.004	1.164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1	1.148	1.103	1.195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1	0.592	0.573	0.611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1	0.727	0.712	0.741
	지역 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1	0.636	0.569	0.711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1	1.061	1.056	1.066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1	0.994	0.992	0.996
인증 유지율		연속형	0.0272	0.997	0.99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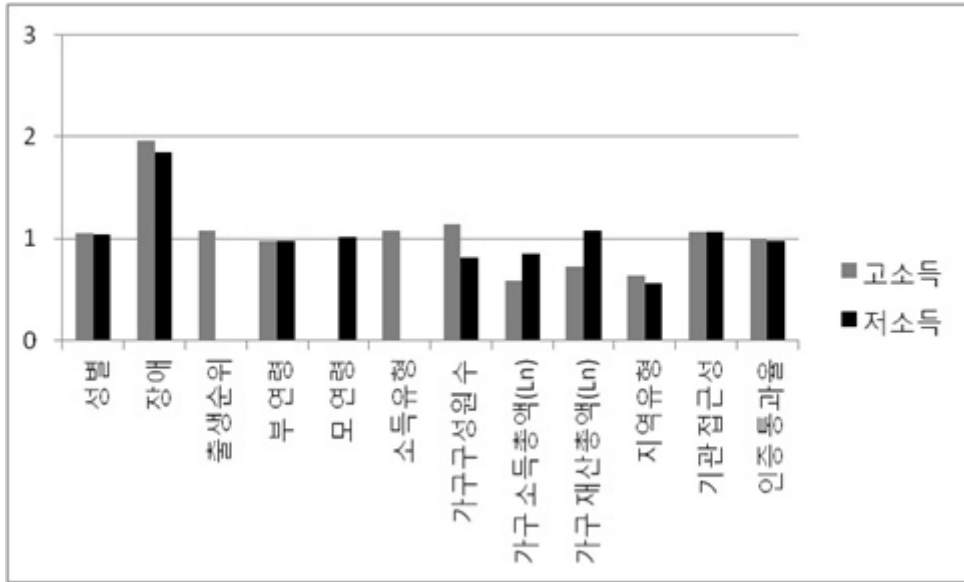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저소득	아동 특성	성별	남=1, 여=0	.042	1.040	1.001	1.080
		장애	장애=1, 비장애=0	.000	1.847	1.648	2.069
	가구 특성	부 연령	연속형	.000	.977	.972	.983
		모 연령	연속형	.000	1.016	1.010	1.022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818	.792	.846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846	.831	.862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079	1.063	1.095
	지역 특성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562	.506	.625
		기관 접근성	연속형	.000	1.066	1.061	1.070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980	.979	.982

3세 이상 연령그룹에서의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모델의 추정된 OR값을 쉽게 그래프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그림 5-2-3]과 같다.

3세 이상 연령그룹에서는 장애아동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작으나, 두 소득 계층 모두 현금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에서 1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구성원수가 증가할수록 고소득층은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기관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재산 총액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은 기관이용을 선호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2-3] 소득계층 별 보육지원 정책 선호 영향요인의 OR

제3절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변화

2012년까지 영유아 지원제도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제한적인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소득재산조사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모든 제도가 확대되었고, 특히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만 제공되었던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선택권이 부모에게 부여되었다. 물론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의 경우 '12년부터 3세 이상 누리과정의 공통 시행으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3세 이상에서 기관 이용 이외에 현금성 급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받지 못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현금성 급여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세 미만에서도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을 이용하거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역시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택권 부여로 인한 제도 선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현금성 영유아 지원정책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2년 대비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영유아 지원제도의 자격이 부여된 지속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2012년 대비 2013년 영유아 지원정책 변동 현황

2012년 대비 2013년 지속수급자의 영유아 지원제도별 수급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표 5-3-1>과 같다. 2013년 기준 전체 지속수급자는 1,724,774명으로 나타났고 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이 제도의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이다. 양육수당으로 변동된 대상자는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4.45%,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0.20%를 차지하여 총 변동자는 4.65%(80,327명)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으로 변동한 대상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2.11%, 유아학비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0.40%를 차지하여 총 변동자는 2.51%(43,318명)로 나타났다. 유아학비로 변동한 대상자는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0.08%, 보육료 지원에서 유아학비로 변동한 대상자가 전체 지속수급자의 11.77%를 차지하여 총 변동자는 11.85%(204,328명)로 나타났다.

<표 5-3-1> 2012년 대비 2013년 지속수급자의 제도별 수급현황

2012 \ 2013	양육수당 (전체%, 행%, 열%)	보육료 지원 (전체%, 행%, 열%)	유아학비 (전체%, 행%, 열%)	계
양육수당	68,808 (3.99/64.52/46.14)	36,430 (2.11/34.16/3.16)	1,402 (0.01/1.31/0.33)	106,640 (6.18%)
보육료 지원	76,804 (4.45/5.52/51.50)	1,111,281 (64.43/79.89/96.25)	202,926 (11.77/14.59/48.20)	1,391,011 (80.65%)
유아학비	3,523 (0.20/1.55/2.36)	6,888 (0.40/3.03/0.60)	216,712 (12.56/95.42/51.47)	227,123 (13.17%)
계	149,135 (8.64%)	1,154,599 (66.94%)	421,040 (24.41%)	1,724,774 (100%)

지속수급자의 2013년 제도별 수급현황은 보육료 지원이 6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아학비 24.41%, 양육수당 8.64%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다소 변화를 보이는데, 보육료 지원이 80.65%로 증가한 반면 유아학비는 13.17%, 양육수당은 6.18%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12년에 보육료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학비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양육수당은 그보다도 더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⁶⁾.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양육보다 기관양육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안재진·김은지, 2010; 손경화·조복희, 2010; 김지경, 2004)를 감안하고 지속수급자가 기본적으로 신규수급자에 비해 연령이 높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라 기존에 기관(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을 이용하던 대상자들이 양육수당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나. 영유아 지원제도별 변동현황

다음으로 각 제도별 2012년 대비 2013년 변동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2013년 기준 지속수급자의 연령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표 5-3-2>와 같다. 전반적으로 3세 이상 대상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양육수당의 경우 3세 미만까지의 대상자가 전체 양육수당 대상자의 72.27%를 차지해 기관이용 대상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12. 12월 기준으로 영유아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총 2,140,972명이었으며 그 중 보육료 지원이 72.41%(1,550,39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아학비 22.59%(483,563명), 양육수당 5.00%(107,0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2〉 연령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지속수급자 제도 이용 현황

구분	1세미만 (전체/행/열%)	1~2세 (전체/행/열%)	2~3세 (전체/행/열%)	3세 이상 (전체/행/열%)	계
보육료지원	15,252 (0.88/1.32/35.72)	139,498 (8.09/12.08/71.12)	321,573 (18.64/27.85/91.56)	678,276 (39.33/58.75/59.78)	1,154,599 (66.94)
양육수당	27,450 (1.59/18.41/64.28)	56,647 (3.28/37.98/28.88)	29,651 (1.72/19.88/8.44)	35,387 (2.05/23.73/3.12)	149,135 (8.65)
유아학비	-	-	-	421,040 (24.41/100/37.10)	421,040 (24.41)
계	42,702 (2.48)	196,145 (11.37)	351,224 (20.36)	1,134,703 (65.79)	1,724,774 (100)

먼저 2013년 양육수당으로 변동된 대상자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변동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이루어졌으며(95.61%) 특히 3세 미만의 변동자가(1세 미만 ~ 3세 미만) 전체 보육료 지원 변동대상자 중 63.31%로 약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3-3〉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양육수당)

구분		양육수당 수급자(2013년)				
		1세 미만 대상자 수	1~2세 대상자 수	2~3세 대상자 수	3세 이상 대상자 수	계
2012년 수급제도	보육료 지원	5,284 (6.88%)	24,727 (32.19%)	18,615 (24.24%)	28,179 (36.69%)	76,805 (95.61%)
	유아학비	-	-	1	3,521	3,523 (4.39%)
	계	5,284 (6.58%)	24,727 (30.78%)	18,615 (23.17%)	31,700 (39.46%)	80,327 (100%)

다음으로 2013년에 영유아 보육료로 변동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양육수당에서 변동한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84.10%). 또한 1세 이상부터 3세 미만까지 구간에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으로 이동하는 대상자가 전체 변동대상자의

85.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5-3-4〉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보육료 지원)

구분		보육료지원 수급자(2013년)				
		1세 미만 대상자 수	1~2세 대상자 수	2~3세 대상자 수	3세 이상 대상자 수	계
2012년 수급제도	양육수당	2,666 (7.32%)	16,412 (45.05%)	14,625 (40.15%)	2,727 (7.49%)	36,430 (84.10%)
	유아학비	-	-	-	6,888	6,888 (15.90%)
	계	2,666 (6.15%)	16,412 (37.89%)	14,625 (33.76%)	9,615 (22.20%)	43,318 (100%)

마지막으로 2013년에 유아학비로 변동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모든 대상자가 3세 이상에서 변동하였는데 이는 제도적 특성⁷⁾에 의한 것이며 보육료 지원에서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5〉 연령별 2012년도 대비 지속수급자 변동현황(유아학비)

구분		유아학비 수급자(2013년)				
		1세 미만 대상자 수	1~2세 대상자 수	2~3세 대상자 수	3세 이상 대상자 수	계
2012년 수급제도	양육수당	-	-	-	1,402	1,402
	보육료 지원	-	-	-	202,926	202,926
	계				204,328	204,328

7) 유아학비는 3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으로 수행되고 대상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2.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현금성 급여(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보육정책에 대한 선택권의 부여에 따른 영유아 지원제도별 변동현황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절의 주제인 현금성 급여를 선택한 대상자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현금성 급여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성 급여를 선택한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4장에서 정의된 변수들(아동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기관특성)과 기존 수급자 중 <표 5-3-2>의 대상자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으로의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대상자를 정책변동자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수급하는 대상자를 미변동자로 하여 변수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1세 미만의 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먼저 1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남자 아이의 28.7%, 여자 아이의 28.5%가 현금성 급여로 변동하였으며 아동의 장애여부는 비장애아동의 28.6%가 정책변동자로 나타났고 출생순위는 첫째의 30.8%, 둘째의 24.0%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한부모가족 급여 수급여부는 수급자 중 9.9%, 비수급자의 28.7%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16.9%, 비수급자의 28.7%가 변동자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령 평균은 변동자의 경우 부 34.9세, 모 32.5세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 수는 평균 3.64명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등 기타양육자의 연령 평균은 변동자의 경우 63.7세로 나타났고 기타양육자 동거 여부는 동거하는 경우

의 27.2%,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28.7%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소득합계액 및 순재산액은 변동자의 소득합계액이 약 29만 6천원, 순재산액이 약 1,29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는 시와 구 지역을 합한 도시지역의 경우 38.2%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에서는 26.9%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에서 기관의 접근성은 변동자의 경우 km당 약 4.9개의 시설이 존재하였으며 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율은 변동자의 경우 평균 89.83%, 인증유지율은 68.76%로 나타났다.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정 및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동특성에서는 아동 장애여부와 출생 순위에서, 가구특성에서는 한부모가족 급여수급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구구성원수, 소득합계, 순재산액에서, 지역특성에서 지역구분, 기관특성에서 평가인증 통과율과 기관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1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χ^2 / t
		남	여				
이동 특성	성별	남		2,723(28.7)	6,758(71.3)	9,481	0.07
		여		2,561(28.5)	6,411(71.5)	8,972	
	아동장애 여부	Y		2(100)	-	2	4.99*
		N		5,282(28.6)	13,169(71.4)	18,451	
출생 순위	1		514(30.8)	1,153(69.2)	1,667	4.45*	
	2		55(24.0)	174(76.0)	57		
가구 특성	한부모 여부	Y		7(9.9)	64(90.1)	71	12.30**
		N		5,277(28.7)	13,105(71.3)	18,382	
	기초여부	Y		12(16.9)	59(83.1)	71	4.80*
		N		5,272(28.7)	13,110(71.3)	18,382	
	연령 (부모)	부(만)		34.92	34.93	17,753	-0.15
		모(만)		32.53	32.63		-1.5
	가구구성원수	평균(명)		3.64	3.75	18,453	-9.03**
	기타양육자 연령	평균(만)		63.77	61.98	243	1.63
	기타양육자	Y		66(27.2)	177(72.8)	243	.262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χ^2 / t
		여부	N				
	소득합계	평균(원)	296,267	296,267	387,081	9,096	-4.07**
	순재산액	평균(원)	12,943,299	12,943,299	16,055,218		-2.42*
	지역특성	지역구분	시	3,004(27.3)	3,004(27.3)	7,988(72.7)	10,992
		군	259(26.9)	259(26.9)	705(73.1)	964	
		구	2,021(31.1)	2,021(31.1)	4,476(68.9)	6,497	
	접근성	평균(개소/km)	4.88	4.88	4.32	18,453	7.55**
기관특성	인증율	평균(%)	89.83	89.83	90.88	18,453	-5.29**
	유지율	평균(%)	68.76	68.76	69.04		-1.37

* p<0.05 **p<0.01

나. 1세 이상 2세 미만의 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다음으로 1세 이상 2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남자의 16.0%, 여자의 16.3%가 변동자이며 아동장애여부는 장애아동의 35.7%, 비장애아동의 16.1%가 변동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 순위는 첫째 17.4%, 둘째 15.0%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한 부모가족 급여수급여부는 수급자의 5.0%, 비수급자의 16.2%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7.7%, 비수급자의 16.2%가 변동자이고 부모의 연령 평균은 변동자의 경우 아버지 약 35.6세, 어머니 약 33.2세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 수는 약 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등 기타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약 64.4세로 나타났고 기타양육자와의 동거여부는 동거하는 아동의 13.6%, 동거하지 않는 아동의 16.2%가 변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액 평균은 변동자의 경우 소득합계액 약 60만 1천원, 순재산액 약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지역구분의 경우 시와 구 지역의 도시지역 19.5%, 군 지역의 13.7%가 변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에서 평가인증통과율은 약 90.29%,

인증유지율은 68.89%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접근성에 있어 변동자는 km²당 약 4.7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정 및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아동특성에서 성별, 가구특성에서 기타 양육자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3-7〉 1세 이상 ~ 2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χ^2 / t
		성별	남				
아동 특성	성별	남	12,799(16.0)	66,993(84.0)	79,792	1.23	
		여	11,928(16.3)	61,478(83.7)	73,406		
	아동장애 여부	Y	15(35.7)	27(64.3)	42	11.89**	
		N	24,712(16.1)	128,444(83.9)	153,156		
출생 순위	1	12,929(17.4)	61,331(82.6)	74,260	4049**		
	2	1,744(15.0)	9,867(85.0)	11,611			
가구 특성	한부모여부	Y	39(5.0)	741(95.0)	780	71.89**	
		N	24,688(16.2)	127,730(83.8)	152,418		
	기초여부	Y	68(7.7)	821(92.3)	889	47.64**	
		N	24,659(16.2)	127,650(83.8)	152,309		
	연령 (부모)	부(만)	35.57	35.36	146,795	7.25**	
		모(만)	33.20	32.81		14.63**	
	가구구성원수	평균(명)	3.63	3.66	153,194	-4.82**	
	기타양육자연령	연령(만)	64.40	63.86	2,036	.88	
	기타양육자 여부	Y	276(13.6)	1,760(86.4)	2036	10.18**	
		N	24,451(16.2)	126,711(83.8)	151,162		
소득합계	평균(원)	601,485	706,395	86,084	-3.02**		
순재산액	평균(원)	26,698,151	31,271,642		-5.98**		
지역 특성	지역구분	시	13,688(15.7)	73,650(84.3)	87,338	107.14**	
		군	1,273(13.7)	8,011(86.3)	9,284		
		구	9,766(17.3)	46,810(82.7)	56,576		
접근성	평균(개소/km ²)	4.74	4.31	153,198	13.69**		
기관 특성	인증율	평균(%)	90.29	91.05	153,198	-9.17**	
	유지율	평균(%)	68.89	69.46		-5.31**	

* p<0.05 **p<0.01

다. 2세 이상 3세 미만의 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다음으로 2세 이상 3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특성에서 성별은 남자의 5.7%, 여자의 5.5%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아동장애 여부는 장애아동의 17.2%, 비장애아동의 5.6%가 변동자로 나타났고 출생순위는 첫째의 5.4%, 둘째의 5.9%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 한부모가족 급여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2.1%, 비수급자의 5.6%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4.2%, 비수급자의 5.6%가 변동자로 나타났고 정책변동자의 부모 연령평균은 부 36.3세, 모 33.9세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수는 평균 3.6명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등 기타양육자의 평균연령은 61.2세로 나타났고 기타 양육자의 동거 여부는 기타양육자 동거하는 아동의 5.4%, 동거하지 않는 아동의 5.6%가 정책변동자로 나타났다. 정책변동자의 소득재산액은 소득합계액이 약 83만 4천원, 순재산액이 약 4,45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지역구분의 경우 시와 구 지역을 합친 도시지역의 6.1%가 변동자, 농촌지역의 4.0%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에서 변동자의 평가인증통과율은 90.41%, 인증유지율은 69.17%로 나타났으며 기관 접근성 평균은 km당 약 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정 및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특성에서 기타양육자 연령과 기타 양육자 여부, 순재산액 합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8〉 2세 이상 ~ 3세 미만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x ² / t
		성별	남				
아동 특성	성별	남	9,780(5.7)	163,154(94.3)	172,934	3.99*	
		여	8,836(5.5)	151,921(94.5)	160,757		
	아동장애 여부	Y	45(17.2)	217(82.8)	262	66.94**	
		N	18,571(5.6)	314,858(94.4)	333,429		
출생 순위	1	9,750(5.4)	171,251(94.6)	181,001	19.90**		
	2	2,426(5.9)	38,392(94.1)	40,818			
가구 특성	한부모여부	Y	44(2.1)	2,048(97.9)	2,092	48.28**	
		N	18,572(5.6)	313,027(94.4)	331,599		
	기초여부	Y	113(4.2)	2,557(95.8)	2,670	9.27**	
		N	18,503(5.6)	312,518(94.4)	331,021		
	연령 (부모)	부(만)	36.33	36.03	318,824	9.39**	
		모(만)	33.93	33.44		16.61**	
	가구구성원수	평균(명)	3.60	3.66	333,689	-11.29**	
	기타양육자 연령	평균(만)	61.17	64.38	3,912	1.17	
	기타양육자 여부	Y	213(5.4)	3,699(94.6)	3,912	.14	
		N	18,403(5.6)	311,376(94.4)	329,779		
소득합계	평균(원)	833,632	1,183,585	215,987	-22.85**		
	순재산액	평균(원)	44,994,902		57,294,739	-1.52	
지역 특성	지역구분	시	9,725(5.4)	169,235(94.4)	178,960	183.40**	
		군	990(4.0)	23,698(94.6)	24,688		
		구	7,901(6.1)	122,142(93.9)	130,043		
접근성	평균개소(km)	4.98	4.28	333,691	20.19**		
기관 특성	인증율	평균(%)	90.41	91.27	333,691	-9.57**	
	유지율	평균(%)	69.17	69.61		-3.78**	

* p<0.05 **p<0.01

라. 3세 이상의 양육수당 선택자의 특성

마지막으로 3세 이상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아동특성에서 성별에서는 남자의 2.9%, 여자의 2.7%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아동장애 여부는 장애아동의 0.9%, 비장애아동의 2.9%가 변동자로 나타났고 출생순위에서

는 첫째의 3.3%, 둘째의 3.1%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한부모가족 급여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1.3%, 비수급자의 2.9%가 변동자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1.2%, 비수급자의 2.9%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변동자의 부모 연령 평균을 살펴본 결과 부 37.5세, 모 35.1세로 나타났다. 변동자의 가구구성원 수는 평균 약 3.7명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등 기타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63.8세로 나타났고 기타양육자 동거 여부는 기타양육자가 동거하는 아동의 2.5%, 동거하지 않는 아동의 2.9%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변동자의 소득재산액 평균은 소득합계액이 약 158만 2천원, 순재산액이 약 9,4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지역구분의 경우 시와 구 지역을 합친 도시지역의 3.0%, 농촌지역의 1.1%가 변동자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특성에서 평가인증통과율은 89.62%, 인증유지율은 69.34%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km²당 평균 5.7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정 및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구특성에서 부 연령, 기타양육자 연령, 소득합계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9〉 3세 이상의 정책변동자와 미변동자의 특성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χ^2 / t
		성별	남				
아동 특성	성별	남	16,877(2.9)	556,716(97.1)	573,593	37.45**	
		여	14,823(2.7)	524,349(97.3)	539,172		
	이동장애 여부	Y	131(0.9)	14,235(99.1)	14,366	197.28**	
		N	31,569(2.9)	1,066,830(97.1)	1,098,399		
출생 순위	1	16,581(3.3)	481,273(96.7)	497,854	14.84**		
	2	5,732(3.1)	176,659(96.9)	182,391			
가구 특성	한부모여부	Y	288(1.3)	21,818(98.7)	22,106	194.76**	
		N	31,412(2.9)	1,059,247(97.1)	1,090,659		
	기초여부	Y	321(1.2)	26,086(98.8)	26,407	260.68**	

2012		2013		정책변동자	미변동자	계 / N	χ^2 / t	
			N					
지역 특성		N	31,379(2.9)	1,054,979(97.1)	1,086,358			
	연령 (부모)	부(만)	37.50	37.49	1,020,957		.58	
		모(만)	35.08	34.82			11.38**	
		가구구성원수	평균(명)	3.74	3.85	1,112,635		-21.02**
		기타양육자 연령	연령(만)	63.75	63.77	15,185		-0.03
		기타양육자 여부	Y	373(2.5)	14,812(97.5)	15,185		8.56**
			N	31,327(2.9)	1,066,253(97.1)	1,097,580		
		소득합계	평균(원)	1,581,977	3,857,889	941,529		-0.3
	순재산액	평균(원)	94,198,285	96,427,928	-3.08**			
지역 특성	지역	시	15,466(2.7)	563,792(97.3)	579,258		1739.51**	
		군	1,046(1.1)	94,600(98.9)	95,646			
		구	15,188(3.5)	422,673(96.5)	437,861			
	접근성	평균(개소/km)	5.71	4.13	1,112,765		58.35**	
기관 특성	인증율	평균(%)	89.62	92.04	1,112,765		-35.44**	
	유지율	평균(%)	69.34	69.95		-6.4**		

* p<0.05 **p<0.01

이상으로 현금성 급여를 선택한 정책변동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2년 대비 2013년 지속수급자 가운데 현금급여, 즉 양육수당으로의 정책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들의 미변동자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책변동자의 전체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별, 출생순위 등 명목변수 등을 제외한 범주형 변수, 즉 t-test를 통하여 변수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변동자가 미변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소득재산액, 기관특성 중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 등의 변수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성의 여부가 차이가 있으나 정책변동자가 미변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액이 적고,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의 접근성은 정책변동자의 단위면적당 시설 수가 미변동자에 비

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양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으로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현금급여로의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다음에 제시될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에서는 각 특성별 변수들이 현금급여로의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금급여로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 맞춤형 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현금성 급여(양육수당) 선택의 결정요인

앞에서 보육정책 선택권 부여에 따른 지속 수급자들의 정책별 변동양태와 현금성 급여인 양육수당으로 변동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양육수당을 선택한 대상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 사용된 변수 중 기초생활수급여부 및 한부모 가정 급여 수급 여부는 2절의 주요 변수로 사용될 예정이며 뚜렷한 소득계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tepwise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델에 진입한 변수들을 토대로 현금성 급여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가. 1세 이상 2세 미만 양육수당 선택의 결정요인

먼저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을 연령 구간(1세 미만, 1~2세, 2~3세, 3세 이상)에 따라 살펴 본 결과 1세 미만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1세 이상~2세 미만 구간에서부터 유의한 변수가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1~2세 구간에서는 출생순위, 가구구성원 수, 가구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소득유형, 인증 통과율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특성 중 출생순위에서 첫째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 내 아동 수가 증가할수록 직접 혹은 개인 대리양육보다 시설 양육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최상설, 홍경준, 2012)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인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기관양육을 선택하거나(안재진, 김은지, 2010) 가구원 수가 많은 확대가족의 경우 조부모/육아도우미 등을 선택한다는(박선옥, 2011) 선행연구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 소득총액에서는 소득이 감소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최상설, 홍경준, 2012; 안재진, 김은지, 2010; 김지경, 2004; 장영은, Pungello, 2007)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일수록 직접 양육을 선택한다는 백은주 외(2011)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 재산총액에서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총액의 영향력과는 반대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유형에서는 근로소득자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설 특성에서 거주지역의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은 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질과 양육수당의 선택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0〉 1~2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1~2세	아동 특성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00	1.407	1.189	1.665
	가구 특성	가구구성원 수	연속형	.000	1.314	1.178	1.466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1	0.875	0.807	0.95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163	1.111	1.218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17	1.267	1.042	1.54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4	0.994	0.989	0.998	

나. 2세 이상 3세 미만 양육수당 선택의 결정요인

다음으로 2~3세 구간에서 양육수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여부, 모 연령, 가구재산총액, 소득유형, 인증통과율, 접근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특성에서 장애여부의 경우 장애아동일수록 매우 강하게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 중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으며,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또는 통합보육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총 171개소에 5,99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1개소당 평균 약 35명의 장

애이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정원 8,178명 대비 73.3%의 이용률로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인 86.4%보다 낮은 이용률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는 모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대리양육 및 시설보육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최상설, 홍경준, 2012; 박선옥, 2011)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백은주 외(2011)의 연구와는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가구 재산총액에서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설보육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최상설, 홍경준, 2012; 김지경, 2004; 장영은, Pungello, 2007)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유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특성 및 지역특성에서는 지역 내 보육시설의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1~2세 구간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보육시설 접근성에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되려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5-3-11〉 2~3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2~3세	이동 특성	장애여부	장애=1, 비장애=0	.000	7.714	3.787	15.715
	가구 특성	모 연령	연속형	.000	1.024	1.014	1.034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08	1.044	1.118
		소득유형	근로=1, 사업=0	.005	1.209	1.059	1.381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1	0.994	0.991	0.998
지역 특성	접근성	연속형	.000	1.029	1.021	1.038	

다. 3세 이상 양육수당 선택의 결정요인

마지막으로 3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출생순위, 장애여부, 모 연령, 부 연령, 가구 소득총액, 가구 재산총액, 가구 구성원 수, 인증 통과율, 보육시설 접근성, 지역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동 특성에서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2세 구간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여부에서는 비장애아동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강하게 나타나 2~3세 구간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는 모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3세 구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30대 미만에서 개인대리양육의 선택 비율이 높아지는 백은주 외(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총액은 소득이 감소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반면 가구재산총액은 재산이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2~3세의 결과와 유사하다. 가구구성원 수는 가구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1~2세 구간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며 성인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한다는 안재진, 김은지(2010)의 연구와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설 및 지역특성에서는 지역 내 보육시설 인증 통과율에서 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단위면적당 시설 수가 많아질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지역유형에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 대도시가 개인 대리양

육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최상설, 홍경준(2012)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3-12〉 2~3세의 현금성 급여 선택의 결정요인

			변수	p	O.R	C.I.(95%)	
						하한	상한
3세 이상	이동 특성	출생순위	첫째=1, 둘째=0	.015	1.069	1.013	1.127
		장애여부	장애=1, 비장애=0	.000	0.3	0.23	0.392
	가구 특성	모 연령	연속형	.000	1.022	1.016	1.028
		부 연령	연속형	.000	0.984	0.978	0.99
		가구 소득총액(ln)	연속형	.000	0.936	0.911	0.961
		가구 재산총액(ln)	연속형	.000	1.135	1.115	1.156
		가구구성원수	연속형	.000	0.842	0.81	0.875
	시설 특성	인증 통과율	연속형	.000	0.982	0.98	0.984
	지역 특성	접근성	연속형	.000	1.066	1.061	1.07
		지역유형	군=1, 시·구=0	.000	0.559	0.501	0.624

이상으로 현금성 급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대별로 다양한 영향요인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육시설과 관련된 변수인데, 유의한 영향력이 도출된 모든 연령구간에서 지역 내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보육시설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보육시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자유선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세 이상에서부터 영향요인으로 유입된 접근성의 경우 단위면적당 시설 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의 만족도 증가를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나 질적인 부분에서

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총액의 경우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은 감소할수록, 재산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의 경우 이른바 실질적인 소비를 위한 자산의 형태인 반면 재산의 경우 금융 재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제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형태의 자산임을 고려했을 때 양육수당이 소득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3년 획기적으로 변화한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 수요자 선택현황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주제별로 보육지원 정책 선택현황과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육지원 정책이 아동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동연령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서비스 선택현황과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2년 전 수급자 데이터('12.12.31 기준)와 '13년 신규신청자('13.3.31 기준)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이동특성(성별, 장애여부, 출생순위), 가구특성(한부모, 기초수급자 여부, 부모연령, 기타양육자 연령, 소득합계, 순재산액), 지역특성(시군구) 그리고 기관특성(인증율, 유지율,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2년 대비 '13년 지속수급자의 선택유형은 어떠한지, 이들 선택에 미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둘째, 소득을 기준을 하였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수급 계층은 현금급여와 기관이용 중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2년 대비 '13년 보육정책의 큰 변화는 보편화된 서비스와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 때문에 '12년 일괄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수급자들이 '13년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기관이용에서 현금 급여인 양육수당으로 이동한 계층은 어떠한 특

성을 갖고 있는지와 이들 선택에 미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아동 특성변수인 아동 성별의 경우 남아 그리고 장애아동일 경우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아동의 장애여부가 직접양육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남아에 대한 선호가 현금급여의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와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 구성원 수, 가구 총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부모가 동거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의 분석결과에서는 부, 모의 연령 증가는 직접양육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가구구성원 수의 증가도 기관보육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변수인 지자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군일수록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설특성인 해당 기초지자체의 보육기관의 평균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전체 집단에서 인증 통과율은 국민의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 연령과 부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이용보다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기관 접근성과 인증 통과율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의 경우 기관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냈다. 한부모 수급자의 경우는 양육수당보다

기관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계층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소득차이에 따른 계층간 선택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1-2세 기준으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고소득계층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에 비해서 첫째를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첫째아동을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특성 중 장애아동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득계층에서는 현금급여나 기관보육선택의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에서는 장애아동인 아닌 경우에 비해 장애아동일 경우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통해 고소득계층에서는 보육선택에 부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계층에서는 부 연령보다 모 연령이 보육선택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어 모 연령이 많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했다. 저소득계층에서는 모 연령은 보육지원 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고소득계층에서 소득유형은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사업자에 비해 근로자가 더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서 소득유형은 보육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가구구성원 수의 경우 고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관을 선택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서 지역유형 또한 계층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시나 구에 비해 군에서 기관보육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소득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서는 군에서 현금급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접근성에서는 계층별 구분없이 모두 접근성이 높을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이 가까이 있는 것과 기관선택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12년도 시설이용자가 '13년 현금 급여로 변동된 경우, 즉 정책변

동 대상자의 특성과 해당 선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년 기관이용에서 양육수당으로 정책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들과 미변동자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책변동자의 전체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소득재산액, 기관특성 중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 등의 변수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성의 여부가 차이가 있으나 정책변동자가 미변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액이 적고, 평가인증 통과율 및 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특성 중 첫째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특성에서 거주지역의 보육시설 인증통과율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질과 양육수당의 선택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13년 정책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인 정책변동에 따른 정책선택 현황과 해당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데 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처음으로 보편화된 보육서비스의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보육부문 큰 정책변화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실태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이 여기고 있던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정책선택 행태를 분석한데 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저서

- 김문정(2013), “2013 유아교육 예산”, 『육아정책포럼』, 제34호
- 김미혜·이석미(2007), “독일과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연구 - 현금급여와 가족수발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1: 369-396.
- 김진희, 임태균(2009), “취업모의 보육시설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24(1), pp.235-260
- 김지경(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 42(8), pp.65-76
- 박경일(2011),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박선옥(2011),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4), pp. 831-847
-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pp.209-232
- 석재은(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73-302.
- 손경화, 조복희(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과 보육선택”, 『대한가정

- 학회지』 48(7), pp.59-76
- 송다영(2009), “가족정책 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 83-117
- 송다영(2013), “돌봄 자유선택의 현실과 한계”, 『2013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7-27
- 신윤정(2013), “영유아 보육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95: 87-98
- 안재진, 김은지(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2), pp.5-36
- 유혜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윤성호(2011),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의 젠더레짐 이행 ;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 313-335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직장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 291-319
- 이나경(2012), 『어머니의 보육시설 선택요인과 보육만족도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화, 조하나(2012), “미취학 자녀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선택요인 분석”, 제5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발표집, pp. 379-395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영은, Elizabeth P. Pungello(2007), “가족소득 및 인종에 따른 영아 보육 선택”, 『대한가정학회지』 45(6), pp. 21-33
- 최상설, 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영

- 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pp. 29-57
- 함영진 외(2011), “행복e음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연구”, 보건복지부
- 홍승아(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1:
263-275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3) : <http://www.mw.go.kr>
- 교육부 홈페이지(2013) : <http://www.moe.go.kr>
- 국회 최동익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 10. 13)
- 보건복지부(2013), 2012 보육통계

2. 국외 저서

- Hiilamo, H.(2004), “Changing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during the 1990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1): 21-40.
- I. Carter.(2004), “Choice, freedom, and freedom of choice”, 『Social Choice and Welfare』 22: 61 - 81
- Jenson, J. and M. Sineau. (2003), “France: Reconciling republican equality with freedom of choice”,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 OECD(2013), Family Database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선호 및 영향요인 분석

발행일 : 2013. 12

저자 : 함영진, 강소영, 김경준, 이희중

발행인 : 원희목

발행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우 100-705)

전화 : 02) 6360-6114

홈페이지 : <http://www.khwis.or.kr>

인쇄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 2268-5070

